

발간등록번호

11-1543000-003689-01

축산 유통법률 정비방안

2021. 9.

주관연구기관: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농림축산식품부

축산 유통법률 정비방안

연구자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혜선·홍관표 교수,
전남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강혜정 교수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축산관련 법률의 개관 및 연구의 필요성	1
1. 축산관련 법률의 개관	1
2. 연구의 필요성	5
제2절 연구의 진행방향	6
제3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8
1. 연구의 범위	8
2. 연구의 방법	8
3. 연구진행 경과 및 계획	9
제2장 축산물 유통 법률안 마련	10
제1절 축산물 유통법 부재의 문제점	10
제2절 개별 법률 마련의 필요성	12
제3절 축산국의 정비안 검토내용	13
제4절 축산물 유통법의 제정안 제시	15
제3장 현행 「축산법」의 개선방안	45

제1절 축산법의 구조 및 내용	54
제2절 축산법의 문제점	55
제3절 축산법 개선방안	57
1. 「축산법」 전부개정 방안 (제1안)	8
2. 「축산법」 전부개정 방안 (제2안)	9
3. 「축산기본법」 제정 방안 (제3안)	15
제4장 축산물 유통현황 및 당면과제	18
제1절 단계별 축산물 유통 현황	152
제2절 축종별 축산물 유통 현황	153
제3절 축산물 유통 문제점	164
제4절 축산물 유통개선에 대한 수요조사	168
제5장 일본의 축산물 유통 관련 법률의 현황	18
제1절 축산 업무의 개요 및 조직도	175
제2절 「축산경영의 안정에 관한 법률」의 구조 및 내용	176
제3절 일본의 농수산물 유통 관련 법제	192
제6장 축산물 유통 관련 법률안 제정시 참고 법률 검토	22

표 목차

표1 축산관련 법률 개관	2
표2 농림축산식품부 내 축산관련 업무 분담 개관	4
표3 축산물 유통법 제정 예시안 개요	16
표4 축산물 유통법 제정 예시안 전문	20
표5 축산물 유통법 별칙 사항 정리표	52
표6 「축산법 전부개정법률안」 (제1안) 개요	8
표7 「축산법 전부개정법률안」 (제1안) 예시	8
표8 「축산법 전부개정법률안」 (제2안) 개요	9
표9 「축산법 전부개정법률안」 (제2안) 예시	9
표10 「축산기본법 제정안」 (제3안) 개요	15
표11 「축산기본법 제정안」 (제3안) 예시	18
표12 쇠고기 유통단계	154
표13 쇠고기(한우) 유통단계별 경로 및 비율, 2020년	5
표14 돼지고기 유통단계	156
표15 돼지고기 유통단계별 경로 및 비율, 2020년	16
표16 닭고기 유통단계	157
표17 닭고기 유통단계별 경로 및 비율, 2020년	18
표18 오리고기 유통단계	159
표19 오리고기 유통단계별 경로 및 비율, 2020년	19

표20 계란 유통단계	161
표21 계란 유통단계별 경로 및 비율, 2020년	161
표22 벌꿀 유통단계	162
표23 2020년 유통단계별 축종별 가격	163
표24 2020년 축종별 유통경로 비중	164
표25 한우 유통개선 과제	168
표26 돼지고기 유통개선 과제	169
표27 축종별, 암수별 도축실적 ('21년 6월 기준)	171
표28 도축산업의 문제점과 당면과제	171
표29 도축작업장 유통개선을 위한 과제의 우선순위	173
표30 일본 농림수산부 생산국 내 조직도	176
표31 일본의 「축산경영의 안정에 관한 법률」의 내용 개요	177
표32 일본의 「축산경영의 안정에 관한 법률」 전문 번역본	178
표33 일본의 「도매시장법」 개정 전후 주요내용	201
표34 수산물 유통법 분석 개요	207
표35 「산림기본법」 및 기타 관련법률 검토 개요	211

제1장 서론

제1절 축산관련 법률의 개관 및 연구의 필요성

1. 축산관련 법률의 개관

- 현재 축산과 관련된 사항을 규율하는 다양한 법률들이 제정·시행되고 있다. 대부분의 축산관련 법률의 소관부처는 농림축산식품부이다.
- 그러나 몇몇 법률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환경부가 소관부처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몇몇 법률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법을 공유하고 있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환경부가 소관부처이나, 동법률의 시행규칙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소관부처이다.
 - 「축산물위생관리법」의 경우 소관부처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이나, 관련 업무가 축산물품질평가원과 농림축산물검역본부 업무의 근거법이기도 하다.
- 수입농산물의 유통이력 관리제도는 2009년부터 관세청이 담당해왔다. 다행히 이 제도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하기로 부처간 합의가 진행되어 현재 관련 작업이 진행 중이다. 관련 제도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근거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 같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축산 업무 중에서도 법에 따라 담당 기관이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로 나누어지는 경우도 있고,
- 축산물 유통 업무는 농림축산식품부 내의 축산국이 별도의 근거법이 없어서 (농산물)유통국의 법률을 차용하여 업무를 집행하고 있으며, 축산물품질평가원가 담당하고 있는 축산물 유통정보 업무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표1 : 축산관련 법률 개관>

분야	법명	법의 목적	소관부처
일반	축산법	가축의 개량·증식,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 및 유통개선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농림축산식품부
이력 관리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가축 및 축산물의 이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농림축산식품부
원산지 표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농산물·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축산물 위생 및 품질 관리	축산물 위생관리법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축의 사육·도살·처리와 축산물의 가공·유통 및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 등급 표시 위반	학교급식법	학교급식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	교육부
전염병	가축전염병	가축의 전염성 질병이	농림축산식품부

관리	예방법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음	
낙농 유통	낙농진흥법	낙농산업의 구조 개선, 원유와 유제품의 수급 조절, 가격 안정과 유통 구조의 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 유통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절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축산물 유통 및 축산업 육성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	농림축산식품부
사료 관리	사료관리법	사료의 수급안정·품질관리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	농림축산식품부
동물 보호	동물보호법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농림축산식품부
초지 관리	초지법	초지의 조성·관리·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	농림축산식품부
축산 환경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함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	환경부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농림축산식품부

	관한 규칙	이용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축산업 육성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축산계열화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축산농가 및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축산농가와 축산계열화사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와 상호협력 관계를 도모	농림축산식품부
양봉 산업 육성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생태계의 유지·보전과 관련하여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관리하고,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농림축산식품부
말산업 육성	말산업 육성법	말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	농림축산식품부

<표2 : 농림축산식품부 내 축산관련 업무 분담 개관>

업무분야	담당기관	근거법령
축산물 등급판정·품질평가 및 유통 업무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법
학교급식에서 축산물 등급표시 위반	축산물품질평가원	학교급식법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	축산물품질평가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 및 축산물의 개체식별을 위한

		DNA동일성검사방법(고시) 축산물 이력관리 조사 요령(고시)
안전관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사료검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료관리법
수입축산물 검사, 수입축산물 이력관리 (수입농산물 검사)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축산물위생관리법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축산물 유통정보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법

2. 연구의 필요성

- 축산물을 향한 소비자의 요구가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소비자들은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축산물 가격이 적정한 선에서 유지될 것, 축산물의 공급이 안정적인 것을 요구한다. 또한 최근에는 축산업으로 인하여 환경이 오염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소비자들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 코로나로 인해 식량공급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계란공급이 불안정해지고, 삼겹살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자 축산물의 안정적인 공급 및 적정 가격의 유지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증가하였다.
- 자유무역협정의 발효로 인하여 축산물 수입량이 증가하였고, 예측할 수 없는 대규모 가축 전염병이 수시로 발생하면서 생산자 역시 축산물 유통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
- 이렇듯 소비자들의 다양한 요구사항과 축산업계의 요청을 반영하여 축산을 담당하는 부처에서는 이들의 타당한 요구를

정책화하고 이를 실행하여야 한다. 정책을 만들어 실행화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법률이다.

- 법은 정책집행의 근거가 되고, 집행의 일관성과 예견가능성을 담보하며, 때로는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거나 정책을 집행할 의무를 부과하기도 한다.
- 축산관련 법률은 분야별로 매우 다양한데, 기본법에 해당하는 축산법에서 산재된 축산관련 법령에 대한 근거조항을 두고 있지 않아 법률의 수범자들로 하여금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 또한 축산관련 법률 중 소관부처가 식품의약품안전처나 환경부인 업무분야에 대해서는 동일한 업무분야에 대하여 정책의 일관성 확보 내지는 효과적인 업무집행이 어렵다.

제2절 연구의 진행방향

- 축산분야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는 크게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 축산물 공급 및 가격의 안정, 축산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로 구분할 수 있다.
- 해당 연구에서는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 부분은 무항생제 인증 및 관리에 관한 부분을 축산물 유통관련 법률안에 포함시키는 것 이외에는 연구를 진행하지 않고, 축산물 공급 및 가격안정을 위한 축산물 유통 법률안 마련을 위한 연구와 친환경 축산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한다.
- 「축산법」은 여러 분야와 함께 축산업의 수급조절·가격안정 및 유통개선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려는 당초의 목적과는 달리 관련 규정이 다소 미비하여 축산물 유통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이 제한적이다.
- 따라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축산물 유통 관련 업무를 집행하여 왔다.

- 그러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농산물 유통에 대한 내용으로 당초 설계되었기에 도축이라는 단계가 추가되는 축산물 유통의 고유한 상황에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공동 소관부처인 해양수산부 역시 수산물 유통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별도로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다.
- 해당 연구에서는 축산물 유통에 대한 정책적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축산물 유통관련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관련 규정들을 새롭게 제시하고자 한다.
 - 이를 위하여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법」, 「축산계열화법」, 「축산법」,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축산국의 검토사항등을 검토한다.
- 다음으로 축산환경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 축산물 유통 관련 조항을 삭제하며, 기본법으로서의 면모를 제정비하기 위하여 축산법 개정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 이를 위하여 「산림기본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축산법」, 축산국 검토사항 등을 검토한다.
- 연구결과가 필요성에 부합하고 제대로 활용되기 위하여 발주 기관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
 - 축산물 유통 및 축산환경과 관련하여 어떠한 정책적 수요가 있는지에 대하여 연구가 종료되기 전에 미리 상호 소통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제3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 국내 축산물 유통 관련 법령등의 현황 분석
 - 「축산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관련법(「축산계열화법」, 「축산자조금법」, 「가축 및 축산물 이력 관리에 관한 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내 축산물 유통 관련 사항 분석 및 평가
 - 유통에 대한 규제법률로서 「공정거래 및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 「유통산업발전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검토
- 국내 축산물 유통 현황 조사 및 분석
 - 농산물 유통과 다른 축산물 유통만의 특수성 발굴
- 타국 축산물 유통 관련 법률에 대한 조사 및 분석과 시사점 발굴
- 국내 축산물 유통 관련 정책 수요(현행 법률로 대응하기 어려운 유통 관련 사항,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사항) 발굴
- 축산분야 유통법률 정비 방향 제시 및 법률안 마련
- 관련 타법률과의 관계 검토

2. 연구방법

- 현행 법령등의 현황 분석 : 자료 분석 방법
- 현행 법령등의 현황 분석에 따른 평가 : 분석된 자료를 기초로 연구자간 회의
- 해외 축산물 유통관련 법률 현황 조사 : 자료 분석 방법
- 국내 축산물 유통 현황 조사 및 분석 : 자료 분석 및 시장조사
- 축산물 유통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농산물 유통과 달리 정비

해야 할 사항에 대한 발굴 및 분석 : 분석된 자료를 기초로
연구자간 회의

- 국내 축산물 유통 관련 정책 수요 발굴 : 발주기관과의 회의
- 축산분야 유통법률 정비방향 제시 및 법률안 마련 : 분석된 자료를 기초로 연구자간 회의, 발주기관과의 회의
- 용역결과물의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연구 추진 단계별로 필요시 발주기관과의 충분한 협의 예정

3. 연구진행 경과 및 계획

- 착수보고회 : 6월 18일/축산물품질평가원
- 1차 연구자간 회의 : 7월 30일/전남대학교 법전원 305호 회의실
- 2차 연구자간 회의 : 8월 17일/전남대학교 법전원 305호 회의실
- 3차 연구자간 회의 : 8월 27일/전남대학교 법전원 305호 회의실
- 중간결과보고서 작성 : ~ 9월 7일
- 중간보고회 : 9월 8일/축산환경관리원
- 4차 연구자간 회의 : 9월 15일/전남대학교 법전원 305호 회의실
- 5차 연구자간 회의 : 9월 29일/전남대학교 법전원 305호 회의실
- 중간보고회 결과 반영 및 최종보고서 작성 : 9월 30일
- 최종보고회 : 9월 30일/축산물품질평가원

제2장 축산물 유통 법률안의 마련

제1절 축산물 유통법 부재의 문제점

- 현행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농수산물’에 ‘축산물’을 포함시킴으로써 축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는 것 또한 목적으로 설계되었다.
 - 그러나 축산물의 유통에는 도축단계가 포함하고, 부분별 포장되어 판매되며, 저장방법 또한 다르기 때문에 농산물의 유통체계와 근본적으로 구별이 된다. 따라서 현행법만으로 정책적 수요에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 축산물은 우리나라 국민의 주요 단백질 공급원임에도 불구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가축 질병의 발생과 급속한 확산으로 안정적인 공급에 대한 불안이 크고,
- 산지 및 도축과 도·소매를 거치는 유통경로가 복잡하여 생산자가 받는 가격에 비하여 소비자에게 매우 비싸게 팔리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나, 축산물의 유통과정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률이 없다.
- 또한 축산물은 유통과정에서 도축 및 분할·포장이 중요한 기능을 차지하고 있는 특성상 이 부분이 축산물 유통의 중심점임을 고려할 때 이 분야의 기능과 역할이 중요할 실정이나 그동안 「축산물위생관리법」을 통한 규제 중심의 제도만을 운영하였을 뿐 축산물 유통 관련 종사자와 축산물 유통효율화를 위한 근거 내지는 지원규정이 없다.
- 따라서 축산물 유통산업 육성 및 효율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기본법을 마련하고, 이를 통하여 여러 법률에 분산되어 있는 축산물 유통과 관련된 조항을 단일법률로서 체계

적으로 정비하며, 필요한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 아울러 최근 수입산 축산물의 공급증가로 인해 축산물의 가격 하락을 염려하는 일부 축산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거나 부과를 앞두고 있어 국민들의 불신을 받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 이에 축산물의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다른 법률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련 규정을 축산물 유통법률안에 포함하고, 필요한 새로운 법규정을 마련하여 축산물 유통의 육성 및 효율화와 함께 축산물의 모든 유통과정에서의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 또한 최근에 축산물 유통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데,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온라인을 통한 유통에 대한 요구 또한 폭증하였다 할 수 있다.
- 비대면 경제 활성화로 인한 유통 여건 변화에 대응하며 가축 전염병 발생 시에도 안정적으로 축산물을 유통하고, 유통비용 절감등을 위해 온라인으로 축산물(소, 돼지) 영상, 등급판정등 정보를 제공하고 구매자(중도매인, 매참인등)는 온라인으로 경매 참여가 가능한 비대면 거래 시스템 마련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 이를 위해서는 아울러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조사하고 있는 유통정보 업무에 대한 명확한 업무 범위 확정과 해당 정보의 활용 및 제공에 대한 근거 규정 또한 필요하다.
- 따라서 축산물의 유통 과정을 관리·개선하고, 유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 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 축산물 유통관련 종사자들의 자생적인 경쟁력 강화 노력을 지원함으로써 급속한 유통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지속적인 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근거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

제2절 개별 법률 마련의 필요성

- 축산물 유통에 관한 규정들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축산법」 등에 산재되어 있으며,
- 「축산법」은 축산업 허가등의 축산관련 다양한 내용을 포괄하고 있는 기본법으로서 정비되어야 하므로 축산물 유통 관련 모든 내용을 「축산법」에 담기에는 부적절하고,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은 축산물을 농산물에 포함시켜 관리하고 있어 농산물 유통은 도축과정이 포함되지 않는등 축산물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여 축산물 유통에 적합하지 않다.
- 따라서 축산물 유통법의 부재에 따른 문제점과 유통법 제정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축산물 유통에 필요한 내용을 별도의 법률로 마련하여야 한다.
-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축산물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축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축산물 도매시장, 축산물 전자거래시스템의 구축, 가축시장의 운영, 축산물유통업의 허가, 축산물등급판정, 축산물 품질관리등이다.
- 제정안에 따른 경우 축산물의 특성이 반영된 축산물 유통의 관리가 가능하고 유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며, 수산물 유통관련 종사자들의 자생적인 경쟁력 강화 노력을 지원함으로써 급속한 유통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축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기반이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 축산물의 유통 및 지원에 대하여 종합적·체계적으로 규정한 개별법을 제정할 필요하다.

제3절 축산국의 정비안 검토내용

□ 축산물 유통산업 육성

- (축산물 유통업 발전 시책의 수립·시행) 신설
 - 유통업 및 도축산업 발전에 필요한 각종 시책의 근거가 되는 일반적·선언적 문구 삽입 또는 육성계획, 실천계획등 수립
- (축산물 유통 효율화등을 위한 재정지원) 신설
 - 도축장등 구조조정, 패커 육성, 부분육·포장육 거래등 유통 효율화에 필요한 재정지원 근거 마련

□ 축산물의 수급조절

-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의 설치등) 축산법(제32조의4)에서 이관
- 기타 수급 분야에서 유통과 연관이 있는 이슈 발굴 필요

□ 가축시장의 운영

- (가축시장의 개설) 축산법(제34조)에서 이관
- (가축거래상인의 등록) 축산법(제34조의2)에서 이관
- (가축거래상인 등록의 결격 사유) 축산법(제34조의3)에서 이관
- (가축거래상인의 등록 취소등) 축산법(제34조의4)에서 이관
- (가축거래상인의 준수사항) 축산법(제34조의5)에서 이관
- (가축거래상인에 대한 감독) 축산법(제34조의6)에서 이관

□ 축산물의 품질 향상

- (축산물의 등급판정) 축산법(제35조)에서 이관
 - AI 등급판정, 자동등급판정시스템등을 위한 근거 추가
-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법(제36조)에서 이관

- (축산물품질평가사) 축산법(제37조)에서 이관
- (품질평가사의 업무) 축산법(제38조)에서 이관
- (도축장 경영자의 준수사항) 축산법(제39조)에서 이관
- (등급의 표시) 축산법(제40조)에서 이관
- (등급제 의무 시행) 축산물위생관리법(제27조)와 연계하여 검토
 - * 등급판정을 받지 않거나 거부·방해한 경우 도축장 영업 취소 가능
-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 및 관리) 축산법(제42조의2~10)에서 이관
- (기타 인증제 도입)

□ 축산물의 공정한 거래

- * 공정거래법, 계열화법과 함께 검토 필요
- (영업정지 처분등의 요청) 축산법(제41조)에서 이관
- (도매시장법인등에 대한 감독) 축산법(제42조)에서 이관
- (축산물 거래가격 의무신고제) 신설
 - 축산계열화법 제32조의2(판매가격의 보고·공개)와 연계 검토
- (불공정거래의 금지) 신설
 - 수직·수평계열화에 따른 담합, 기업 내부거래등 불공정 행위를 제한하고 필요 시 조사 실시
- (부정행위의 금지) 축산물위생관리법(제10조*, 제12조의2**)에서 이관
 - * 누구든지 가축에게 강제로 물을 먹이거나 ~ 아니 된다.
 - ** 출하 전 절식, 양물 투여 금지기간등 ~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축산물 온라인 유통등

- (전자민원창구의 설치·운영) 축산법(제40조의2)에서 이관

- (축산물 유통정보 제공) 신설
 - 축산물 유통정보 조사, 소비실태 조사, 경매정보 분석, 해외 유통조사, 등급·이력정보 빅데이터 서비스등 근거 마련
- (온라인 거래 활성화) 신설
 - 축산물 도매시장 온라인 경매 플랫폼 구축의 근거 마련
- 축산물의 수입 및 관리
 - (축산물등의 수입 추천등) 축산법(제30조)에서 이관
 - (수입 축산물의 관리) 축산법(제31조)에서 이관

제4절 축산물 유통법의 제정안 제시

- 축산물 유통관련 분야 중 축산물의 도매와 관련된 부분 즉 축산물의 공판장, 민영 도매시장에 관한 내용은 추후 관련 연구가 진행된 이후 그 결과에 따라 조문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관련 조항을 축산물 유통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수정하는 작업이 필요함
 - 예를 들어, 농안법 제17조에 따르면 도매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류(部類)별로 또는 둘 이상의 부류를 종합하여 중앙도매시장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개설하고, 지방도매시장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개설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축산물 도매시장의 경우 농협계열 공판장과 민영도매시장만 존재하기 때문에 관련 조항인 제17조, 제43조, 제47조의 통합 및 수정이 필요하다.
 - 농안법 제29조에 따르면 산지유통인을 등록하도록 되었는데, 축산물 도매의 경우 산지유통인 제도가 운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삭제가 가능하다.

<표3 : 축산물 유통법 제정 예시안 개요>

□ 총 8개의 장, 62개의 조문으로 구성

○ 축산물 도매관련 내용이 추가될 경우 1개의 장이 늘어나게 됨

장 및 절	조	내용	참고
제1장 총칙	제1조	법의 목적	
	제2조	정의	농안법, 수산물 유통법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유통산업발전법, 수산물 유통법
	제4조	타법과의 관계	유통산업발전법, 수산물 유통법 제4조
제2장 축산물 유통 기반의 조성 등	제5조	축산물 유통 정보화 사업	수산물 유통법 제51조
	제6조	축산물 전자거래의 활성화	농림부 의견수렴, 농안법 제70조의2, 수산물 유통법 제52조
	제7조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농안법 제76조, 수산물 유통법 제8조, 축평원 의견수렴
	제8조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농안법 제5조의 3, 축평원 의견수렴
	제9조	전자민원창구의 설치·운영	축평원 의견수렴
	제10조	유통시설의 현대화 지원	수산물 유통법 제22조의2

	제11조	축산물 거래가격의 보고·공개	축산계열화법 제32조의2
	제12조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법 제36조
제3장 축산물의 수급관리 등	제13조	축산물수급조절협회의 설치	축산법 제32조의4
	제14조	축산물 수급관측	수산물 유통법 제38조
	제15조	계약생산	농안법 제6조
	제16조	물수축산물 등의 이관	농안법 제9조의2
	제17조	수급조절협약 및 명령	농안법 제10조, 축산계열화법 제5조
	제18조	수급조절명령의 집행	농안법 제11조
	제19조	수급조절명령 이행자에 대한 지원 등	농안법 제12조
	제20조	비축사업 등	농안법 제13조
	제21조	축산물 등의 수입 추천 등	축산법 제30조
	제22조	수입 축산물의 관리	축산법 제31조
	제23조	수입이익금의 징수	축산법 제45조
제4장 가축시장의 운영	제24조	가축시장의 개설	축산법 제34조
	제25조	가축거래상인의 등록	축산법 제34조의2
	제26조	가축거래상인 등록의 결격 사유	축산법 제34조의3
	제27조	가축거래상인의 등록	축산법 제34조의4

		취소 등		
	제28조	가축거래상인의 준수사항	축산법 제34조의5	
	제29조	가축거래상인에 대한 감독	축산법 제34조의6	
제5장 축산물 유통업의 허가 등	제30조	축산물 유통업의 허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	
	제31조	축산물 유통업의 시설기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	
	제32조	축산물 유통업의 신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	
	제33조	품목 제조의 보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5조	
	제34조	영업의 승계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6조	
	제35조	허가의 취소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7조	
제6장 축산물 품질 관리	제1절 축산물 의 등급 판정	제36조	축산물의 등급판정	축산법 제35조
		제37조	축산물품질평가사	축산법 제37조
		제38조	품질평가사의 업무	축산법 제38조
		제39조	도축장 경영자의 준수사항	축산법 제39조
		제40조	등급의 표시	축산법 제40조
		제41조	영업정지처분 등의 요청	축산법 제41조
		제42조	등급판정 업무를 위한	축산법 제42조

			감독	
	제2절 무항생제 축산물 의 인증	제43조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	축산법 제42조의2
		제44조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신청 및 심사 등	축산법 제42조의3
		제45조	인증의 유효기간 등	축산법 제42조의4
		제46조	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	축산법 제42조의5
		제47조	무항생제축산물의 표시 등	축산법 제42조의6
		제48조	인증의 취소 등	축산법 제42조의7
		제49조	인증기관의 지정 등	축산법 제42조의8
		제50조	인증등에 관한 부정행위 금지	축산법 제42조의9
		제51조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의 사후관리	축산법 제42조의10
		제52조	인증사업자 등의 승계	축산법 제42조11
		제53조	준용규정	축산법 제42조12
제7장 보칙	제54조	수수료	축산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5조	청문	축산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6조	권한의 위임·위탁	축산법	
	제57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축산법	

		의제	
제8장 벌칙	제58조	벌칙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59조	벌칙	축산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0조	벌칙	축산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1조	양벌규정	축산법
	제62조	과태료	축산법

<표4 : 축산물 유통법 제정 예시안 전문>

(가축거래와) 축산물 유통에 관한 법률(가칭)
제1장 총칙
<p>제1조(목적) (1안) 이 법은 축산물 유통기반의 조성과 축산물의 수급조절, 가축시장의 운영, 축산물 유통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2안) 이 법은 축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절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이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축산물”이란 축산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p>

2. “축산물 유통업”이란 제31조에 따른 도축업·식육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축산물보관업·축산물운반업·식육판매업·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말한다.

(2안) “축산물 유통업”이란 도축업 및 축산물의 저장·처리·가공·판매 및 유통개선에 관한 업을 말한다.

3. “가축”이란 사육하는 소·말·면양·염소[유산양(乳山羊: 젖을 생산하기 위해 사육하는 염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돼지·사슴·닭·오리·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動物)등을 말한다.

4. “가축거래상인”이란 소·돼지·닭·오리·염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을 구매하거나 그 가축의 거래를 위탁받아 제3자에게 알선·판매 또는 양도하는 행위(이하 “가축거래”라 한다)를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제2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5. “도축장경영자”란 제30조에 따른 도축업(소 또는 돼지를 도축하는 영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6. “축산물의 전자거래”란 축산물 전자 경매시스템을 이용하여 경매업무를 포함하여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의 방식으로 축산물을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축산물 유통산업의 육성과 축산물 유통의 효율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축산물유통시책과 조화를 이루면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 축산물 유통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타법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축산물 유통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축산물의 유통과 관련하여 이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제2장 축산물 유통 기반의 조성 등

제5조(축산물 유통 정보화 사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 유통 정보의 원활한 수집·관리 및 제공을 통한 축산물의 유통 효율화 및 전자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또는 사업시행자를 지정

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축산물 유통 체계의 정보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보급
2. 공판장등 축산물 유통시설의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3. 축산물의 전자적 거래를 위한 축산물전자거래시스템의 구축 및 보급
4. 축산물 유통정보 또는 유통정보시스템의 규격화 촉진
5. 축산물 유통 정보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의 수행
6. 그 밖에 축산물 유통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6조(축산물전자거래의 활성화)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의 전자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축산물 거래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의 거래와 관련된 업무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의 전자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유통의 효율화를 위하여 축산물의 유통정보, 소비실태, 경매정보, 해외 축산물 유통상황, 축산물 등급·이력정보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축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축산물의 유통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며, 공표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축산물유통사업자 및 관련 단체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축산업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의 원활

한 수급과 적절한 가격 유지를 위하여 축산물 유통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 유통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축산물 유통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전자민원창구의 설치·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6조제1항에 따른 등급판정확인서와 가축과 축산물 관련 서류의 열람, 발급신청 및 발급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자민원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민원인에게 제1항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와 다른 중앙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계된 정보를 결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유통시설의 현대화 지원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판장 등 축산물 유통시설의 현대화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축산물 유통업의 규모화와 구조개선 등 중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축산물유통업구조개선협의회(이하 “구조개선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③ 구조개선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축산물 유통업의 규모화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축산물 유통업의 구조개선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3. 축산물 유통업의 규모화 및 구조개선 지원을 위한 자금 지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가축과 축산물 유통업의 규모화와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④ 구조개선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축산물 유통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조개선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축산물 거래가격의 보고·공개) ① 축산물 유통업자 및 「축산물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의 계약농가, 계열화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축산물의 거래가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축산물의 가격 적정화를 위하여 축산물의 거래가격을 공개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축산물 거래가격 보고 및 공개에 관한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 거래가격 보고 및 공개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대상과 범위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축산물품질평가원) ① 축산물 등급판정·품질평가 및 유통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이하 “품질평가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품질평가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품질평가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품질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축산물 등급판정
2. 축산물 등급판정을 위한 전자시스템의 운영
3. 축산물 등급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축산물 등급판정 기술의 개발
5. 제37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품질평가사의 양성
6. 축산물 등급판정·품질평가 및 유통에 관한 조사·연구·교육·홍보사업
7.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 및 축산물 이력제에 관한 업무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과 관련한 국제협력사업

9. 축산물 등급판정·품질평가 및 유통 업무와 관련된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자에게서 위탁 또는 대행받은 사업 및 그 부대사업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 각 호의 사업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평가원에 제4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명령이나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과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⑧ 품질평가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축산물의 수급관리 등

제13조(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의 설치) ① 가축 및 축산물(「낙농진흥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원유 및 유제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과 관련된 중요 사항에 대한 자문(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이하 “수급조절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수급조절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1. 축산물의 품목별 수급 상황 조사결과에 대한 분석 및 판단에 관한 사항
2. 축산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에 관한 제도 및 사업의 운영·개선 등에 관한 사항
3. 축종별 수급안정을 위한 대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자문하는 사항

③ 수급조절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가축 및 축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급조절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과 축종별 소위원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축산물 수급관측)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의 수급안정을 위

하여 주요 축산물에 대하여 매년 기상정보, 생산면적, 가축전염병 발병상황, 도축물량, 출하물량, 재고물량, 소비동향, 해외시장 정보등을 조사하여 이를 분석하는 축산물 수급관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축산물 수급관측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축산업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축산물 수급관측 전담기관에 품목을 지정하여 축산물 수급관측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축산물 수급관측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과 품목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계약생산)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주요 축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절한 가격 유지를 위하여 축산물 유통업자, 「축산물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의 계약농가, 계열화사업자, 축산물 수요자와 생산자 간에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생산계약 또는 출하계약을 체결하는 생산자 또는 수요자에 대하여 「축산법」 제43조에 따른 축산발전기금으로 계약금의 대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몰수축산물 등의 이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내 축산물 시장의 수급안정 및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관세법」 제326조 및 「검찰청법」 제11조에 따라 몰수되거나 국고에 귀속된 축산물(이하 “몰수축산물 등” 이라 한다)을 이관받을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관받은 몰수축산물 등을 매각·구매·기부 또는 소각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몰수축산물 등의 처분으로 발생하는 비용 또는 매각·구매대금은 「축산법」 제43조에 따른 축산발전기금으로 지출 또는 납입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몰수축산물 등의 처분업무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중에서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몰수축산물 등의 처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수급조절협약 및 명령) ① 주요 축산물의 생산자, 축산업 유통업자, 「축산물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의 계약농가, 계열화사업자 및 소비자 등 (이하 “생산자 등”이라 한다)의 대표는 해당 축산물의 자율적인 수급조절과 품질향상을 위하여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위한 협약(이하 “수급조절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사육동향 및 축산물의 시장가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잉생산 또는 가격불안정 등이 예측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계열화사업자가 일정 기간 동안 축산물의 생산자 등에게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하도록 하는 수급조절명령(이하 “수급조절명령”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의 기준과 구체적인 절차,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수급조절명령의 집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급조절명령이 이행될 수 있도록 수급조절명령의 내용에 관한 홍보, 유통명령 위반자에 대한 제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해당 축산물의 생산자등의 조직 또는 생산자단체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수급조절명령 집행업무의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수급조절명령 이행자에 대한 지원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급조절협약 또는 수급조절명령을 이행한 생산자등이 그 협약이나 명령을 이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는 「축산법」 제43조에 따른 축산발전기금으로 그 손실을 보전(補填)하게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3조제2항에 따라 수급조절명령 집행업무의 일부를 수행하는 생산자등의 조직이나 생산자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급조절명령 이행으로 인한 손실 보전 및 제2항에 따른 수급조절명령 집행업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비축사업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축산법」 제43조에 따른 축산발전기금으로 축산물을 비축하거나 축산물의 출하를 약정하는 생산자에게 그 대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여 출하를 조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축용 축산물은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로부터 구매하여야 한

다. 다만, 가격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서 구매하거나 수입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 단서에 따라 비축용 축산물을 수입하는 경우 국제가격의 급격한 변동에 대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물 거래(先物去來)를 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축용 축산물의 구매·수입·관리 및 판매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축산물등의 수입 추천 등) ①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에 따른 대한민국 양허표(讓許表)의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로 축산물 및 「축산법」 제29조에 따른 종축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축산물 및 종축등의 수입 추천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비영리법인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품목별 추천 물량·추천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22조(수입 축산물의 관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입 축산물의 관리·부정유통 방지, 그 밖에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1조에 따른 추천을 받은 자,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을 받아 축산물을 수입하는 자 또는 수입된 해당 축산물을 판매 또는 가공하는 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하거나 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수입 축산물의 판매가격·방법 및 시기
2. 수입 축산물의 용도 제한
3. 수입 축산물의 사용량 및 재고량에 관한 보고

제23조(수입이익금의 징수)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1조에 따른 추천을 받아 축산물을 수입하는 자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을 수입하는 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가격과 수입가격의 차액의 범위에서 수입이익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입이익금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에 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입이익금을 소정의 기한 내에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4장 가축시장의 운영

제24조(가축시장의 개설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가축시장을 개설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지역축산업협동조합 또는 축산업의 품목조합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축산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비영리법인의 지부를 포함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시장을 개설한 자에게 가축시장 관리에 필요한 시설의 개선 및 정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과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5조(가축거래상인의 등록) ① 가축거래상인이 되려는 자는 「축산법」 제33조의2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가축거래상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3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
2. 폐업한 경우
3. 3개월 이상 휴업하였다가 다시 개업한 경우
4. 등록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제26조(가축거래상인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가축거래상인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제27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동조 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가축전염병예방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27조(가축거래상인의 등록취소 등)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가축거래상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28조에 따른 가축거래상인의 준수사항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다른 사람에게 그 등록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
5.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
6. 마지막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날부터 최근 1년 이내에 세 번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2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제28조(가축거래상인의 준수사항) 가축거래상인은 가축질병의 예방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29조(가축거래상인에 대한 감독) 가축거래상인으로 등록한 자에 대한 감독에 관하여는 「축산법」 제2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축사육업”은 “가축거래상인”으로 본다.

제5장 축산물 유통업의 허가 등

제30조(축산물 유통업의 허가) ① 제3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4호에 따른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축산물보관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을 허가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영업장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2. 도축업을 하는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같은 작업장에서 도살·처리하는 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 나. 같은 작업장에서 다른 종류의 가축을 도살·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나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1. 해당 시설이 제31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35조제1항 또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2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같은 장소에서 취소된 허가과 같은 종류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다만,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3. 제35조제1항 또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2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취소된 허가과 같은 종류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4.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피성년후견인이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인 경우
5.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인 경우
6. 제10조에 따른 도축장구조개선자금을 지급받고 폐업한 도축장이 소재한 같은 장소(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축업의 허가를 받은 부지를 말한다)에서 폐업한 날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도축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7. 제35조제1항 또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정지 기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8. 제35조제1항 또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9.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3조의2제5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허가 보류 요청을 받은 경우
10.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 ④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를 할 때에는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영업을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하거나 허가받은 사항 중 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 외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8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⑦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6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한 것으로 본다.

제31조(축산물 유통업의 시설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도축업
2. 집유업
3. 축산물가공업
4. 식용란선별포장업
5. 식육포장처리업
6. 축산물보관업
7. 축산물운반업
8. 축산물판매업
9. 식육즉석판매가공업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축산물 유통업의 신고) ① 제31조제1항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하거나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35조제1항 또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4항에 따른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다만,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제35조제1항 또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4항에 따른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 2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자(법인

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3. 제35조제1항 또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 기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4. 제35조제1항 또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정지된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제1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만 해당한다)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⑦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3조(품목 제조의 보고) 제30조에 따라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축산물을 가공하거나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식육을 포장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품목의 제조방법설명서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34조(영업의 승계) ① 영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인

영업자가 합병하였을 때에는 그 상속인이나 영업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하 “양수인등”이라 한다)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용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계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 및 제32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35조(허가의 취소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소 폐쇄(제60조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조제5항·제6항, 제5조제2항,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제3항, 제9조의3제7항, 제10조,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 제1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4조제2항,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제5항, 제29조제2항·제3항, 제30조제5항·제6항, 제31조, 제31조의2제1항·제2항, 제3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1조의4제1항 후단·제2항 단서, 제33조제1항 또는 제34조를 위반한 경우
2. 제30조제5항, 제31조, 제32조제2항, 제33조를 위반한 경우
2.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제30조제3항 또는 제3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5조, 제36조제1항·제2항, 제37조제1항 또는 제

4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5. 제36조에 위반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에 대하여 등급 판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

6. 제39조 제3항을 위반하여 등급판정업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도축장의 경영자만 해당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면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

2. 영업자(제30조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만 해당한다)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사실상 폐업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제2호에 따른 영업허가 취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 등에게 승계되며,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등에 대하여 처분의 절차를 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등이 양수, 상속 또는 합병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6장 축산물 품질관리

제1절 축산물의 등급판정

제36조(축산물의 등급판정) ① 축산물 유통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축산물 등급 거래지역 안에서 축산물의 품질을 높이고 유통을 원활하게 하며 가축 개량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에 대하여는 그 품질에 관한 등급을 판정(이하 “등급판정”이라 한다)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급판정은 제12조의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운영하는 전자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등급판정을 받아야 하는 축산물, 전자시스템을 활용한 등급판정의 처리방법·기준 및 적용조건, 그 밖에 등급판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급판정을 받은 축산물의 거래 지역 및 시행 시기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거래 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이하 “고시지역”이라 한다) 안에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축산물 도매시장의 축산부류도매시장법인(이하 “도매시장법인”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축산물공판장(이하 “공판장”이라 한다)을 개설한 자는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상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고시지역 안에서 제30조에 따른 도축장을 경영하는 자는 그 도축장에서 처리한 축산물로서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술연구용·자가소비용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축산물품질평가사) ① 품질평가원에 등급판정 업무를 담당할 축산물 품질평가사(이하 “품질평가사”라 한다)를 둔다.

② 품질평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품질평가원이 시행하는 품질평가사시험(이하 “품질평가사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질평가사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로 한다.

1. 전문대학 이상의 축산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품질평가원에서 등급판정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③ 품질평가사시험, 품질평가사의 임면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품질평가원이 정한다.

제38조(품질평가사의 업무) ① 품질평가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급판정 및 그 결과의 기록·보관
2. 등급판정인(等級判定印)의 사용 및 관리
3. 등급판정 관련 설비의 점검·관리
4. 그 밖에 등급판정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품질평가사가 등급판정을 하는 때에는 품질평가사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품질평가사가 제36조에 따라 등급판정을 받아야 하는 축산물에 등급판정하는 것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도축장 경영자의 준수사항) 고시지역 안에서 도축장을 경영하는 자는 등급판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등급판정에 필요한 시설·공간을 확보하는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0조(등급의 표시 등) ① 품질평가사는 등급판정을 한 축산물에 등급을 표시하고 그 신청인 또는 해당 축산물의 매수인에게 등급판정확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② 도매시장법인 및 공판장을 개설한 자는 등급판정을 받은 축산물을 상장하는 때에는 그 등급을 공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급의 표시·등급판정확인서 및 등급의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1조(영업정지 처분 등의 요청)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정 기간의 영업정지(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를 포함한다) 처분을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그 영업에 관한 처분권한을 가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제36조제5항을 위반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상장한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
2. 제36조제6항을 위반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반출한 도축장의 경영자

3.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급판정 업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도축장의 경영자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조치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42조(등급판정을 업무 위한 감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등급판정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 및 도축장의 경영자에게 시설의 개선등 필요한 사항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과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절 무항생제 축산물의 인증

제43조(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무항생제축산물의 산업 육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무항생제축산물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0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에 대한 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의 대상과 무항생제축산물의 생산 또는 취급[축산물의 저장, 포장(소분 및 재포장을 포함한다), 운송 또는 판매 활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필요한 인증기준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4조(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신청 및 심사등) ① 무항생제축산물을 생산 또는 취급하는 자는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을 받으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1. 제48조제1항(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최근 10년 동안 인증이 2회 취소된 경우

에는 마지막으로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최근 10년 동안 인증이 3회 이상 취소된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 한다.

2. 제48조제1항에 따른 인증표시의 제거·사용정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이나 제51조제8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명령을 받아서 그 처분기간 중에 있는 자

3. 제59조제5호부터 제17호까지 또는 제60조제6호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③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43조제3항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기준에 맞는지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고 그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인증을 해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인증심사를 위하여 신청인의 사업장에 출입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신청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을 받은 사업자(이하 “인증사업자”라 한다)는 동일한 인증기관으로부터 연속하여 2회를 초과하여 인증(제45조제2항에 따른 갱신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제53조에 따라 준용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2에 따라 실시한 인증기관 평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을 받은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3항에 따른 인증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인증심사를 한 인증기관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심사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인증기관은 제5항에 따른 재심사를 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심사를 하고 해당 신청인에게 그 재심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⑧ 인증사업자가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한 인증기관으로부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인증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의 신청, 심사, 재심사

및 인증 변경승인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인증의 유효기간등) ①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② 인증사업자가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무항생제축산물(이하 “인증품” 이라 한다)의 인증을 유지하려면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인증을 한 인증기관에 갱신 신청을 하여 그 인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을 한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경우, 인증기관이 파산 또는 폐업 등으로 인증 갱신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인증기관에 갱신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증 갱신을 하지 아니하려는 인증사업자가 인증의 유효기간 내에 생산한 인증품의 출하를 유효기간 내에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인증을 한 인증기관에 출하를 종료하지 못한 인증품에 대해서만 1년의 범위에서 그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출하된 인증품은 그 제품의 유통기한이 끝날 때까지 제47조제1항에 따른 인증표시를 유지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인증 갱신 및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사를 한 인증기관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심사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인증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인증기관은 제4항에 따른 재심사를 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심사를 하고 해당 인증사업자에게 그 재심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 갱신, 유효기간 연장 및 재심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6조(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인증사업자는 인증품의 생산·취급 또는 판매 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인증을 한 인증기관에 알려야 한다.

② 인증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심사와 관련된 서류 등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47조(무항생제축산물의 표시 등) ① 인증사업자는 생산하거나 취급하는

인증품에 직접 또는 인증품의 포장, 용기, 납품서, 거래명세서, 보증서 등에 인증표시(무항생제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도형이나 글자의 표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장을 하지 아니한 상태로 판매하거나 날개로 판매하는 때에는 표시판 또는 풋말에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사업자에게 인증품의 생산방법과 사용자재 등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제43조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는 인증품의 포장을 해체하여 재포장한 후 인증표시를 하여 이를 저장, 운송 또는 판매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인증표시에 필요한 도형이나 글자, 세부 표시사항등 표시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인증의 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인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인증표시의 제거·사용정지 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43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51조제8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전업(轉業), 폐업등의 사유로 인증품을 생산하지 못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 지체없이 인증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고, 인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의 취소, 인증표시의 제거 및 사용정지 등에 필요한 절차와 처분의 기준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9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무항생제축산물 인증과 관련하여 필요한 인력·시설 및 인증업무규정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고,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업무를 계속하려는 인증기관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갱신 신청을 하여 그 지정을 갱신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업무와 제3항에 따른 지정갱신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증기관 지정 및 지정갱신을 위한 평가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⑤ 인증기관은 지정받은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인증업무의 범위, 인증기관의 지정과 지정갱신 관련 절차 및 인증기관의 변경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50조(인증 등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에 따른 인증심사, 재심사 및 인증 변경승인, 제73조에 따른 인증 갱신, 유효기간 연장 및 재심사 또는 제4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갱신을 받는 행위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3조에 따른 인증심사, 재심사 및 인증 변경승인, 제43조에 따른 인증 갱신, 유효기간 연장 및 재심사를 하거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위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3조에 따라 준용되는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부여받는 행위
4.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과 제품을 판매하는 진열대에 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이와 관련된 외국어 또는 외래어 표시를 포함한다)를 하는 행위
5. 인증품에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하는 행위
6. 제43조제1항에 따른 인증 또는 제43조제2항에 따른 인증 갱신을 신청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거짓으로 발급하여 주는 행위

7. 인증품에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등을 섞어서 판매하거나 섞어서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운송 또는 진열하는 행위
8. 제4호 또는 제5호의 행위에 따른 제품임을 알고도 인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운송 또는 진열하는 행위
9. 제48조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제품임을 알고도 인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운송 또는 진열하는 행위
10.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거나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무항생제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문구를 사용한 광고를 포함한다)하는 행위 또는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인증표시와 유사한 표시의 세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51조(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의 사후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 또는 인증기관으로 하여금 매년 다음 각 호의 조사(인증기관은 인증을 한 인증사업자에 대한 제2호의 조사에 한정한다)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 대상자로부터 시료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검사하거나 조사 대상자에게 자료 제출등을 요구할 수 있다.

1. 판매·유통 중인 인증품에 대한 조사
2. 인증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인증품의 생산 또는 취급 과정이 제73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조사의 일시, 목적 및 대상등을 조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미리 알리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품의 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품의 유통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한 경우에는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품의 유통업자에게 조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 결과 중 제1항 후단에 따라 제공한 시료의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품의 유통업자는 시료의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재검사 요청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검사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품의 유통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제6항에 따른 재검사를 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검사를 하고 해당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품의 유통업자에게 그 재검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한 결과 제43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 또는 제47조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의 표시방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때에는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품의 유통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48조제1항에 따른 인증취소, 인증표시의 제거·사용정지 또는 시정조치
2. 인증품의 판매금지·판매정지·회수·폐기
3. 세부 표시사항 변경

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8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인증품의 인증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인증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품의 유통업자가 제8항제2호에 따른 인증품의 회수·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인증품을 압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⑪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8항 각 호에 따른 조치명령의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⑫ 제5항에 따른 조사 결과 통지 및 제7항에 따른 시료의 재검사 절차와 방법, 제8항 각 호에 따른 조치명령의 세부기준, 제10항에 따른 압류 및 제11항에 따른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52조(인증사업자 등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다.

1. 인증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인증품을 계속하여 생산 또는 취급하려는 상속인
2. 인증사업자나 인증기관이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인증사업자나 인증기관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인증심사를 한 인증기관(그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경우, 인증기관이 파산 또는 폐업 등으로 인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인증기관을 말한다)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고, 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지위의 승계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기관에게 한 제48조제1항, 제51조제8항 각 호, 제53조에 따라 준용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53조(준용규정) 인증기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4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2조, 제32조의2 및 제57조를 준용한다.

제7장 보칙

제54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43조제1항에 따라 인증 또는 인증 변경승인을 받거나 제43조제2항·제3항에 따라 인증의 갱신 또는 유효기간 연장을 받으려는 자

2. 제4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거나 인증기관 지정을 갱신하려는 자

3.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는 자

4. 제30조제5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는 자

5.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자

6. 제34조제3항에 따른 영업승계 신고를 하는 자

② 품질평가원은 제36조제1항에 따른 등급판정을 받으려는 자에게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등급판정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징수한 수수료를 등급판정 업무에 드는 경비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 따른 등급판정 수수료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작업장의 경영자 및 제32조에 따른 축산물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징수하여 품질평가원에 내야 한다. 이 경우 품질평가원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작업장의 경영자 및 제32조에 따른 축산물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5조(청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7조에 따른 가축거래상인의 등록취소

2.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허가의 취소나 영업소의 폐쇄명령

제56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1. 제38조제1항에 따라 등급판정 업무에 종사하는 품질평가사

2. 제49조제1항에 따라 인증업무에 종사하는 인증기관의 임직원
3. 제8조제2항, 제11조제3항, 제20조제4항, 제49조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기관·단체의 임직원

제8장 벌칙

제58조(벌칙) ①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2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가축거래를 업으로 한 자
3. 제36조제5항을 위반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축산물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 상장한 자
4. 제36조제6항을 위반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도축장에서 반출한 자
5. 제49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업무를 한 자
6. 제49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지났음에도 인증업무를 한 자
7. 제50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3조에 따른 인증심사, 재심사 및 인증 변경승인, 제45조제2항, 제3항, 제4항에 따른 인증 갱신, 유효기간 연장 및 재심사 또는 제4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갱신을 받은 자
8. 제50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9조에 따른 인증심사, 재심사 및 인증 변경승인, 제79조에 따른 인증 갱신, 유효기간 연장 및 재심사를 하거나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자
9. 제50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

사원의 자격을 부여받은 자

10. 제50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과 제품을 판매하는 진열대에 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이와 관련된 외국어 또는 외래어 표시를 포함한다)를 한 자
 11. 제50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인증품에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한 자
 12. 제50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인증 또는 인증 갱신을 신청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거짓으로 발급한 자
 13. 제50조제1항제7호를 위반하여 인증품에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등을 섞어서 판매하거나 섞어서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운송 또는 진열한 자
 14. 제50조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것임을 알거나 인증품에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한 것임을 알고도 인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운송 또는 진열한 자
 15. 제50조제1항제9호를 위반하여 인증이 취소된 제품임을 알고도 인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운송 또는 진열한 자
 16. 제50조제1항제10호를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거나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무항생제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문구를 사용한 광고를 포함한다)하거나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자
 17. 제53조에 따라 준용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처분을 받았음에도 인증업무를 한 자
 18.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 제6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가축시장을 개설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제1항에 따른 가축거래상인으로 등록한 자

3. 제36조제4항에 따라 거래 지역이 고시된 등급판정 대상 축산물을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고시지역 안에서 판매하거나 영업을 목적으로 가공·진열·보관 또는 운반한 자
4.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품질평가사가 하는 등급판정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39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6. 제51조제8항에 따른 인증품의 인증표시 제거·사용정지 또는 시정조치, 인증품의 판매금지·판매정지·회수·폐기나 세부 표시사항의 변경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7. 제31조제1항에 따른 기준 또는 제30조제4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자
8. 제30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6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8조, 제59조, 제6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4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25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7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한 자
4. 제28조에 따른 가축거래상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5. 제44조제8항을 위반하여 해당 인증기관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한 자
6.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품의 생산·취급 또는 판매 실적을 정기적으로 인증기관의 장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7. 제46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심사와 관련된 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8. 제47조제1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9. 인증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로서 제47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품의 포장
을 해체하여 재포장한 후 인증표시를 한 자
 10. 제49조제5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를 위반하여 중요 사항을 승인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자
 11. 정당한 사유 없이 제51조제1항 또는 제53조에 따라 준용되는 「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12. 제52조를 위반하여 인증기관이나 인증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3. 제53조에 따라 준용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인증 결과 및 사후관
리 결과 등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4. 제53조에 따라 준용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인증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
 15.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
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부과권자”
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표5 축산물 유통법 벌칙 사항 정리표〉

벌칙의 정도	벌칙의 대상	참고 법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축산물유통업 허가조항(제30조) 위반자	축산물위 생관리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수입 축산물 관리 관련조항(제22조) 위반자 가축거래상인 등록 관련조항(제25조) 위반자 등급표시 관련조항(제36조) 위반자 무항생제인증 관련조항 (제49조, 제 50조, 제53조) 위반자 축산물 유통업 허가취소조항(제35조) 위반자	축산법, 축산물위 생관리법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축시장개설 관련조항(제24조) 위반자 가축거래상인 등록 관련조항(제25조, 제27조, 제28조) 위반자 등급판정 관련조항(제36조, 제38조) 위반자 도축장 경영자 준수사항 관련조항(제 39조) 위반자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관련조항(제51 조) 위반자 축산물유통업 허가 및 신고 관련조 항(제30조, 제31조, 제32조, 34조) 위 반자	축산법, 축산물위 생관리법
과태료 500만원	가축시장개설 관련조항(제24조) 위반자 가축거래상인 등록 관련조항(제25조, 제27조) 위반자	축산법, 축산물위 생관리법

	<p>가축거래상인 준수사항 관련조항(제28조) 위반자</p> <p>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신청 관련조항(제44조) 위반자</p> <p>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 관련조항(제46조) 위반자</p> <p>무항생제축산물의 표시 관련조항(제47조) 위반자</p> <p>인증기관의 지정 관련조항(제49조) 위반자</p> <p>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의 사후관리 및 준용 관련조항(제51조, 제53조) 위반자</p> <p>인증사업자 등의 승계 관련조항(제52조) 위반자</p> <p>축산물 유통업의 신고 관련조항(제32조) 위반자</p>	
--	-------------------------------------------------------------------------------------------------------------------------------------------------------------------------------------------------------------------------------------------------------------------------------------------------	--

제3장 현행 「축산법」의 개선방안

제1절 축산법의 구조 및 내용

□ 축산법은 총 7개의 장과 56개의 조로 이루어져 있음. 1963년에 제정되었으며, 지금까지 총 56번의 개정이 이루어짐.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축의 개량·증식,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 및 유통개선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제2장 가축 개량 및 인공수정등

○ 제3장 축산물의 수급등

- 축산업의 허가, 축산물 등의 수입 추천, 수입 축산물의 관리,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국가축산클러스터의 지원·육성,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 축산자조금등

○ 제4장 가축시장 및 축산물의 품질향상등

-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정, 축산환경 개선계획 수립등

○ 제5장 축산발전기금

- 제43조(축산발전기금의 설치) ①정부는 축산업을 발전시키고 축산물 수급을 원활하게 하며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축산발전기금을 설치한다.

○ 제6장 보칙

○ 제7장 벌칙

제2절 축산법의 문제점

- 현행 「축산법」은 ‘가축의 개량·증식,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 및 유통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축산물의 안정적 공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그러나 「축산법」의 규정을 살펴보면, 법의 목적과는 다르게 축산물의 가격안정 및 유통개선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다소 미비하다.
- 「축산법」의 분석 결과
 - 「산림기본법」과 비교시 법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를 나열하여 기본정책을 수립하는 기본법이 아니라 축산 관련 사항 중 특별법이 없는 나머지 분야를 규정하는 법률과 같은 인상을 줌
 - 제3장이 축산물의 수급 등에 대하여 규정하려 하였으나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 및 유통개선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이 부족함
 - 수입 축산물의 관리에 대해서도 1개 조문이 있으나 해당 조문만으로는 필요한 사항을 규율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축산물이력법에서 수입 축산물의 관리를 담당하는지 여부)
 - 축산환경에 대한 내용(2개 조문)이 ‘제4장 가축시장 및 축산물의 품질향상 등’에 포함되어 있는데, 축산업에 따른 환경오염문제가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축산물의 품질’에 대해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규율하고 있으므로 조정이 필요
 - 법의 목적상 축산업의 구조개선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야 하

나, 관련 내용이 미비함

- 축산법이 축산 관련 법률 중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법률이며, 기본이 되는 법률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축산과 관련된 기본적인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며 그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축산 관련 특별법률 마련에 대한 근거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 그러나 현행의 축산법은 이러한 기본법으로서 중심이 되는 법이 아니라 축산 관련 사항 중 특별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아 남아 있는 나머지 분야를 규정하고, 주로 축산업에 대해서만 중점을 두고 있는 법률과 같은 인상을 준다.
- 축산법은 가축의 개량·증식,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 및 유통개선 등 여러 분야를 나열하면서 상당히 폭 넓은 분야에 대한 근거법이 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축산발전시책의 강구(제3조) 이후에 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정 없음.
 - 제3장이 축산물의 수급 등에 대하여 규정하려 하였으나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 및 유통개선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이 부족함
 - 수입 축산물의 관리에 대해서도 2-3개 조문이 있으나 해당 조문만으로는 필요한 사항을 규율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축산물이력법에서 수입 축산물의 관리를 담당하는지 여부)
 - 축산환경에 대한 내용(2개 조문)이 ‘제4장 가축시장 및 축산물의 품질향상 등’에 포함되어 있는데, 축산업에 따른 환경오염문제가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축산물의 품질’에 대해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규율하고 있으므로 조정이 필요
- 법의 목적상 축산업의 구조개선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야 하나, 관련 내용이 미비함

제3절 축산법 개선방안

- 「축산법」 전부개정 또는 「축산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 축산분야는 동물인 가축을 사육하고 그로부터 축산물을 얻는 점에서 타 농업분야와 구분되는 고유의 특성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축산분야를 포괄하면서 축산정책 전반을 규율하는 기본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 이에 따라 축산정책은 농업정책의 기본법에 해당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농업식품기본법”이라 한다)에 따라 매 5년마다 수립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하위 분야로 다루어지고 있다.
 - 「축산법」에 ‘축산발전시책’(제3조), ‘축산발전심의위원회’(제4조), ‘국가축산클러스터’(제32조의2 및 제32조의3), ‘축산발전기금’(제43조 내지 제48조) 등 축산분야 전반에 걸친 기본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이 일부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농업식품기본법,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수산업기본법”이라 한다), 「산림기본법」 등 인접 분야의 기본법과 비교할 때, 기본법의 내용을 충실히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축산법」 중 가축거래 및 축산물 유통에 관한 조문들을 별도로 분리하여, 다른 법률의 축산물 유통에 관한 조문들과 함께 「축산물 유통법」을 제정하고자 한다면, 차제에 「축산법」에 축산정책에 관한 사항을 보강하여 전반적으로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축산법」이 사실상 축산정책에 관한 기본법의 위상을 갖도록 하거나, 아니면 별도로 「축산기본법」을 제정하고 「축산법」 중 개별 축산업과 관련된 조문들은 별도로 「축산업법」으로 제정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 새로운 법의 제정에 따른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하여, 이하에서는 현재의 「축산법」에서 가축거래 및 축산물 유통에 관한 조문들을 제외한 후 축산정책에 관한 부분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축산법」을 전부개정하는 방안을 제1안과 제2안으로 제시하고, 「축산기본법」을 별도로 제정하는 방안을 제3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1. 「축산법」 전부개정 방안 (제1안)

- 제1안은 「축산법」 중 「축산물 유통법」으로 이관될 가축거래 및 축산물 유통에 관한 조문들을 제외한 나머지 조문들과 함께 제2장에 ‘축산정책’을 농업식품기본법을 참고하여 보완함으로써 축산법이 사실상 축산 분야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위상을 갖도록 하는 방안이다.
- 「축산법」의 기존 조문들을 체계적으로 정비함과 아울러, 가축운반차량의 등록, 우수 축산전문관리업체의 지정 등과 같은 「축산법」에 대한 최근 개정 수요도 함께 반영하였다.

<표6 : 「축산법 전부개정법률안」 (제1안) 개요>

장 및 절	조	내용	참고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농업식품기본법 제1조
	제2조	기본이념	농업식품기본법 제2조
	제3조	정의	농업식품기본법 제3조 축산법 제2조

	제4조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축산업·소비자 등의 책임	농업식품기본법 제4조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농업식품기본법 제5조
제2장 축산정책	제6조	축산발전시책의 강구	축산법 제3조
	제7조	축산발전심의위원회	축산법 제4조
	제8조	축산물과 축산물가공품의 안정적 공급	농업식품기본법 제7조
	제9조	축산업의 구조개선 등	농업식품기본법 제8조 제1항
	제10조	친환경축산업 등의 촉진	농업식품기본법 제38조
	제11조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기반의 축산업 육성	농업식품기본법 제36조의2 제1항
	제12조	축산업 관련 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농업식품기본법 제37조
	제13조	축산업과 동물복지의 조화	<신설>
	제14조	지역축산업의 발전과 축산농가주민의 복지증진	농업식품기본법 제10조
	제15조	축산업 및 축산물가공품산업 관련 단체의 육성	농업식품기본법 제11조
	제16조	통상정책 및 국제협력	농업식품기본법 제13조
제17조	관련 행정조직의 정비	농업식품기본법 제18조	
제3장 축산업의 허가 등	제18조	축산업의 허가	축산법 제22조 제1항, 제2항
	제19조	무허가 축사에 대한 폐쇄명령	<신설> (가축분뇨법 제18조)
	제20조	등록 대상 축산업	축산법 제22조 제3항, 제4항, 제5항
	제21조	축산업 허가·등록의 결격사유	축산법 제23조
	제22조	축산업 허가·등록을	축산법 제33조의2 제1항, 제2항

		위한 교육과정	
제23조	축산업 허가·등록에 대한 지원		축산법 제22조 제7항, 제8항
제24조	영업의 승계		축산법 제24조
제25조	허가·등록 축산업자의 신고의무		축산법 제22조 제6항
제26조	허가·등록 축산업자의 준수사항		축산법 제26조
제27조	축산업의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등		축산법 제25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28조	축산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등		축산법 제25조 제2항, 제4항, 제5항
제29조	과징금 처분		축산법 제25조의2
제30조	허가·등록 축산업자에 대한 점검 등		축산법 제28조
제31조	가축의 운반		<신설>
제32조	가축운반차량의 등록		<신설>
제33조	가축운반차량에 대한 점검 등		<신설>
제34조	가축운반차량의 말소등록		<신설>
제35조	허가·등록 축산업자 등의 보수교육		축산법 제33조의2 제3항, 제4항
제36조	교육총괄기관 및 교육운영기관의 지정 및 취소		축산법 제33조의3
제37조	축산업 허가·등록 등에 관한 정보의 통합 활용		축산법 제22조의2
제38조	우수 축사전문관리업체의 지정		<신설>
제4장 가축의 개량 등	제39조	가축의 개량목표 설정	축산법 제5조
	제40조	시·도 가축개량센터의 설치·운영	축산법 제5조의2

	제41조	가축의 등록	축산법 제6조
	제42조	가축의 검정	축산법 제7조
	제43조	보호가축의 지정 등	축산법 제8조
	제44조	종축의 대여 및 교환	축산법 제10조
	제45조	종축의 수출입 신고	축산법 제29조
	제46조	동물 유전자원 보존 및 관리 등	축산법 제9조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가축의 인공수정 등</p>	제47조	가축의 정액·난자·수정란 채취 등	축산법 제11조
	제48조	수정사의 면허	축산법 제12조 제1항, 제3항
	제49조	수정사의 결격사유	축산법 제12조 제2항
	제50조	수정사의 면허 대여 금지 등	축산법 제12조 제4항, 제5항
	제51조	수정사의 교육	축산법 제13조
	제52조	수정사의 면허취소 등	축산법 제14조
	제53조	정액증명서 등	축산법 제18조
	제54조	정액 등 사용제한	축산법 제19조
	제55조	정액 등 수출입 신고	축산법 제29조
	제56조	수정소의 개설신고 등	축산법 제17조
	제57조	수정소개설자에 대한 감독	축산법 제20조
	제58조	우수 정액등처리업체 등의 인증	축산법 제21조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축산환경 개선 및 축산업 기반 조성·지원</p>	제59조	축산환경 개선계획 수립	축산법 제42조의13
	제60조	축산환경 개선 전담기관 지정	축산법 제42조의14
	제61조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축산법 제32조
	제62조	국가축산클러스터의 지원·육성	축산법 제32조의2
	제63조	국가축산클러스터지원센	축산법 제32조의3

		터의 설립 등	
	제64조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설립 등	축산법 제36조
	제65조	축산자조금의 지원	축산법 제33조
	제66조	조세의 감면	농업식품기본법 제62조
제7장 축산발전기금	제67조	축산발전기금의 설치	축산법 제43조
	제68조	기금의 재원	축산법 제44조
	제69조	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축산법 제45조
	제70조	자금의 차입	축산법 제46조
	제71조	기금의 용도	축산법 제47조
	제72조	기금의 운용·관리	축산법 제48조
제8장 보칙	제73조	수수료	축산법 제49조
	제74조	청문	축산법 제50조
	제75조	권한의 위임·위탁	축산법 제51조
제9장 벌칙	제76조	벌칙	축산법 제53조
	제77조	벌칙	축산법 제54조
	제78조	양벌규정	축산법 제55조
	제79조	과태료	축산법 제56조

<표7 : 「축산법 전부개정법률안」(제1안) 예시>

<p>축산법 전부개정법률안 (제1안)</p> <p>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법은 가축의 개량·증식, 토종가축의 보존·육성,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유통개선 등을 통해 축산업과 축산농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축산물과 품질 좋은 축산 가공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축산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p>

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의 기본이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축산업은 가축의 개량·증식, 토종가축의 보존·육성,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등을 통해 축산업과 축산농가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어나가는 동시에 국토환경의 보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한다.
2. 축산업은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 가축 위생 등을 통해 국민에게 안전한 축산물과 품질 좋은 축산가공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3. 축산업인은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다른 산업종사자와 균형된 소득을 실현하는 경제주체로 성장하여 나가도록 한다.
4. 축산농가는 축산환경을 개선하고 가축분뇨의 적정한 처리 및 자원화에 노력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산업 및 생활 공간으로 발전시켜 이를 미래세대에 물려주도록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축산”이란 판매할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개량·증식하거나 축산물을 생산·가공·유통·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2. “가축”이란 사육하는 소·말·면양·염소[유산양(乳山羊: 젖을 생산하기 위해 사육하는 염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돼지·사슴·닭·오리·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動物) 등을 말한다.
3. “토종가축”이란 제2호의 가축 중 한우, 토종닭 등 예로부터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하며 사육되어 외래종과 분명히 구분되는 특징을 지니는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된 품종의 가축을 말한다.
4. “종축”이란 가축개량 및 번식에 활용되는 가축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축을 말한다.
5. “축산물”이란 가축에서 생산된 고기·젖·알·꿀과 이들의 가공품·원피[가공전의 가죽을 말하며, 원모피(原毛皮)를 포함한다]·원모, 뼈·뿔·내장 등 가축의 부산물, 로얄제리·화분·봉독·프로폴리스·밀랍 및 수벌의 번데기를 말한다.
6. “축산물가공품”이란 판매를 목적으로 축산물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음식물을 말한다.
7. “축사”란 우사·돈사·계사 등의 가축 사육시설과 착유·집란, 소독·방역, 가축분뇨 및 악취 관리 등 가축 사육에 필요한 부속시설 및 장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축산업”이란 가축사육업, 종축업, 부화업, 정액처리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가축사육업”이란 판매할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거나 젖·알·꿀을 생산하는 업을 말한다.
10. “종축업”이란 종축을 사육하고, 그 종축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번식용 가축 또는 씨알을 생산하여 판매(다른 사람에게 사육을 위탁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업을 말한다.
11. “부화업”이란 닭, 오리 또는 메추리의 알을 인공부화 시설로 부화시켜 판매(다른 사람에게 사육을 위탁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업을 말한다.
12. “정액등처리업”이란 종축에서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을 채취·처리하여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13. “축산농가”란 축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농가를 말한다.
14. “축산물가공품산업”이란 축산물가공품을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5. “축산환경”이란 축산업으로 인해 사람과 가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나 상태를 말한다
16. “국가축산클러스터”란 축산농가·축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연구소·대학 및 지원시설을 일정 지역에 집중시켜 상호연계를 통한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기 위하여 형성한 집합체를 말한다.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축산업인·소비자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축산업과 축산농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증진하고, 안전한 축산물과 품질 좋은 축산가공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축산업 인력 육성, 축산업인과 축산농가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축산업인과 축산농가는 축산업의 발전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축산업경영 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며, 사육하는 동물의 복지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생산자단체는 축산물의 수급 안정과 유통 개선, 축산업경영의 효율화 등을 통하여 축산업과 축산농가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축산업인의 권익 신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축산물가공품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품질 좋은 축산물가공품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축산물가공품산업 및 축산업·축산농가의 지속가능한 발전

과 소비자의 건전한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소비자는 축산업·축산농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축산물과 축산물가공품의 건전한 소비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축산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축산정책

제6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증식, 토종 가축의 보존·육성,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 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이용촉진,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축산발전심의위원회) ① 제6조에 따른 축산발전시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축산발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 관계 공무원
2. 생산자·생산자단체의 대표
3. 학계 및 축산 관련 업계의 전문가 등

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축산물과 축산가공품의 안정적 공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한 축산물과 품질 좋은 축산가공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가축의 사육 단계부터 축산물의 원료관리·처리·가공·포장·유통 및 판매까지의 모든 과정에서의 위생·방역 및 품질 관리, 축산업과 축산물가공품산업의 발전, 적정한 축산물 및 주요 축산물가공품의 자급목표 달성·유지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축산업의 구조개선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축산업 종사 인력, 축산업 경영, 초지의 소유 및 이용과 축산물의 유통 등을 포함한 축산업구조를 개선하고, 축산물가공품산업과 축산업 자재산업 등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축산업인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친환경축산업 등의 촉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축산업에 따른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안전한 축산물과 품질 좋은 축산가공품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친환경축산업 등의 생산기반 구축, 생산기술·생산방법의 개발, 친환경 축산물 등의 인증 및 가축분뇨의 자원화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기반의 축산업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통신기술 융복합에 기반한 축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축산업 관련 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① 정부는 축산업 유전자원, 축산기술, 품종의 개량, 토종가축의 보존, 상표, 지리적표시, 생명공학기술 등 축산업 관련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축산업과 관련된 지역 특화산업 등의 보호·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축산업과 동물복지의 조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축의 사육·관리·운송·수술 및 도살 등에 관하여 「동물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본원칙이나 기준·방법이 최대한 준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지역축산업의 발전과 축산농가주민의 복지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축산농가를 도시와 연계된 산업·생활·휴양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축산농가 경관과 지역공동체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축산농가의 주민이 의료, 교육, 주택, 상하수도 등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축산업 및 축산물가공품산업 관련 단체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축산업인, 축산물가공품산업에 종사하는 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축산업 및 축산물가공품산업과 관련된 단체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단체들이 공동의 목적 실현을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를 설립·운영하거나 단체의 회원 및 축산업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 상담 등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단체의 운영지원 또는 시설의 설치·운영 지원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통상정책 및 국제협력) ① 정부는 우리나라의 축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외통상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며, 상호주의와 국민경제의 발전 수준에 맞는 국제협력 강화와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대외통상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경우 축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주요 통상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축산물의 안정적 공급에 지장이 초래될 경우 보완대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7조(관련 행정조직의 정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축산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개선과 정비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축산업의 허가 등

제18조(축산업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가축의 종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가축 종류 및 사육시설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축사육업
2. 종축업
3. 부화업
4. 정액등처리업

② 제1항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경우 해당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을 설치할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소각 및 매몰 등에 필요한 매몰지를 확보할 것. 다만, 토지임대계약, 소각 등 가축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사, 악취저감 장비·시설 등을 갖출 것
4. 가축사육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에 부합할 것
5. 돼지·닭·오리에 관한 가축사육업·종축업의 경우 축사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로 인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위치하지 아니할 것
6. 닭 또는 오리에 관한 가축사육업·종축업의 경우 축사가 기존에 닭 또는 오리에 관한 가축사육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축사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에 위치하지 아니할 것
7. 그 밖에 축사가 축산업의 허가 제한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위치하지 아니할 것

제19조(무허가 축사에 대한 폐쇄명령) 시장·군수·구청장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축사를 설치하여 제1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축산업을 사실상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 그 축사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제20조(등록 대상 축산업) ① 제1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경우 해당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을 설치할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소각 및 매몰 등에 필요한 매몰지를 확보할 것. 다만, 토지임대계약, 소각 등 가축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사, 악취저감 장비·시설 등을 갖출 것
4. 가축사육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에 부합할 것
5. 닭, 오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에 관한 가축사육업의 경우 축사가 기존에 닭 또는 오리에 관한 가축사육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축사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에 위치하지 아니할 것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축의 종류 및 사육시설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

다.

제21조(축산업 허가·등록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제27조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76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제76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②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제22조(축산업 허가·등록을 위한 교육과정) ① 제18조제1항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고자 하거나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운영기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교육과정 이수 대상자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또는 수의(獸醫)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교육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23조(축산업 허가·등록에 대한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고자 하거나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축사, 약취저감 장비·시설 등을 갖추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사, 약취저감 장비·시설 등과 사육방법 등을 개선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18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
2. 제20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

제24조(영업의 승계) ① 제18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제20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가 사망하거나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양수인 또는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계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준용한다.

제25조(허가·등록 축산업자의 신고의무) 제18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제20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3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
2. 폐업(3년 이상 휴업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3. 3개월 이상 휴업하였다가 다시 개업한 경우
4. 등록한 사항 중 가축의 종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가축사육업을 등록한 자에게만 적용한다)

제26조(허가·등록 축산업자의 준수사항) ① 제18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제20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는 가축의 개량, 가축질병의 예방 및 축산물의 위생수준 향상과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②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종축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종축이 아닌 오리로부터 번식용 알을 생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축산업의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제25조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그 허가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
4. 제1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축사, 악취저감 장비·시설 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축사, 악취저감 장비·시설 등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5.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제3항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교육소독 등

- 조치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입국 시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조치를 위반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경우
6.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0조제1항(「가축전염병예방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살처분(殺處分) 명령을 위반한 경우
 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취소 또는 변경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8. 「약사법」 제85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9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9. 제1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축사, 악취저감 장비·시설 등에 관한 규정(제4호에 따른 중요한 축사, 악취저감 장비·시설 등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에 따른 소독설비 및 실시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경우
 10. 「농약관리법」 제2조에 따른 농약을 가축에 사용하여 그 축산물이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에 따른 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가축을 처분하여야 하며,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의 효력은 가축의 처분을 완료한 날부터 발생한다.
-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른 축사, 악취저감 장비·시설 등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영업정지 처분,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구체적 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축산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0조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제25조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계속 하여 휴업한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그 등록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

4. 마지막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날부터 최근 1년 이내에 세 번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5. 제2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축사, 악취저감 장비·시설 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축사, 악취저감 장비·시설 등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가축을 처분하여야 하며,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의 효력은 가축의 처분을 완료한 날부터 발생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가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른 축사, 악취저감 장비·시설 등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영업정지 처분,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구체적 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과징금 처분)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7조제1항제3호부터 제10호 까지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가축처분의 곤란,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 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을 축산업 발전사업 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대상 및 사육규모·매출액 등에 따른 과 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허가·등록 축산업자에 대한 점검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가축 의 개량, 가축질병의 예방, 축산물의 위생수준 향상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의 적절한 처리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8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1년에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도록 하고, 제20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 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의 개선과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30일 이내

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점검 결과 및 허가·등록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와 제20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에 따라 해당 시·군·구에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점검을 하는 관계 공무원(제75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축산 관련 법인 및 단체의 임직원을 포함한다)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1조(가축의 운반) ① 누구든지 가축을 차량으로 운반하려는 자는 가축분뇨 등 오염물질 유출에 따른 악취 발생 및 가축전염병의 전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소독, 청결상태 유지, 오염물질 유출 방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가축을 차량으로 운반하려는 자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가축운반차량을 이용하여야 한다.

제32조(가축운반차량의 등록 등) ① 차량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가축의 운반에 사용하고자 하는 소유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자를 말하며, 차량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그 차량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또는 차량 소유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차량의 소유자·운전자의 인적사항, 차량의 종류, 차량 번호, 운반 축종, 설비 현황,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3제2항에 따른 차량무선인식장치 장착 여부 등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을 하려는 소유자는 대상 차량에 분뇨 유출방지 설비, 가림막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의 등록을 하려는 소유자 및 대상 차량의 운전자로 등록될 자는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운영기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또는 수의(獸醫)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교육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가축운반차량의 소유자와 운전자는 가축운반차량의 소독, 청결상태 유지, 오염물질 유출 방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가축운반차량의 등록내용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 가축운반차량의 소유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가축운반차량의 등록과 변경등록의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가축운반차량에 대한 점검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가축운반차량의 설비기준 적합여부 및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가축운반차량 점검결과 제32조제2항의 설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비의 개선을 명하고 필요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가축운반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가축운반차량 점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4조(가축운반차량의 말소등록) ①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가축운반차량을 더 이상 가축운반에 사용하지 않게 된 경우에 해당 가축운반차량의 소유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말소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가축운반차량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1.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라 대상 차량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2.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따라 대상 차량을 폐차한 경우
3. 등록된 가축운반차량을 1년 이상 가축운반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5. 제33조제2항에 따라 가축운반이 중지된 기간 중에 해당 차량으로 가축을 운반한 경우
6. 최근 5년 이내에 제33조제2항에 따른 가축운반 중지 처분을 세 번 이상 받은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한 차량은 1년간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이 금지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축운반차량의 말소등록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허가·등록 축산업자 등의 보수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

된 교육운영기관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제18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 : 1년에 1회 이상
2. 제20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 : 2년에 1회 이상
3.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가축운반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 4년에 1회 이상
4. 이 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악취방지법」을 위반하여 형사고발 또는 영업정지·과태료 처분을 받은 축산업 허가·등록자 :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1회
5.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의 가축전염병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축사의 축산업 허가·등록자 : 해당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1회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 대상자 중 질병·휴업·사고 등으로 보수교육을 받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감염병, 가축전염병 등의 발생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교육운영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한을 연장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6조(교육총괄기관 및 교육운영기관의 지정 및 취소)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2조제1항, 제32조제3항 및 제35조제1항의 교육을 위하여 교육총괄기관 및 교육운영기관(이하 이 조에서 “교육기관등”이라 한다)을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② 교육운영기관은 제22조제1항, 제32조제3항 및 제35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하여야 하며, 교육총괄기관에 교육 계획 및 실적 등을 매년 1월 31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교육총괄기관은 교육교재 및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교육대상자 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교육 계획 및 실적 등을 종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매년 2월 말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교육 계획 및 실적 등을 보고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보고받은 내용을 확인·점검한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기관등에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교육기관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교육실적을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교육운영기관 지정일부터 2년 이상 교육실적이 없는 경우
5. 교육기관등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⑥ 교육기관등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교육내용 등 교육기관등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축산업 허가·등록 등에 관한 정보의 통합 활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8조제1항, 제20조제1항 및 제32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 또는 등록된 정보를 효율적으로 통합·활용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상 정보의 범위 등 그 밖에 정보의 통합·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우수 축사전문관리업체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건강한 가축 사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자로부터 축사내 청소, 가축분뇨 및 악취 관리, 소독·방제, 구서·구충, 축사 내 시설·장비 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업체 또는 그 외 관련한 기술 컨설팅 업체 중 사업실적, 기술력 등이 우수한 업체를 우수 축사전문관리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축사전문관리업체 지정의 유효기간은 그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3년 단위로 재지정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우수 축사전문관리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지정요건 유지, 정상 운영여부 확인 등 필요한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우수 축사전문관리업체의 지정·재지정 기준 및 절차, 사후관리를 위한 점검 횟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우수 축사전문관리업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우수 축사전문관리업체로 지정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에게 필요한 기술·정보를 제공하거나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우수 축사전문관리업체의 양성 및 기술지원을 위

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우수 축사전문관리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제4장 가축의 개량 등

제39조(가축의 개량목표 설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량 대상 가축별로 기간을 정하여 가축의 개량목표를 설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개량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가축개량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량목표를 달성하고 가축개량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축산 관련 기관 및 단체 중에서 가축개량총괄기관과 가축개량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가축개량추진계획의 시행과 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의 가축개량업무 추진에 필요한 우량종축 및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가축개량총괄기관과 가축개량기관의 지정 기준과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시·도 가축개량센터의 설치·운영) 시·도지사는 가축개량업무를 수행하는 가축개량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41조(가축의 등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9조제1항에 따른 개량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축산 관련 기관 및 단체 중에서 등록기관을 지정하여 가축의 혈통·능력·체형 등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여 등록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기관의 지정 기준과 지정 절차, 등록 대상 가축, 심사·등록의 절차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가축의 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능력 개량 정도를 확인·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축산 관련 기관 및 단체 중에서 검정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가축을 검정하게 할 수 있다.

1. 제41조에 따라 등록한 가축

2.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씨알을 생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② 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 기준과 지정 절차, 검정의 신청절차, 검정의 종류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보호가축의 지정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가축을 개량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축의 보호지역 및 그 보호지역 안에서 보호할 가축을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지역 안의 가축을 개량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지원금을 지급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4조(종축의 대여 및 교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가축의 개량·증식과 사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종축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타인이 소유한 종축과 교환할 수 있다.

제45조(종축의 수출입 신고) 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종축이나 종축으로 사용하려는 가축을 수출입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출입 신고의 대상이 되는 종축이나 종축으로 사용하려는 가축의 생산능력·규격 등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46조(동물 유전자원 보존 및 관리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 유전자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물 유전자원의 수집·평가·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5장 가축의 인공수정 등

제47조(가축의 정액·난자·수정란 채취 등) ① 가축 인공수정사(이하 “수정사”라 한다) 또는 수의사가 아니면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이하 “정액 등”이라 한다)을 채취·처리하거나 암가축에 주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살아있는 암가축에서 수정란을 채취하기 위하여 암가축에 성호르몬 및 마취제를 주사

하는 행위는 수의사가 아니면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학술시험용으로 필요한 경우
2. 자가사육가축(自家飼育家畜)을 인공수정하거나 이식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제48조(수정사의 면허) ① 수정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2.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수정사 시험에 합격한 자
3. 농촌진흥청장이 수정사 인력의 적정 수급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하는 수정사 시험에 합격한 자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정사 시험의 과목, 시험의 일부 면제 및 합격 기준 등 수정사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9조(수정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정사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 의가 수정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마약류중독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 의가 수정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0조(수정사의 면허 대여 금지 등) ① 수정사는 제48조제1항에 따라 받은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수정사의 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제48조제1항에 따라 받은 면허를 대여받아서 아니 되며, 명의 사용이나 면허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51조(수정사의 교육)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수정사의 자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 교육내용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52조(수정사의 면허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수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면허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때
2. 제4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53조제2항의 증명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4.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면허를 대여한 경우
5. 제50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정사의 명의의 사용이나 면허의 대여를 알선한 경우
6. 면허정지 기간 중에 수정사의 업무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면허취소 등 처분의 세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53조(정액증명서 등) ① 정액등처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가 처리한 정액 등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1조에 따른 등록기관의 확인을 받아 정액증명서·난자증명서 또는 수정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수정사 또는 수의사는 가축인공수정을 하거나 수정란을 이식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인공수정 증명서 또는 수정란이식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54조(정액 등의 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액 등은 가축 인공수정용으로 공급·주입하거나 암가축에 이식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술시험용이나 자가사육가축에 대한 인공수정용 또는 이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53조제1항에 따른 정액증명서·난자증명서 또는 수정란증명서가 없는 정액 등

2.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정액 등

제55조(정액 등의 수출입 신고) 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정액 등을 수출입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출입 신고의 대상이 되는 정액 등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56조(수정소의 개설신고 등) ① 정액 또는 수정란을 암가축에 주입 또는 이식하는 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가축 인공수정소〔家畜 人工授精所〕, 이하 “수정소” 라 한다를 개설하려는 자는 그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정소의 시설 및 인력에 관한 기준과 그 밖에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수정소의 개설을 신고한 자(이하 “수정소개설자” 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영업을 휴업한 경우
2. 영업을 폐업한 경우
3. 휴업한 영업을 재개한 경우
4. 신고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

제57조(수정소개설자에 대한 감독)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가축 개량총괄기관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소개설자에게 가축의 개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제41조에 따른 등록기관에게 해당 시설과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 등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58조(우수 정액등처리업체 등의 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액등처리업과 종축업의 위생관리 수준을 높이고 가축을 개량하기 위하여 우수업체를 인증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우수업체를 인증할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우수업체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우수업체 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6장 축산환경 개선 및 축산업 기반 조성·지원 등

제59조(축산환경 개선계획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5년마다 축산환경 개선 기본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도 축산환경 개선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축산환경 개선 기본계획 및 시·도 축산환경 개선계획에 따라 1년마다 시·군·구 축산환경 개선 실행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하며,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축사의 설치·운영 현황과 개선에 관한 사항
2. 축산악취, 분뇨처리 등 축산환경에 관한 현황과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축산환경 개선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0조(축산환경 개선 전담기관 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환경 개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축산환경관리원 등 축산환경 관련 기관을 축산환경 개선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축산환경 개선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축산환경 지도·점검
2. 축산환경 조사
3.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종사자 교육 및 컨설팅
4. 축산환경 개선기술 개발·보급
5. 축산환경 개선 전문인력 양성
6. 그 밖에 축산환경 개선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제61조(송아지생산안정사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송아지를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소 사육농가의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하여 송아지의 가격이 제

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송아지 생산농가에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을 지급하는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을 실시한다. 이 경우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대상이 되는 소의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을 지급받으려는 송아지 생산농가는 제3항에 따른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제1항에 따라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을 실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규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참여 자격
2. 참여기간·참여방법 및 참여절차
3.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의 지급조건·지급금액 및 지급절차
4.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자금조성 및 관리
5. 그 밖에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④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제3항제4호에 따른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참여하는 송아지 생산 농가에게 송아지생산안정자금 지급한도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의 총 지급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초과하여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적게 지급될 때에는 그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적게 지급된 금액을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1. 해당 연도의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예산액
2.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에 따른 해당 연도의 보조금 최소 허용한도액

제62조(국가축산클러스터의 지원·육성) 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국가축산클러스터의 지원과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이 조에서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축산클러스터 지원·육성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국가축산클러스터의 추진을 위한 축산단지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환경친화적인 국가축산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사항

4.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시설·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국가축산클러스터 참여 업체 및 기관들의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6. 국가축산클러스터 참여 업체 및 기관들의 상호 연계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국가축산클러스터 지원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국내 축산 관련 산업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사항
9. 국내외 다른 지역 및 다른 산업들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사항
10. 국가축산클러스터의 국내외 투자유치와 축산물의 수출 촉진에 관한 사항
11. 국가축산클러스터에 대한 투자와 자원조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국가축산클러스터의 육성을 위한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가축산클러스터가 조성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축산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소각 및 매몰 등에 필요한 매몰지, 소각장 및 소각 시설을 국가축산클러스터 내에 갖추어야 한다.

⑦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축산클러스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할 때에 국가축산클러스터에 참여하는 업체와 기관들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⑧ 국가축산클러스터의 조성 절차·방법 및 육성·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국가축산클러스터지원센터의 설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가축산클러스터의 육성·관리와 참여 업체 및 기관들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국가축산클러스터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가축산클러스터와 축산업집적에 관한 정책개발 및 연구

2. 축산단지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업
 3. 국가축산클러스터 참여 업체 및 기관들에 대한 지원 사업
 4. 국가축산클러스터 참여 업체 및 기관들 간의 상호 연계 활동 촉진 사업
 5. 국가축산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연구, 대외협력, 홍보 사업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 ④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센터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원센터에 대하여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 ⑦ 지원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4조(축산물품질평가원의 설립 등) ① 축산물 등급판정·품질평가 및 유통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이하 “품질평가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② 품질평가원은 법인으로 한다.
- ③ 품질평가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 품질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축산물 등급판정
 2. 축산물 등급판정을 위한 전자시스템의 운영
 3. 축산물 등급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축산물 등급판정 기술의 개발
 5. 「축산물 유통법」 제38조에 따른 축산물품질평가사의 양성
 6. 축산물 등급판정·품질평가 및 유통에 관한 조사·연구·교육·홍보사업
 7.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 및 축산물 이력제에 관한 업무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과 관련한 국제협력사업
 9. 축산물 등급판정·품질평가 및 유통 업무와 관련된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자에게서 위탁 또는 대행받은 사업 및 그 부대사업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 각 호의 사업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평가원에 제4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명령이나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과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⑧ 품질평가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5조(축산자조금의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축산단체가 축산물의 판로 확대 등을 위하여 축산자조금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제67조에 따른 축산발전기금의 일부를 그 축산단체에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조세의 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축산업의 발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7장 축산발전기금

제67조(축산발전기금의 설치) ① 정부는 축산업을 발전시키고 축산물 수급을 원활하게 하며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축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금에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제68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67조제2항에 따른 정부의 보조금 또는 출연금
2. 제2항에 따른 한국마사회의 납입금
3. 제69조에 따른 축산물의 수입이익금
4. 제70조에 따른 차입금
5. 「초지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6. 기금운용 수익금

7.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산상 이익금

② 한국마사회장은 한국마사회의 특별적립금 중 「한국마사회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금액을 기금에 내야 한다.

③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2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는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에 따른 경제사업의 이관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인수한 축산부문 고정자산을 계속 소유하지 아니하고 다른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양도가액을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당 축산부문 고정자산을 이전하거나 다른 축산부문 고정자산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9조(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그 추천을 받아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에 따른 대한민국 양허표(讓許表)의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로 축산물을 수입하는 자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을 수입하는 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가격과 수입가격의 차액의 범위에서 수입이익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입이익금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에 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입이익금을 소정의 기한 내에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70조(자금의 차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면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 다른 기금 또는 다른 회계에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제71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축산업의 구조개선 및 생산성 향상
2.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 및 가격 안정
3. 가축과 축산물의 유통 개선
4. 「낙농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낙농진흥계획의 추진
5. 사료의 수급 및 사료 자원의 개발
6. 가축 위생 및 방역
7. 축산 분뇨의 자원화·처리 및 이용

-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사업에 대한 사업비 및 경비의 지원
- 9.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축산자조금에 관한 지원
- 10. 말의 생산·사육·조련·유통·이용 등 말산업 발전에 관한 사업
- 11. 그 밖에 축산 발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방법 및 교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2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 및 관리 사무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농업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담보능력이 부족한 가축사육인 등에게 기금 지원을 쉽게 하는 등 제71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금대손보전에 관한 계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④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장 보칙

제73조(수수료) 제48조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74조(청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7조제1항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취소
2. 제2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등록취소
3. 제34조제2항에 따른 가축운반차량의 등록말소
4. 제52조제1항에 따른 수정사의 면허취소

제75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1조제1항에 따른 수정사에 대한 교육을 축산 관련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에 따른 점검 업무 중 일부를 축산 관련 법인 및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른 우수 축사전문관리업체의 지정 및 재지정, 교육훈련 등에 관한 업무를 축산 관련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1항에 따른 종축의 수출입 신고 업무 및 제55조제1항에 따른 정액 등의 수출입 신고 업무를 축산 관련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61조제1항에 따른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업무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장 벌칙

제7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축산업을 경영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제1항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제27조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처분 기한이 지난 후에도 계속 가축을 사육하는 자

제7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종축이 아닌 오리로부터 번식용 알을 생산한 자
2.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한 차량으로 같은 항에 따른 가축을 운반한 차량의 소유자와 가축의 소유자
3.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가축운반차량의 소유자
4. 제47조제1항을 위반한 자

5.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수정사의 면허를 대여하고나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한 자
6. 제50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정사의 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면허를 대여받은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
7. 제54조를 위반하여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을 가축 인공수정용으로 공급·주입하거나 이를 암가축에 이식한 자

제7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6조 또는 제7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2. 제2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26조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5. 제27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6. 제27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축의 처분 기한이 지난 후에도 계속 가축을 사육하는 자
7. 제27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제28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9. 제28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축의 처분 기한이 지난 후에도 계속 가축을 사육하는 자
10. 제28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1.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명령을 위반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0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가축사육업을 경영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업을 등록한 자

- 3. 제31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가축을 차량으로 운반한 자
- 4. 제32조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
- 5. 제32조제5항에 따른 가축운반차량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차량의 소유자
- 6. 제33조 제2항에 따른 가축운반중지 명령을 위반한 차량의 소유자
- 7. 제34조제1항에 따른 가축운반차량의 말소등록을 하지 아니한 차량의 소유자
- 8. 제35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 9. 제5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축산법」 전부개정 방안 (제2안)

- 제2안은 제1안과 마찬가지로 「축산법」 중 「축산물 유통법」으로 이관될 가축거래 및 축산물 유통에 관한 조문들을 제외한 나머지 조문들과 함께 ‘축산정책’을 보완하여 「축산법」이 사실상 축산 분야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위상을 갖도록 하는 방안이다.
- 제2안은 제1안의 내용을 토대로 하되, 축산정책에 관한 사항을 보다 더 보강하여 제2장에 ‘축산정책의 기본방향’을, 제3장에 ‘축산정책의 수립·시행’을 추가하면서, 내용면에 있어 ① 5년 단위의 축산발전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체계의 도입, ② 국회에 대한 축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제출, ③ 축산교육문화정보원의 설립, ④ 축산의 날 지정 등 농업식

품기본법의 내용을 대폭 반영하는 안이다.

<표8 : 「축산법 전부개정법률안」 (제2안) 개요>

장 및 절	조	내용	참고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농업식품기본법 제1조
	제2조	기본이념	농업식품기본법 제2조
	제3조	정의	농업식품기본법 제3조 축산법 제2조
	제4조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축산업·소비자 등의 책임	농업식품기본법 제4조
	제5조	축산의 날	농업식품기본법 제4조의2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농업식품기본법 제5조
제2장 축산정책의 기본방향	제7조	정책 수립·시행의 기본원칙	농업식품기본법 제6조
	제8조	축산물과 축산물가공품의 안정적 공급	농업식품기본법 제7조
	제9조	축산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농업식품기본법 제8조
	제10조	지역축산업의 발전과 축산농가주민의 복지증진	농업식품기본법 제10조
	제11조	축산업 및 축산물가공품산업 관련 단체의 육성	농업식품기본법 제11조

		제12조	축산교육문화정보원의 설립	농업식품기본법 제11조의2
		제13조	통상정책 및 국제협력	농업식품기본법 제13조
제3장 축산정책 의 수립·시 행	제1절 축산발전 기본계획 의 수립·시 행	제14조	축산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농업식품기본법 제14조 축산법 제3조
		제15조	축산발전심의위원회	농업식품기본법 제15조 축산법 제4조
		제16조	기본계획 등의 추진	농업식품기본법 제16조
		제17조	축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농업식품기본법 제17조
		제18조	관련 행정조직의 정비	농업식품기본법 제18조
		제19조	생산단계의 축산물 안전성 관리	농업식품기본법 제19조
	제2절 안전한 축산물과 품질 좋은 축산물가 공품의 안정적 공급 등	제20조	축산물과 축산물가공품의 품질관리 등	농업식품기본법 제20조
		제21조	축산물가공품산업의 육성	농업식품기본법 제21조
		제22조	축산물과 주요 축산물가공품의 안정적 공급	농업식품기본법 제23조
		제23조	축산물 및 축산물가공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	농업식품기본법 제23조의2
		제24조	가족축산농가의 경영안정과 축산업 종사자의 육성	농업식품기본법 제24조
	제3절 축산 부문 인력의 육성	제25조	후계축산업경영인의 육성	농업식품기본법 제25조
		제26조	전문축산업인의 육성	농업식품기본법 제26조

		제27조	여성축산업인의 육성	농업식품기본법 제27조
		제28조	축산업 관련 조합법인 및 회사법인의 육성	농업식품기본법 제28조
		제29조	벤처축산업 등의 육성	농업식품기본법 제29조
	제4절 축산 부문 생산구조 의 고도화	제30조	축산업 생산기반의 정비	농업식품기본법 제33조
		제31조	축산업투입재 산업의 육성 및 기계화·시설현대화 촉진	농업식품기본법 제34조
		제32조	축산업 및 축산물가공품 관련 기술·연구 등의 진흥	농업식품기본법 제35조
		제33조	축산업 및 축산물가공품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추진	농업식품기본법 제36조
		제34조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기반의 축산업 육성	농업식품기본법 제36조의2
		제35조	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농업식품기본법 제37조
		제36조	친환경축산업 등의 촉진	농업식품기본법 제38조
		제37조	축산업경영체의 경영안정 및 구조개선 등의 지원	농업식품기본법 제39조
		제38조	축산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	농업식품기본법 제40조
		제39조	축산업 재해 등에 대한 시책	농업식품기본법 제41조
제40조	축산물과 축산물가공품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	농업식품기본법 제42조		
제41조	축산물과 축산가공품의 유통개선	농업식품기본법 제43조		
제5절 축산	제42조	축산업의 통상정책 및	농업식품기본법 제56조	

	부문의 통상정책 및 국제협력		보완대책	
		제43조	축산 분야의 국제협력	농업식품기본법 제57조
		제44조	축산업 부문의 해외투자 지원	농업식품기본법 제58조
		제45조	축산물 및 축산물가공품의 수출 진흥	농업식품기본법 제59조
		제46조	축산물 및 축산물가공품의 수입 관리	농업식품기본법 제60조
제4장 축산업의 허가 등		제47조	축산업의 허가	축산법 제22조 제1항, 제2항
		제48조	무허가 축사에 대한 폐쇄명령	<신설> (가축분뇨법 제18조)
		제49조	등록 대상 축산업	축산법 제22조 제3항, 제4항, 제5항
		제50조	축산업 허가·등록의 결격사유	축산법 제23조
		제51조	축산업 허가·등록을 위한 교육과정	축산법 제33조의2 제1항, 제2항
		제52조	축산업 허가·등록에 대한 지원	축산법 제22조 제7항, 제8항
		제53조	영업의 승계	축산법 제24조
		제54조	허가·등록 축산업자의 신고의무	축산법 제22조 제6항
		제55조	허가·등록 축산업자의 준수사항	축산법 제26조
		제56조	축산업의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등	축산법 제25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57조	축산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등	축산법 제25조 제2항, 제4항, 제5항

	제58조	과징금 처분	축산법 제25조의2
	제59조	허가·등록 축산업자에 대한 점검 등	축산법 제28조
	제60조	가축의 운반	<신설>
	제61조	가축운반차량의 등록	<신설>
	제62조	가축운반차량에 대한 점검 등	<신설>
	제63조	가축운반차량의 말소등록	<신설>
	제64조	허가·등록 축산업자 등의 보수교육	축산법 제33조의2 제3항, 제4항
	제65조	교육총괄기관 및 교육운영기관의 지정 및 취소	축산법 제33조의3
	제66조	축산업 허가·등록 등에 관한 정보의 통합 활용	축산법 제22조의2
	제67조	우수 축사전문관리업체의 지정	<신설>
제5장 가축의 개량 등	제68조	가축의 개량목표 설정	축산법 제5조
	제69조	시·도 가축개량센터의 설치·운영	축산법 제5조의2
	제70조	가축의 등록	축산법 제6조
	제71조	가축의 검정	축산법 제7조
	제72조	보호가축의 지정 등	축산법 제8조
	제73조	종축의 대여 및 교환	축산법 제10조
	제74조	종축의 수출입 신고	축산법 제29조
	제75조	동물 유전자원 보존 및 관리 등	축산법 제9조
제6장 가축의 인공수정 등	제76조	가축의 정액·난자·수정란 채취 등	축산법 제11조

	제77조	수정사의 면허	축산법 제12조 제1항, 제3항
	제78조	수정사의 결격사유	축산법 제12조 제2항
	제79조	수정사의 면허 대여 금지 등	축산법 제12조 제4항, 제5항
	제80조	수정사의 교육	축산법 제13조
	제81조	수정사의 면허취소 등	축산법 제14조
	제82조	정액증명서 등	축산법 제18조
	제83조	정액 등 사용제한	축산법 제19조
	제84조	정액 등 수출입 신고	축산법 제29조
	제85조	수정소의 개설신고 등	축산법 제17조
	제86조	수정소개설자에 대한 감독	축산법 제20조
	제87조	우수 정액등처리업체 등의 인증	축산법 제21조
제7장 축산환경 개선 및 축산업 기반 조성·지원	제88조	축산환경 개선계획 수립	축산법 제42조의13
	제89조	축산환경 개선 전담기관 지정	축산법 제42조의14
	제90조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축산법 제32조
	제91조	국가축산클러스터의 지원·육성	축산법 제32조의2
	제92조	국가축산클러스터지원센터의 설립 등	축산법 제32조의3
	제93조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설립 등	축산법 제36조
	제94조	축산자조금의 지원	축산법 제33조
	제95조	조세의 감면	농업식품기본법 제62조
제8장 축산발전기금	제96조	축산발전기금의 설치	축산법 제43조
	제97조	기금의 재원	축산법 제44조
	제98조	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축산법 제45조
	제99조	자금의 차입	축산법 제46조

	제100조	기금의 용도	축산법 제47조
	제101조	기금의 운용·관리	축산법 제48조
제9장 보칙	제102조	수수료	축산법 제49조
	제103조	청문	축산법 제50조
	제104조	권한의 위임·위탁	축산법 제51조
제10장 벌칙	제105조	벌칙	축산법 제53조
	제106조	벌칙	축산법 제54조
	제107조	양벌규정	축산법 제55조
	제108조	과태료	축산법 제56조

<표9 : 「축산법 전부개정법률안」 (제2안) 예시>

축산법 전부개정법률안 (제2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축의 개량·증식, 토종가축의 보존·육성,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유통개선 등을 통해 축산업과 축산농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축산물과 품질 좋은 축산가공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축산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의 기본이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축산업은 가축의 개량·증식, 토종가축의 보존·육성,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등을 통해 축산업과 축산농가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어나가는 동시에 국토환경의 보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한다.
2. 축산업은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 가축 위생 등을 통해 국민에게 안전한 축산물과 품질 좋은 축산가공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3. 축산업인은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다른 산업종사자와 균형된 소득을 실현하는 경제주체로 성장하여 나가도록 한다.

4. 축산농가는 축산환경을 개선하고 가축분뇨의 적절한 처리 및 자원화에 노력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산업 및 생활 공간으로 발전시켜 이를 미래세대에 물려주도록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축산”이란 판매할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개량·증식하거나 축산물을 생산·가공·유통·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2. “가축”이란 사육하는 소·말·면양·염소[유산양(乳山羊: 젖을 생산하기 위해 사육하는 염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돼지·사슴·닭·오리·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動物) 등을 말한다.
3. “토종가축”이란 제2호의 가축 중 한우, 토종닭 등 예로부터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하며 사육되어 외래종과 분명히 구분되는 특징을 지니는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된 품종의 가축을 말한다.
4. “종축”이란 가축개량 및 번식에 활용되는 가축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축을 말한다.
5. “축산물”이란 가축에서 생산된 고기·젖·알·꿀과 이들의 가공품·원피[가공전의 가축을 말하며, 원모피(原毛皮)를 포함한다]·원모, 뼈·뿔·내장 등 가축의 부산물, 로알제리·화분·봉독·프로폴리스·밀랍 및 수벌의 번데기를 말한다.
6. “축산물가공품”이란 판매를 목적으로 축산물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음식물을 말한다.
7. “축사”란 우사·돈사·계사 등의 가축 사육시설과 착유·집란, 소독·방역, 가축분뇨 및 약취 관리 등 가축 사육에 필요한 부속시설 및 장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축산업”이란 가축사육업, 종축업, 부화업, 정액처리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가축사육업”이란 판매할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거나 젖·알·꿀을 생산하는 업을 말한다.
10. “종축업”이란 종축을 사육하고, 그 종축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번식용 가축 또는 씨알을 생산하여 판매(다른 사람에게 사육을 위탁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업을 말한다.
11. “부화업”이란 닭, 오리 또는 메추리의 알을 인공부화 시설로 부화시켜 판매(다른 사람에게 사육을 위탁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업을 말한다.
12. “정액등처리업”이란 종축에서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을 채취·처리하여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13. “축산농가”란 축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농가를 말한다.
14. “축산물가공품산업”이란 축산물가공품을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5. “축산환경”이란 축산업으로 인해 사람과 가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나 상태를 말한다
16. “국가축산클러스터”란 축산농가·축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연구소·대학 및 지원시설을 일정 지역에 집중시켜 상호연계를 통한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기 위하여 형성한 집합체를 말한다.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축산업인·소비자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는 축산업과 축산농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증진하고, 안전한 축산물과 품질 좋은 축산가공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축산업 인력 육성, 축산업인과 축산농가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축산업인과 축산농가는 축산업의 발전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축산업경영 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며, 사육하는 동물의 복지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생산자단체는 축산물의 수급 안정과 유통 개선, 축산업경영의 효율화 등을 통하여 축산업과 축산농가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축산업인의 권익 신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축산물가공품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품질 좋은 축산물가공품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축산물가공품산업 및 축산업·축산농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소비자의 건전한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소비자는 축산업·축산농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축산물과 축산물가공품의 건전한 소비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축산의 날) ① 축산업·축산농가의 소중함을 국민에게 알리고, 축산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6월 1일을 축산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축산의 날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축산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축산정책의 기본방향

제7조(정책 수립·시행의 기본원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축산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때에는 시장경제 원리를 바탕으로 한 효율성을 추구하되, 축산업과 축산농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축산 발전을 위한 정책을 세울 때에는 지역공동체의 유지, 해당 지역의 축산업·축산농가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축산물과 축산가공품의 안정적 공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한 축산물과 품질 좋은 축산가공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가축 사육 단계에서의 위생 및 방역 관리, 축산물 생산 단계에서의 안전성 확보, 축산업과 축산물가공품산업의 발전, 적정한 축산물 및 주요 축산물가공품의 자급목표 달성·유지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축산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축산업 종사 인력, 축산업 경영, 초지의 소유 및 이용과 축산물의 유통 등을 포함한 축산업구조를 개선하고, 축산물가공품산업과 축산업 자재산업 등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축산업인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축산업에 따른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안전한 축산물과 품질 좋은 축산물가공품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업 등을 육성하여야 한다.

제10조(지역축산업의 발전과 축산농가주민의 복지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축산농가를 도시와 연계된 산업·생활·휴양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축산농가 경관과 지역공동체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축산농가의 주민이 의료, 교육, 주택, 상하수도 등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축산업 및 축산물가공품산업 관련 단체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축산업인, 축산물가공품산업에 종사하는 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축산업 및 축산물가공품산업과 관련된 단체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단체들이 공동의 목적 실현을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를 설립·운영하거나 단체의 회원 및 축산업인 등에 대한 교

육훈련, 경영지도, 상담 등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단체의 운영지원 또는 시설의 설치·운영 지원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축산교육문화정보원의 설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업 인적자원의 육성, 축산업·축산물가공품 정보화의 촉진, 축산농가 문화의 가치 확산 및 홍보, 축산업경영체의 역량 제고, 축산물의 안전정보 제공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축산교육문화정보원(이하 “축정원” 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축정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축정원은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축정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축산업 및 축산물가공품 분야의 정보화 촉진
2. 축산업·축산농가에 관한 문화 창달 및 가치 확산·홍보
3. 축산업경영체로의 기술수준 및 경영능력 제고
4. 축산업 및 축산물가공품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등 인적자원 육성
5. 축산물에 관한 안전정보의 제공, 정보교류의 활성화와 지식 및 산업재산권의 보호

6. 축산업 분야의 통상정책과 국제협력에 관한 정보 지원

7. 축산업 및 축산물가공품 분야의 지식 및 정보서비스 제공

8.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 또는 위탁하는 사업

⑤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축정원의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⑥ 축정원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통상정책 및 국제협력) ① 정부는 우리나라의 축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외통상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며, 상호주의와 국민경제의 발전 수준에 맞는 국제협력 강화와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대외통상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경우 축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주요 통상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축산물의 안정적 공급에 지장이 초래될 경우 보완대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3장 축산정책의 수립·시행

제1절 축산발전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14조(축산발전기본계획의 수립) ①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축산농가의 균형 있는 개발·보전 및 축산물가공품산업을 포함한 축산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발전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축산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축산업의 발전 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2. 축산물 및 주요 축산물가공품의 적절한 자급목표 및 그 추진계획
3. 축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시책
4. 축산환경 개선
5. 축산업의 구조개선
6.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이용촉진
7. 사료의 안정적 수급
8. 가축 위생
9. 축산업과 동물복지의 조화를 위한 시책
10. 축산업에 관하여 정부가 추진하여야 할 시책
11. 축산업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의 조달방안
12.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기반 축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
13. 축산업경영비 절감 등 그 밖에 축산업의 종합적·계획적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축산물 및 주요 축산물가공품의 적절한 자급목표를 세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5년마다 이를 설정하고 고시하여 축산업에 관한 중장기 정책의 지표로 활용한다.

1.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우유의 자급률
2. 조사료(粗飼料)의 자급률
3. 축산물가공품 열량 자급률(국민이 섭취하는 전체 축산물가공품의 열량 중 국내산 축산물가공품으로 충당되는 열량의 비율을 말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세운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과 그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

자치도 축산발전시행계획(이하 “시·도계획” 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⑥ 시장·군수 및 자치구(특별시의 자치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구청장은 시·도시계획과 그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군 및 자치구의 축산발전시행계획(이하 “시·군·구계획” 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⑦ 기본계획,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을 세우고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축산발전심의위원회) ① 농림축산식품부에 중앙 축산발전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 라 한다)를 두고, 시·도에 시·도 축산발전심의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 라 한다)를 두며, 시·군 및 자치구에 시·군·구 축산발전심의위원회(이하 “시·군·구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7조에 따른 축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3. 제90조제1항에 따른 송아지의 기준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
4. 제91조제1항에 따른 국가축산클러스터의 지원과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축산정책 등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시·도위원회 및 시·군·구위원회는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 그 밖에 축산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축산 발전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7조에 따른 축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3. 그 밖에 축산정책 등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④ 제1항에 따른 각급 축산발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기본계획 등의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4조와 제15조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매년 예산에 기본계획,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가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각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에 대하여 기본계획과의 연계성, 추진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축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① 정부는 매년 축산업의 현황과 정책동향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와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매년 그 지역의 축산업의 현황과 정책동향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축산정책 등에 대한 평가와 이에 따른 보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8조(관련 행정조직의 정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축산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개선과 정비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절 안전한 축산물과 품질 좋은 축산물가공품의 안정적 공급 등

제19조(생산단계의 축산물 안전성 관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축산물가공품 원료로 공급되는 축산물이 안전하고 건전하게 생산되도록 가축 및 축산물의 이력관리, 안전관리인증, 축산물의 위해요소 중점관리 등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20조(축산물과 축산물가공품의 품질관리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축산물과 축산물가공품의 품질을 높이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축의 사육부터 축산물의 원료관리·처리·가공·포장·유통 및 판매까지의 모든 과정에서의 관리기술 및 원산지표시와 위생·품질관리 등을 위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축에 대한 병해충 및 질병의 예방과 축산물에 대한 위생시책 등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축산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출입 축산물 및 동물에 대한 검역과 축산물에 대한 위생검사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21조(축산물가공품산업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축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국민에게 품질 좋은 축산물가공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축산물가공품의 연구개발, 축산물가공품산업의 시설 설치 및 확충과 마케팅 등에 관한 지원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22조(축산물과 주요 축산물가공품의 안정적 공급) ① 정부는 축산물과 주요 축산물가공품의 공급 및 가격이 국제적으로 불안정하거나 자연재해 등으로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운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축산물 및 주요 축산물 가공품을 국내에서 적정하게 생산하여 비축(備蓄)하거나 해외에서 확보하여 적정하게 공급하기 위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축산물과 주요 축산물가공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내우외환,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상·경제상의 위기 등 예측하기 어려운 요인에 의하여 축산물과 주요 축산물가공품의 수급위기가 발생한 경우에도 필요한 최소한의 축산물과 주요 축산물가공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증산, 유통제한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3조(축산물 및 축산물가공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 등) ① 정부는 축산업인의 안정적인 축산물 생산환경 보장 및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축산물 및 축산물가공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축산물 및 축산물가공품에 관한 진실하지 아니한 정보가 언론 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되는 경우 진실한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절 축산 부문 인력의 육성 등

제24조(가족축산농가의 경영안정과 축산업 종사자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공동체의 유지 및 축산농가사회의 안정을 위하여 가족노동력을 중심으로 하는 가족축산농가(家族畜産農家)의 생산성 향상 및 경영안정과 농가의 특성에 맞는 규모화, 전문화 및 협동화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축산업 종사자를 적정하게 확보하고 전문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25조(후계축산업경영인의 육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래의 축산업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후계축산업경영인(後繼畜産業經營人)을 지원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26조(전문축산업인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적인 축산업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추고 축산업 발전에 중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축산업인(이하 “전문축산업인”이라 한다)을 육성하는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축산업인을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7조(여성축산업인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축산업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때에 여성축산업인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여성축산업인의 지위향상과 전문인력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여성축산업인이 축산업경영 등에 참여하거나 기여한 정도에 상응하는 사회·경제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28조(축산업 관련 조합법인 및 회사법인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가축의 사육·출하·도축, 축산물의 원료관리·처리·가공·포장·유통·판매·수출 등의 효율화를 위하여 협업적 또는 기업적 축산업경영을 수행하는 축산조합법인(畜産組合法人) 및 축산업회사법인(畜産業會社法人)의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9조(벤처축산업 등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축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축산업 분야의 첨단과학기술 및 영농·경영기법의 개발과 벤처축산업 등을 지원·육성하는 정책을 세우고 시행한다.

제4절 축산 부문 생산구조의 고도화

제30조(축산업 생산기반의 정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친환경축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축산업 생산력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축산업 생산기반의 정비, 보강,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31조(축산업투입재 산업의 육성 및 기계화·시설현대화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축산업 경영비용을 절감하고 축산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축산업기계, 축산업자재, 축산업시설 및 사료·동물약품 등 축산업투입재(農業投入材)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축산업 경영비용을 절감하고 축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기계화, 시설현대화 등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축산업기계·자재·장비의 효율적인 이용, 관리, 점검 및 정비와 축산업인에 대한 축산업기계 등의 수리기술 지도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2조(축산업 및 축산물가공품 관련 기술연구 등의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축산업 및 축산물가공품 관련 산업의 생산성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축산업 생산기술, 축산업 생산기반 정비기술, 축산물 생산 이후의 관리기술, 축산업 경영기법, 축산업인 안전작업기술, 축산물 유통기술, 축산물가공품 제조기술 및 음식물 조리법 등에 관한 연구·개발·보급과 축산업 및 축산물 가공품산업 현장연구, 산학연 공동연구 및 연구평가 관리체제의 확립 등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세우고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축산업 및 축산물가공품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축산업 및 축산물가공품 관련 산업의 기술 등을 신속하게 개발·보급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 축산업 및 축산물가공품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축산업 및 축산물가공품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연구를 수행하는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34조(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기반의 축산업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통신기술 융복합에 기반한 축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축산업 분야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정보통신기술 표준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1. 국내외 정보통신기술 표준의 조사·연구 및 개발
2.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업

제35조(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① 정부는 축산업 유전자원, 축산기술, 품종의 개량, 토종가축의 보존, 상표, 지리적표시, 생명공학기술 등 축산업 관련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축산업과 관련된 지역 특화산업 등의 보호·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36조(친환경축산업 등의 촉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축산업에 따른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안전한 축산물과 품질 좋은 축산가공품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친환경축산업 등의 생산기반 구축, 생산기술·생산방법의 개발, 친환경 축산물 등의 인증 및 가축분뇨의 자원화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37조(축산업경영체의 경영안정 및 구조개선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축산업경영체가 지속적인 경영 혁신을 통하여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축산업 경영의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축산업경영체에 대하여 그 사업계획, 기술수준 및 경영능력 등을 고려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축산업경영체의 소득·경영안정 및 축산업의 경영구조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한다.

1. 토양 등 환경의 보전과 지구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원
2. 축산업 재해 및 축산업 활동에 따른 인적 재해 등에 대한 지원
3. 축산업 경영의 규모화, 고령 축산업인의 축산업 경영 이양 및 축산업 생산자원의 폐기·감축 등을 위한 지원
4. 축산업 여건이 낙후된 지역에 대한 지원
5. 축산업 생산과 직접 연계되지 아니하는 소득 보조 및 축산업투입재의 비용절감을 위한 지원
6. 특정 품목과 직접 연계되지 아니하는 축산농가 단위 소득 보조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산업으로 직업을 전환하거나 재취업(축산업에 다시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3항제3호에 따라 축산업 경영 규모화 및 고령 축산업인의 축산업 경영 이양에 대한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축산업인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축산업인에 대하여 직업전환이나 재취업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직업전환이나 재취업의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업훈련의 실시 및 취업의 알선
2. 직업전환 및 재취업 장려금의 지원
3. 실직축산업인의 생활안정지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일정한 요건과 직업전환 및 재취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축산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 정부는 축산업·축산농가와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거나 받으려는 축산업경영체에 대하여 초지, 축사 등 생산수단, 생산 축산물, 생산방법, 가축사육 마릿수 등에 관한 축산업 경영 관

련 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이를 활용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39조(축산업 재해 등에 대한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인 축산업 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해(旱害), 수해, 풍해, 냉해, 폭염, 기후변화 등 축산업 재해에 대한 예방, 응급대책, 복구와 축산업 재해보험의 운영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0조(축산물과 축산가공품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축산물과 축산가공품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축산업·축산물가공품산업의 관측, 생산 조정, 수매, 비축 및 생산자단체의 자조금(自助金)의 조성 지원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축산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축산물 유통업 및 축산물가공품산업을 업(業)으로 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1조(축산물과 축산가공품의 유통개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축산물과 축산물가공품의 생산지 및 소비지에 도매시장, 공판장, 종합유통센터, 산지유통센터, 집하장, 가축시장 등의 유통시설과 도축장, 육가공 시설 등의 확충과 그 운영 개선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축산물과 축산물가공품의 표준화 촉진과 다양한 유통정보의 수집, 제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축산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축정원, 축산물품질평가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이 공동으로 또는 연합하여 축산물과 축산가공품의 생산, 유통, 판매 등을 조직적·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공동 브랜드화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절 축산 부문의 통상정책 및 국제협력

제42조(축산업의 통상정책 및 보완대책) ① 정부는 우리나라의 권리와 이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축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통상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며, 주요 통상여건의 변화에 따라 축산물의 안정적 공급에 지장이 초래될 경우 보완대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축산업에 대한 통상정책을 세우고 시행하거나 보완대책을 세우는 경우 민간 전문가나 관련 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축산업인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3조(축산 분야의 국제협력) ① 정부는 축산 분야의 국제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축산정책에 관한 정보의 교류, 축산업 및 축산가공품산업 인력·기술의 교류, 축산업 관련 국제기구 활동 참여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수입 의존도가 높은 축산물 및 축산물가공품과 사료 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기반을 확대하고, 세계의 축산업·축산농가가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축산 부문의 인적·물적·기술적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4조(축산업 부문의 해외투자 지원) 정부는 축산업 및 축산업 관련 산업의 해외투자에 관한 조사·연구와 축산업경영체 등의 해외투자를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5조(축산물 및 축산물가공품의 수출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축산물 및 축산물가공품의 수출 진흥과 우리나라 식생활 문화의 전파 등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무역정보의 수집·제공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축산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축산물가공품산업을 업으로 하는 자와 축산물과 축산물가공품을 수출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6조(축산물 및 축산가공품의 수입 관리) 정부는 축산물 및 축산물가공품의 수입 증가로 인하여 국내의 축산업 등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외무역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수입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장 축산업의 허가 등

제47조(축산업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가축의 종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가축 종류 및 사육시설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축사육업
2. 종축업

3. 부화업

4. 정액등처리업

② 제1항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경우 해당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을 설치할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소각 및 매물 등에 필요한 매물지를 확보할 것. 다만, 토지임대계약, 소각 등 가축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사, 악취저감 장비·시설 등을 갖추는 것
4. 가축사육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에 부합할 것
5. 돼지·닭·오리에 관한 가축사육업·종축업의 경우 축사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로 인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위치하지 아니할 것
6. 닭 또는 오리에 관한 가축사육업·종축업의 경우 축사가 기존에 닭 또는 오리에 관한 가축사육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축사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에 위치하지 아니할 것
7. 그 밖에 축사가 축산업의 허가 제한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위치하지 아니할 것

제48조(무허가 축사에 대한 폐쇄명령) 시장·군수·구청장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축사를 설치하여 제4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축산업을 사실상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 그 축사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제49조(등록 대상 축산업) ① 제4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경우 해당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을 설치할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소각 및 매물 등에 필요한 매물지를 확보할 것. 다만, 토지임대계약, 소각 등 가

축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사, 악취저감 장비·시설 등을 갖출 것

4. 가축사육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에 부합할 것

5. 닭, 오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에 관한 가축사육업의 경우 축사가 기존에 닭 또는 오리에 관한 가축사육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축사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에 위치하지 아니할 것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축의 종류 및 사육시설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0조(축산업 허가·등록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47조제1항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제56조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05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제105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② 제57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제51조(축산업 허가·등록을 위한 교육과정) ① 제47조제1항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고자 하거나 제49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6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운영기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교육과정 이수 대상자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또는 수의(獸醫)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교육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52조(축산업 허가·등록에 대한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47조제1항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고자 하거나 제49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축사, 악취저감 장비·시설 등을 갖추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사, 악취저감 장비·시설 등과 사육방법 등을 개선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47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
2. 제49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

제53조(영업의 승계) ① 제47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제49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가 사망하거나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양수인 또는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계에 관하여는 제50조를 준용한다.

제54조(허가·등록 축산업자의 신고의무) 제47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제49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3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
2. 폐업(3년 이상 휴업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3. 3개월 이상 휴업하였다가 다시 개업한 경우
4. 등록한 사항 중 가축의 종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가축사육업을 등록한 자에게만 적용한다)

제55조(허가·등록 축산업자의 준수사항) ① 제47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제49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는 가축의 개량, 가축질병의 예방 및 축산물의 위생수준 향상과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②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종축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종축이 아닌 오리로부터 번식용 알을 생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6조(축산업의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7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7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47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제54조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그 허가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
 4. 제4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축사, 악취저감 장비·시설 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축사, 악취저감 장비·시설 등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5.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제3항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교육·소독 등 조치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입국 시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조치를 위반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경우
 6.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0조제1항(「가축전염병예방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살처분(殺處分) 명령을 위반한 경우
 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취소 또는 변경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8. 「약사법」 제85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9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9. 제4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축사, 악취저감 장비·시설 등에 관한 규정(제4호에 따른 중요한 축사, 악취저감 장비·시설 등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에 따른 소독설비 및 실시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경우
 10. 「농약관리법」 제2조에 따른 농약을 가축에 사용하여 그 축산물이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에 따른 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가축을 처분하여야 하며,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의 효력은 가축의 처분을 완료한 날부터 발생한다.
-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7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른 축사, 악취저감 장비·시설 등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영업정지 처분,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축산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9조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4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제54조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그 등록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
4. 마지막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날부터 최근 1년 이내에 세 번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5. 제4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축사, 악취저감 장비·시설 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축사, 악취저감 장비·시설 등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가축을 처분하여야 하며,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의 효력은 가축의 처분을 완료한 날부터 발생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9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가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른 축사, 악취저감 장비·시설 등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영업정지 처분,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과징금 처분)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6조제1항제3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가축처분의 곤란,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을 축산업 발전사업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대상 및 사육규모·매출액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허가등록 축산업자에 대한 점검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가축

의 개량, 가축질병의 예방, 축산물의 위생수준 향상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의 적절한 처리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47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1년에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도록 하고, 제49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의 개선과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점검 결과 및 허가·등록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47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와 제49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에 따라 해당 시·군·구에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점검을 하는 관계 공무원(제104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축산 관련 법인 및 단체의 임직원을 포함한다)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60조(가축의 운반) ① 누구든지 가축을 차량으로 운반하려는 자는 가축분뇨 등 오염물질 유출에 따른 악취 발생 및 가축전염병의 전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소독, 청결상태 유지, 오염물질 유출 방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가축을 차량으로 운반하려는 자는 제6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가축운반차량을 이용하여야 한다.

제61조(가축운반차량의 등록 등) ① 차량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가축의 운반에 사용하고자 하는 소유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자를 말하며, 차량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그 차량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또는 차량 소유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차량의 소유자·운전자의 인적사항, 차량의 종류, 차량 번호, 운반 축종, 설비 현황,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3제2항에 따른 차량무선인식장치 장착 여부 등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을 하려는 소유자는 대상 차량에 분뇨 유출방지 설비, 가림막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의 등록을 하려는 소유자 및 대상 차량의 운전자로 등록될 자는 제 6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운영기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또는 수의(獸醫)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교육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가축운반차량의 소유자와 운전자는 가축운반차량의 소독, 청결상태 유지, 오염물질 유출 방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가축운반차량의 등록내용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 가축운반차량의 소유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가축운반차량의 등록과 변경등록의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62조(가축운반차량에 대한 점검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가축운반차량의 설비기준 적합여부 및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가축운반차량 점검결과 제61조제2항의 설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비의 개선을 명하고 필요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가축운반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가축운반차량 점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3조(가축운반차량의 말소등록) ① 제61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가축운반차량을 더 이상 가축운반에 사용하지 않게 된 경우에 해당 가축운반차량의 소유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말소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가축운반차량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1.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라 대상 차량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2.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따라 대상 차량을 폐차한 경우
3. 등록된 가축운반차량을 1년 이상 가축운반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1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5. 제62조제2항에 따라 가축운반이 중지된 기간 중에 해당 차량으로 가축을 운반한 경우

6. 최근 5년 이내에 제62조제2항에 따른 가축운반 중지 처분을 세 번 이상 받은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한 차량은 1년간 제61조제1항에 따른 등록이 금지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축운반차량의 말소등록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64조(허가·등록 축산업자 등의 보수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운영기관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제47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 : 1년에 1회 이상

2. 제49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 : 2년에 1회 이상

3. 제61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가축운반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 4년에 1회 이상

4. 이 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악취방지법」을 위반하여 형사고발 또는 영업정지·과태료 처분을 받은 축산업 허가·등록자 :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1회

5.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의 가축전염병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축사의 축산업 허가·등록자 : 해당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1회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 대상자 중 질병·휴업·사고 등으로 보수교육을 받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감염병, 가축전염병 등의 발생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교육운영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한을 연장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5조(교육총괄기관 및 교육운영기관의 지정 및 취소)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1조제1항, 제61조제3항 및 제64조제1항의 교육을 위하여 교육총괄기관 및 교육운영기관(이하 이 조에서 “교육기관등”이라 한다)을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② 교육운영기관은 제51조제1항, 제61조제3항 및 제64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하여야 하며, 교육총괄기관에 교육 계획 및 실적 등을 매년 1월 31일까지 보

고하여야 한다.

③ 교육총괄기관은 교육교재 및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교육대상자 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교육 계획 및 실적 등을 종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매년 2월 말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교육 계획 및 실적 등을 보고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보고받은 내용을 확인·점검한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기관등에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교육기관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교육실적을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교육운영기관 지정일부터 2년 이상 교육실적이 없는 경우
5. 교육기관등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 교육기관등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교육내용 등 교육기관등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66조(축산업 허가·등록 등에 관한 정보의 통합 활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7조제1항, 제49조제1항 및 제61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 또는 등록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통합·활용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상 정보의 범위 등 그 밖에 정보의 통합·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우수 축사전문관리업체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건강한 가

축 사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자로부터 축사내 청소, 가축분뇨 및 약취 관리, 소독·방제, 구서·구충, 축사 내 시설·장비 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업체 또는 그 외 관련한 기술 컨설팅 업체 중 사업실적, 기술력 등이 우수한 업체를 우수 축사전문관리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축사전문관리업체 지정의 유효기간은 그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3년 단위로 재지정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우수 축사전문관리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지정요건 유지, 정상 운영여부 확인 등 필요한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우수 축사전문관리업체의 지정·재지정 기준 및 절차, 사후관리를 위한 점검 횟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우수 축사전문관리업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우수 축사전문관리업체로 지정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에게 필요한 기술·정보를 제공하거나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우수 축사전문관리업체의 양성 및 기술지원을 위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우수 축사전문관리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제5장 가축의 개량 등

제68조(가축의 개량목표 설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량 대상 가축별로 기간을 정하여 가축의 개량목표를 설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개량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가축개량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량목표를 달성하고 가축개량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축산 관련 기관 및 단체 중에서 가축개량총괄기관과 가축개량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가축개량추진계획의 시행과 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의 가축개량업무 추진에 필요한 우량종축 및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가축개량총괄기관과 가축개량기관의 지정 기준과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시·도 가축개량센터의 설치·운영) 시도지사는 가축개량업무를 수행하는 가축개량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0조(가축의 등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68조제1항에 따른 개량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축산 관련 기관 및 단체 중에서 등록기관을

지정하여 가축의 혈통·능력·체형 등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여 등록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기관의 지정 기준과 지정 절차, 등록 대상 가축, 심사 등록의 절차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71조(가축의 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능력 개량 정도를 확인·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축산 관련 기관 및 단체 중에서 검정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가축을 검정하게 할 수 있다.

1. 제70조에 따라 등록한 가축
2.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씨알을 생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② 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 기준과 지정 절차, 검정의 신청절차, 검정의 종류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72조(보호가축의 지정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가축을 개량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축의 보호지역 및 그 보호지역 안에서 보호할 가축을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지역 안의 가축을 개량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지원금을 지급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3조(종축의 대여 및 교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가축의 개량·증식과 사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종축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타인이 소유한 종축과 교환할 수 있다.

제74조(종축의 수출입 신고) 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종축이나 종축으로 사용하려는 가축을 수출입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출입 신고의 대상이 되는 종축이나 종축으로 사용하려는 가축의 생산능력·규격 등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75조(동물 유전자원 보존 및 관리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 유전자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물 유전자원의 수집·평가·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6장 가축의 인공수정 등

제76조(가축의 정액·난자·수정란 채취 등) ① 가축 인공수정사(이하 “수정사”라 한다) 또는 수의사가 아니면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이하 “정액 등”이라 한다)을 채취·처리하거나 암가축에 주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살아있는 암가축에서 수정란을 채취하기 위하여 암가축에 성호르몬 및 마취제를 주사하는 행위는 수의사가 아니면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학술시험용으로 필요한 경우
2. 자가사육가축(自家飼育家畜)을 인공수정하거나 이식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제77조(수정사의 면허) ① 수정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2.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수정사 시험에 합격한 자
3. 농촌진흥청장이 수정사 인력의 적정 수급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하는 수정사 시험에 합격한 자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정사 시험의 과목, 시험의 일부 면제 및 합격 기준 등 수정사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78조(수정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정사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수정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마약류중독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수정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9조(수정사의 면허 대여 금지 등) ① 수정사는 제77조제1항에 따라 받은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수정사의 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제77조제1항에 따라 받은 면허를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명의 사용이나 면허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80조(수정사의 교육)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수정사의 자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 교육내용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81조(수정사의 면허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수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면허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때
2. 제7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82조제2항의 증명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4. 제79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면허를 대여한 경우
5. 제79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정사의 명의의 사용이나 면허의 대여를 알선한 경우
6. 면허정지 기간 중에 수정사의 업무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면허취소 등 처분의 세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82조(정액증명서 등) ① 정액등처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가 처리한 정액 등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0조에 따른 등록기관의 확인을 받아 정액증명서·난자증명서 또는 수정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수정사 또는 수의사는 가축인공수정을 하거나 수정란을 이식하면 농림축

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인공수정 증명서 또는 수정란이식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83조(정액 등의 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액 등은 가축 인공수정용으로 공급·주입하거나 암가축에 이식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술시험용이나 자가사육가축에 대한 인공수정용 또는 이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82조제1항에 따른 정액증명서·난자증명서 또는 수정란증명서가 없는 정액 등
2.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정액 등

제84조(정액 등의 수출입 신고) 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정액 등을 수출입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출입 신고의 대상이 되는 정액 등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85조(수정소의 개설신고 등) ① 정액 또는 수정란을 암가축에 주입 또는 이식하는 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가축 인공수정소〔(家畜 人工授精所), 이하 “수정소” 라 한다〕를 개설하려는 자는 그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수정소의 시설 및 인력에 관한 기준과 그 밖에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수정소의 개설을 신고한 자(이하 “수정소개설자” 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영업을 휴업한 경우
 2. 영업을 폐업한 경우
 3. 휴업한 영업을 재개한 경우
 4. 신고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

제86조(수정소개설자에 대한 감독)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가축 개량총괄기관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소개설자

에게 가축의 개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제70조에 따른 등록기관에게 해당 시설과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 등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87조(우수 정액등처리업체 등의 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은 정액등처리업과 종축업의 위생관리 수준을 높이고 가축을 개량하기 위하여 우수업체를 인증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우수업체를 인증할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우수업체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우수업체 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6장 축산환경 개선 및 축산업 기반 조성·지원 등

제88조(축산환경 개선계획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은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5년마다 축산환경 개선 기본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도 축산환경 개선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축산환경 개선 기본계획 및 시·도 축산환경 개선계획에 따라 1년마다 시·군·구 축산환경 개선 실행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하며,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축사의 설치·운영 현황과 개선에 관한 사항
2. 축산악취, 분뇨처리 등 축산환경에 관한 현황과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축산환경 개선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89조(축산환경 개선 전담기관 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은 축산환경 개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축산환경관리원 등 축산환경 관련 기관을 축산환경 개선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축산환경 개선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축산환경 지도·점검
2. 축산환경 조사
3.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종사자 교육 및 컨설팅
4. 축산환경 개선기술 개발·보급
5. 축산환경 개선 전문인력 양성
6. 그 밖에 축산환경 개선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제90조(송아지생산안정사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송아지를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소 사육농가의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하여 송아지의 가격이 제15조에 따른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송아지 생산농가에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을 지급하는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을 실시한다. 이 경우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대상이 되는 소의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을 지급받으려는 송아지 생산농가는 제3항에 따른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을 실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규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참여 자격
2. 참여기간·참여방법 및 참여절차
3.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의 지급조건·지급금액 및 지급절차
4.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자금조성 및 관리
5. 그 밖에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제4호에 따른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참여하는 송아지 생산 농가에게 송아지생산안정자금 지급한도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의 총 지급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초과하여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적게 지급될 때에는 그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적게 지급된 금액을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1. 해당 연도의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예산액
2.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에 따른 해당 연도의 보조금

최소 허용한도액

제91조(국가축산클러스터의 지원·육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가축산클러스터의 지원과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이 조에서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축산클러스터 지원·육성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국가축산클러스터의 추진을 위한 축산단지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환경친화적인 국가축산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사항
4.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시설·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국가축산클러스터 참여 업체 및 기관들의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6. 국가축산클러스터 참여 업체 및 기관들의 상호 연계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국가축산클러스터 지원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국내 축산 관련 산업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사항
9. 국내외 다른 지역 및 다른 산업들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사항
10. 국가축산클러스터의 국내외 투자유치와 축산물의 수출 촉진에 관한 사항
11. 국가축산클러스터에 대한 투자와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국가축산클러스터의 육성을 위한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가축산클러스터가 조성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축산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소각 및 매몰 등에 필요한 매몰지, 소각장 및 소각 시설을 국가축산클러스터 내에 갖추어야 한다.

⑦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축산클러스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할 때에 국가축산클러스터에 참여하는 업체와 기관들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⑧ 국가축산클러스터의 조성 절차·방법 및 육성·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2조(국가축산클러스터지원센터의 설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가축산클러스터의 육성·관리와 참여 업체 및 기관들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국가축산클러스터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지원센터” 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가축산클러스터와 축산업집적에 관한 정책개발 및 연구
2. 축산단지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업
3. 국가축산클러스터 참여 업체 및 기관들에 대한 지원 사업
4. 국가축산클러스터 참여 업체 및 기관들 간의 상호 연계 활동 촉진 사업
5. 국가축산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연구, 대외협력, 홍보 사업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④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센터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원센터에 대하여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⑦ 지원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3조(축산물품질평가원의 설립 등) ① 축산물 등급판정·품질평가 및 유통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이하 “품질평가원” 이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품질평가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품질평가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품질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축산물 등급판정
2. 축산물 등급판정을 위한 전자시스템의 운영
3. 축산물 등급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축산물 등급판정 기술의 개발
 5. 「축산물 유통법」 제38조에 따른 축산물품질평가사의 양성
 6. 축산물 등급판정·품질평가 및 유통에 관한 조사·연구·교육·홍보사업
 7.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 및 축산물 이력제에 관한 업무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과 관련한 국제협력사업
 9. 축산물 등급판정·품질평가 및 유통 업무와 관련된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자에게서 위탁 또는 대행받은 사업 및 그 부대사업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 각 호의 사업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평가원에 제4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명령이나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과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⑦ 제6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⑧ 품질평가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4조(축산자조금의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축산단체가 축산물의 판로 확대 등을 위하여 축산자조금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제96조**에 따른 축산발전기금의 일부를 그 축산단체에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5조(조세의 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축산업의 발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8장 축산발전기금

제96조(축산발전기금의 설치) ① 정부는 축산업을 발전시키고 축산물 수급을 원활하게 하며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축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금에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제97조(기금의 자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96조제2항에 따른 정부의 보조금 또는 출연금
2. 제2항에 따른 한국마사회의 납입금
3. 제98조에 따른 축산물의 수입이익금
4. 제99조에 따른 차입금
5. 「초지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6. 기금운용 수익금
7.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산상 이익금

② 한국마사회장은 한국마사회의 특별적립금 중 「한국마사회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금액을 기금에 내야 한다.

③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2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는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에 따른 경제사업의 이관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인수한 축산부문 고정자산을 계속 소유하지 아니하고 다른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양도가액을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당 축산부문 고정자산을 이전하거나 다른 축산부문 고정자산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8조(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그 추천을 받아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에 따른 대한민국 양허표(讓許表)의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로 축산물을 수입하는 자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을 수입하는 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가격과 수입가격의 차액의 범위에서 수입이익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입이익금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에 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입이익금을 소정의 기한 내에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99조(자금의 차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면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 다른 기금 또는 다른 회계에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제100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축산업의 구조개선 및 생산성 향상
 2.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 및 가격 안정
 3. 가축과 축산물의 유통 개선
 4. 「낙농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낙농진흥계획의 추진
 5. 사료의 수급 및 사료 자원의 개발
 6. 가축 위생 및 방역
 7. 축산 분뇨의 자원화·처리 및 이용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사업에 대한 사업비 및 경비의 지원
 9.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축산자조금에 관한 지원
 10. 말의 생산·사육·조련·유통·이용 등 말산업 발전에 관한 사업
 11. 그 밖에 축산 발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방법 및 교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1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 및 관리 사무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농업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담보능력이 부족한 가축사육인 등에게 기금 지원을 쉽게 하는 등 제10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금대손보전에 관한 계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④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장 보칙

제102조(수수료) 제77조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103조(청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56조제1항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취소

2. 제57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등록취소
3. 제63조제2항에 따른 가축운반차량의 등록말소
4. 제81조제1항에 따른 수정사의 면허취소

제104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0조제1항에 따른 수정사에 대한 교육을 축산 관련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9조에 따른 점검 업무 중 일부를 축산 관련 법인 및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른 우수 축사전문관리업체의 지정 및 재지정, 교육훈련 등에 관한 업무를 축산 관련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4조제1항에 따른 종축의 수출입 신고 업무 및 제84조제1항에 따른 정액 등의 수출입 신고 업무를 축산 관련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90조제1항에 따른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업무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0장 벌칙

제10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7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축산업을 경영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7조제1항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제56조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처분 기한이 지난 후에도 계속 가축을 사육하는 자

제10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5조제2항을 위반하여 종축이 아닌 오리로부터 번식용 알을 생산한 자
2. 제60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한 차량으로 같은 항에 따른 가축을 운반한 차량의 소유자와 가축의 소유자
3. 제61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가축운반차량의 소유자
4. 제76조제1항을 위반한 자
5. 제79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수정사의 면허를 대여하고나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한 자
6. 제79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정사의 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면허를 대여받은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
7. 제83조를 위반하여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을 가축 인공수정용으로 공급·주입하거나 이를 암가축에 이식한 자

제10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5조 또는 제106조의 위반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7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2. 제53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54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5조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5. 제56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6. 제56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축의 처분 기한이 지난 후에도 계속 가축을 사육하는 자
7. 제56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제57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9. 제57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축의 처분 기한이 지난 후에도 계속 가축을 사육하는 자
10. 제57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1. 제5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명령을 위반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가축사육업을 경영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9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업을 등록한 자

3. 제60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가축을 차량으로 운반한 자

4. 제61조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

5. 제61조제5항에 따른 가축운반차량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차량의 소유자

6. 제62조 제2항에 따른 가축운반중지 명령을 위반한 차량의 소유자

7. 제63조제1항에 따른 가축운반차량의 말소등록을 하지 아니한 차량의 소유자

8. 제64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9. 제8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3. 「축산기본법」 제정 방안 (제3안)

- 제3안은 농업식품기본법을 기초로 축산업, 축산농가, 축산물 및 축산물가공품 등 축산 분야에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조문들을 선정하여 용어를 정리하고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축산정책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는 방안이다.
- 제3안에 따르면, 기존 「축산법」 중 축산업에 관한 사항들은

「축산업법」으로 별도로 개정되어야 한다.

<표10 : 「축산기본법 제정안」 (제3안) 개요>

장 및 절	조	내용	참고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농업식품기본법 제1조	
	제2조	기본이념	농업식품기본법 제2조	
	제3조	정의	농업식품기본법 제3조 축산법 제2조	
	제4조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축산업·소비자 등의 책임	농업식품기본법 제4조	
	제5조	축산의 날	농업식품기본법 제4조의2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농업식품기본법 제5조	
제2장 축산정책의 기본방향	제7조	정책 수립·시행의 기본원칙	농업식품기본법 제6조	
	제8조	축산물과 축산물가공품의 안정적 공급	농업식품기본법 제7조	
	제9조	축산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농업식품기본법 제8조	
	제10조	지역축산업의 발전과 축산농가주민의 복지증진	농업식품기본법 제10조	
	제11조	축산업 및 축산물가공품산업 관련 단체의 육성	농업식품기본법 제11조	
	제12조	축산교육문화정보원의 설립	농업식품기본법 제11조의2	
	제13조	통상정책 및 국제협력	농업식품기본법 제13조	
제3장 축산정책	제1절 축산발전	제14조	축산발전기본계획의	농업식품기본법 제14조

의 수립·시 행	기본계획 의 수립·시 행		수립	축산법 제3조
		제15조	축산발전심의위원회	농업식품기본법 제15조 축산법 제4조
		제16조	기본계획 등의 추진	농업식품기본법 제16조
		제17조	축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농업식품기본법 제17조
		제18조	관련 행정조직의 정비	농업식품기본법 제18조
	제2절 안전한 축산물과 품질 좋은 축산물가 공품의 안정적 공급 등	제19조	생산단계의 축산물 안전성 관리	농업식품기본법 제19조
		제20조	축산물과 축산물가공품의 품질관리 등	농업식품기본법 제20조
		제21조	축산물가공품산업의 육성	농업식품기본법 제21조
		제22조	축산물과 주요 축산물가공품의 안정적 공급	농업식품기본법 제23조
		제23조	축산물 및 축산물가공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	농업식품기본법 제23조의2
	제3절 축산 부문 인력의 육성	제24조	가족축산농가의 경영안정과 축산업 종사자의 육성	농업식품기본법 제24조
		제25조	후계축산업경영인의 육성	농업식품기본법 제25조
		제26조	전문축산업인의 육성	농업식품기본법 제26조
		제27조	여성축산업인의 육성	농업식품기본법 제27조
		제28조	축산업 관련 조합법인 및 회사법인의 육성	농업식품기본법 제28조
		제29조	벤처축산업 등의 육성	농업식품기본법 제29조
	제4절 축산 부문	제30조	축산업 생산기반의 정비	농업식품기본법 제33조
		제31조	축산업투입재 산업의 육성 및	농업식품기본법 제34조

	생산구조의 고도화		기계화·시설현대화 촉진	
		제32조	축산업 및 축산물가공품 관련 기술·연구 등의 진흥	농업식품기본법 제35조
		제33조	축산업 및 축산물가공품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추진	농업식품기본법 제36조
		제34조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기반의 축산업 육성	농업식품기본법 제36조의2
		제35조	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농업식품기본법 제37조
		제36조	친환경축산업 등의 촉진	농업식품기본법 제38조
		제37조	축산업경영체의 경영안정 및 구조개선 등의 지원	농업식품기본법 제39조
		제38조	축산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	농업식품기본법 제40조
		제39조	축산업 재해 등에 대한 시책	농업식품기본법 제41조
		제40조	축산물과 축산물가공품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	농업식품기본법 제42조
		제41조	축산물과 축산가공품의 유통개선	농업식품기본법 제43조
	제5절 축산 부문의 통상정책 및 국제협력	제42조	축산업의 통상정책 및 보완대책	농업식품기본법 제56조
		제43조	축산 분야의 국제협력	농업식품기본법 제57조
		제44조	축산업 부문의 해외투자 지원	농업식품기본법 제58조
		제45조	축산물 및 축산물가공품의 수출 진흥	농업식품기본법 제59조
		제46조	축산물 및 축산물가공품의 수입 관리	농업식품기본법 제60조
	제4장	제47조	조세의 감면	농업식품기본법 제62조

보칙	제48조	축산업 정책자금의 지원·관리	농업식품기본법 제63조
----	------	--------------------	--------------

<표11 : 「축산기본법 제정안」(제3안) 예시>

축산기본법 제정안 (제3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축의 개량·증식, 토종가축의 보존·육성,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유통개선 등을 통해 축산업과 축산농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축산물과 품질 좋은 축산가공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축산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축산업, 축산농가 및 축산가공품산업이 나아갈 방향과 국가의 정책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의 기본이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축산업은 가축의 개량·증식, 토종가축의 보존·육성,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등을 통해 축산업과 축산농가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어나가는 동시에 국토환경의 보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한다.
2. 축산업은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 가축 위생 등을 통해 국민에게 안전한 축산물과 품질 좋은 축산가공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3. 축산업인은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다른 산업종사자와 균형된 소득을 실현하는 경제주체로 성장하여 나가도록 한다.
4. 축산농가는 축산환경을 개선하고 가축분뇨의 적정한 처리 및 자원화에 노력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산업 및 생활 공간으로 발전시켜 이를 미래세대에 물려주도록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축산”이란 판매할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개량·증식하거나 축산물을 생산·가공·유통·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2. “가축”이란 사육하는 소·말·면양·염소[유산양(乳山羊: 젖을 생산하기 위해 사육하는 염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돼지·사슴·닭·오리·거위·칠면조·메추

리·타조·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動物) 등을 말한다.

3. “토종가축”이란 제2호의 가축 중 한우, 토종닭 등 예로부터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하며 사육되어 외래종과 분명히 구분되는 특징을 지니는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된 품종의 가축을 말한다.
4. “축산물”이란 가축에서 생산된 고기·젖·알·꿀과 이들의 가공품·원피[가공전의 가죽을 말하며, 원모피(原毛皮)를 포함한다]·원모, 뼈·뿔·내장 등 가축의 부산물, 로알제리·화분·봉독·프로폴리스·밀랍 및 수벌의 번데기를 말한다.
5. “축산물가공품”이란 판매를 목적으로 축산물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음식물을 말한다.
6. “축산업”이란 가축사육업, 종축업, 부화업, 정액처리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축산농가”란 축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농가를 말한다.
8. “축산물가공품산업”이란 축산물가공품을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축산환경”이란 축산업으로 인해 사람과 가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나 상태를 말한다.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축산업인·소비자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축산업과 축산농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증진하고, 안전한 축산물과 품질 좋은 축산가공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축산업 인력 육성, 축산업인과 축산농가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축산업인과 축산농가는 축산업의 발전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축산업경영 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며, 사육하는 동물의 복지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생산자단체는 축산물의 수급 안정과 유통 개선, 축산업경영의 효율화 등을 통하여 축산업과 축산농가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축산업인의 권익 신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축산물가공품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품질 좋은 축산물가공품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축산물가공품산업 및 축산업·축산농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소비자의 건전한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소비자는 축산업·축산농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축산물과 축산물가공품의 건전한 소비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축산의 날) ① 축산업·축산농가의 소중함을 국민에게 알리고, 축산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6월 1일을 축산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축산의 날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축산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축산정책의 기본방향

제7조(정책 수립·시행의 기본원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축산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때에는 시장경제 원리를 바탕으로 한 효율성을 추구하고, 축산업과 축산농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축산 발전을 위한 정책을 세울 때에는 지역공동체의 유지, 해당 지역의 축산업·축산농가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축산물과 축산가공품의 안정적 공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한 축산물과 품질 좋은 축산가공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가축 사육 단계에서의 위생 및 방역 관리, 축산물 생산 단계에서의 안전성 확보, 축산업과 축산물가공품산업의 발전, 적정한 축산물 및 주요 축산물가공품의 자급목표 달성·유지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축산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축산업 종사 인력, 축산업 경영, 초지의 소유 및 이용과 축산물의 유통 등을 포함한 축산업구조를 개선하고, 축산물가공품산업과 축산업 자재산업 등을 활성화 시킴으로써 축산업인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축산업에 따른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안전한 축산물과 품질 좋은 축산물가공품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업 등을 육성하여야 한다.

제10조(지역축산업의 발전과 축산농가주민의 복지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축산농가를 도시와 연계된 산업·생활·휴양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축산농가 경관과 지역공동체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축산농가의 주민이 의료, 교육, 주택, 상하수도 등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축산업 및 축산물가공품산업 관련 단체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축산업인, 축산물가공품산업에 종사하는 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축산업 및 축산물가공품산업과 관련된 단체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단체들이 공동의 목적 실현을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를 설립·운영하거나 단체의 회원 및 축산업인 등에 대한 교육 훈련, 경영지도, 상담 등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단체의 운영지원 또는 시설의 설치·운영 지원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축산교육문화정보원의 설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업 인적자원의 육성, 축산업·축산물가공품 정보화의 촉진, 축산농가 문화의 가치 확산 및 홍보, 축산업경영체의 역량 제고, 축산물의 안전정보 제공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축산교육문화정보원(이하 “축정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축정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축정원은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축정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축산업 및 축산물가공품 분야의 정보화 촉진
2. 축산업·축산농가에 관한 문화 창달 및 가치 확산·홍보
3. 축산업경영체로의 기술수준 및 경영능력 제고
4. 축산업 및 축산물가공품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등 인적자원 육성
5. 축산물에 관한 안전정보의 제공, 정보교류의 활성화와 지식 및 산업재산권의 보호
6. 축산업 분야의 통상정책과 국제협력에 관한 정보 지원
7. 축산업 및 축산물가공품 분야의 지식 및 정보서비스 제공
8.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 또는 위탁하는 사업

⑤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축정원의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⑥ 축정원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통상정책 및 국제협력) ① 정부는 우리나라의 축산업의 특수성을 고려

하여 대외통상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며, 상호주의와 국민경제의 발전 수준에 맞는 국제협력 강화와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대외통상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경우 축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주요 통상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축산물의 안정적 공급에 지장이 초래될 경우 보완대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3장 축산정책의 수립·시행

제1절 축산발전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14조(축산발전기본계획의 수립) ①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축산농가의 균형 있는 개발·보전 및 축산물가공품산업을 포함한 축산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발전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축산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축산업의 발전 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2. 축산물 및 주요 축산물가공품의 적정한 자급목표 및 그 추진계획
3. 축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시책
4. 축산환경 개선
5. 축산업의 구조개선
6.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이용촉진
7. 사료의 안정적 수급
8. 가축 위생
9. 축산업과 동물복지의 조화를 위한 시책
10. 축산업에 관하여 정부가 추진하여야 할 시책
11. 축산업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의 조달방안
12.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기반 축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
13. 축산업경영비 절감 등 그 밖에 축산업의 종합적·계획적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축산물 및 주요 축산물가공품의 적정한 자급목표를 세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5년마다 이를 설정하고 고시하여 축산업에 관한 중장기 정책의 지표로 활용한다.

1.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우유의 자급률

2. 조사료(粗飼料)의 자급률

3. 축산물가공품 열량 자급률(국민이 섭취하는 전체 축산물가공품의 열량 중 국내산 축산물가공품으로 충당되는 열량의 비율을 말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세운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과 그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축산발전시행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⑥ 시장·군수 및 자치구(특별시의 자치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구청장은 시·도시계획과 그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군 및 자치구의 축산발전시행계획(이하 “시·군·구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⑦ 기본계획,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을 세우고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축산발전심의위원회) ① 농림축산식품부에 중앙 축산발전심의위원회를 두고, 시·도에 시·도 축산발전심의위원회(이하 “시·도축산발전심의위원회”)를 두며, 시·군 및 자치구에 시·군·구 축산발전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각급 축산발전심의위원회는 기본계획,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 그 밖에 축산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축산 발전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8조에 따른 축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3. 그 밖에 축산정책 등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각급 축산발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기본계획 등의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5조와 제16조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매년 예산에 기본계획,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가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각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에 대하여 기본계획과의 연계성, 추진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축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① 정부는 매년 축산업의 현황과 정책동향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와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매년 그 지역의 축산업의 현황과 정책동향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축산정책 등에 대한 평가와 이에 따른 보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8조(관련 행정조직의 정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축산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개선과 정비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절 안전한 축산물과 품질 좋은 축산물가공품의 안정적 공급 등

제19조(생산단계의 축산물 안전성 관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축산물가공품 원료로 공급되는 축산물이 안전하고 건전하게 생산되도록 가축 및 축산물의 이력관리, 안전관리인증, 축산물의 위해요소 중점관리 등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20조(축산물과 축산물가공품의 품질관리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축산물과 축산물가공품의 품질을 높이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축의 사육부터 축산물의 원료관리·처리·가공·포장·유통 및 판매까지의 모든 과정에서의 관리 기술 및 원산지표시와 위생·품질관리 등을 위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축에 대한 병해충 및 질병의 예방과 축산물에 대한 위생시책 등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축산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출입 축산물 및 동물에 대한 검역과 축산물에 대한 위생검사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21조(축산물가공품산업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축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국민에게 품질 좋은 축산물가공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축산물가공품의 연구개발, 축산물가공품산업의 시설 설치 및 확충과 마케팅 등에 관한 지원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22조(축산물과 주요 축산물가공품의 안정적 공급) ①정부는 축산물과 주요 축산물가공품의 공급 및 가격이 국제적으로 불안정하거나 자연재해 등으로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운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축산물 및 주요 축산물가공품을 국내에서 적정하게 생산하여 비축(備蓄)하거나 해외에서 확보하여 적정

하게 공급하기 위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축산물과 주요 축산물가공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내우외환,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상·경제상의 위기 등 예측하기 어려운 요인에 의하여 축산물과 주요 축산물가공품의 수급위기가 발생한 경우에도 필요한 최소한의 축산물과 주요 축산물가공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증산, 유통제한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3조(축산물 및 축산물가공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 등) ① 정부는 축산업인의 안정적인 축산물 생산환경 보장 및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축산물 및 축산물가공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축산물 및 축산물가공품에 관한 진실하지 아니한 정보가 언론 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되는 경우 진실한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절 축산 부문 인력의 육성 등

제24조(가족축산농가의 경영안정과 축산업 종사자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공동체의 유지 및 축산농가사회의 안정을 위하여 가족노동력을 중심으로 하는 가족축산농가(家族畜産農家)의 생산성 향상 및 경영안정과 농가의 특성에 맞는 규모화, 전문화 및 협동화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축산업 종사자를 적정하게 확보하고 전문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25조(후계축산업경영인의 육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래의 축산업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후계축산업경영인(後繼畜産業經營人)을 지원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26조(전문축산업인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적인 축산업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추고 축산업 발전에 중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축산업인(이하 “전문축산업인”이라 한다)을 육성하는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축산업인을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7조(여성축산업인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축산업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때에 여성축산업인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여성축산업인의 지위향상과 전문인력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여성축산업인이 축산업경영 등에 참여하거나 기여한 정도에 상응하는 사회·경제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28조(축산업 관련 조합법인 및 회사법인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가축의 사육·출하·도축, 축산물의 원료관리·처리·가공·포장·유통·판매·수출 등의 효율화를 위하여 협업적 또는 기업적 축산업경영을 수행하는 축산조합법인(畜産組合法人) 및 축산업회사법인(畜産業會社法人)의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9조(벤처축산업 등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축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축산업 분야의 첨단과학기술 및 영농·경영기법의 개발과 벤처축산업 등을 지원·육성하는 정책을 세우고 시행한다.

제4절 축산 부문 생산구조의 고도화

제30조(축산업 생산기반의 정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친환경축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축산업 생산력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축산업 생산기반의 정비, 보강,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31조(축산업투입재 산업의 육성 및 기계화·시설현대화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축산업 경영비용을 절감하고 축산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축산업기계, 축산업자재, 축산업시설 및 사료·동물약품 등 축산업투입재(農業投入材)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축산업 경영비용을 절감하고 축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기계화, 시설현대화 등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축산업기계·자재·장비의 효율적인 이용, 관리, 점검 및 정비와 축산업인에 대한 축산업기계 등의 수리기술 지도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2조(축산업 및 축산물가공품 관련 기술연구 등의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축산업 및 축산물가공품 관련 산업의 생산성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축산업 생산기술, 축산업 생산기반 정비기술, 축산물 생산 이후의 관리기술, 축산업 경영기법, 축산업인 안전작업기술, 축산물 유통기술, 축산물가공품 제조기술 및 음식물 조리법 등에 관한 연구·개발·보급과 축산업 및 축산물가공품산업 현장연구, 산학연 공동연구 및 연구평가 관리체제의 확립 등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세우고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축산업 및 축산물가공품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축산업 및 축산물가공품 관련 산업의 기술 등을 신속하게 개발·보급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 축산업 및 축산물가공품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축산업 및 축산물가공품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연구를 수행하는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34조(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기반의 축산업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통신기술 융복합에 기반한 축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축산업 분야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정보통신기술 표준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1. 국내외 정보통신기술 표준의 조사·연구 및 개발
2.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업

제35조(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① 정부는 축산업 유전자원, 축산기술, 품종의 개량, 토종가축의 보존, 상표, 지리적표시, 생명공학기술 등 축산업 관련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축산업과 관련된 지역 특화산업 등의 보호·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36조(친환경축산업 등의 촉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축산업에 따른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안전한 축산물과 품질 좋은 축산가공품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친환경축산업 등의 생산기반 구축, 생산기술·생산방법의 개발, 친환경 축산물 등의 인증 및 가축분뇨의 자원화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37조(축산업경영체의 경영안정 및 구조개선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축산업경영체가 지속적인 경영 혁신을 통하여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축산업 경영의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축산업경영체에 대하여 그 사업계획, 기술수준 및 경영능력 등을 고려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축산업경영체의 소득·경영안정 및 축산업의 경영구조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한다.

1. 토양 등 환경의 보전과 지구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원
2. 축산업 재해 및 축산업 활동에 따른 인적 재해 등에 대한 지원
3. 축산업 경영의 규모화, 고령 축산업인의 축산업 경영 이양 및 축산업 생산자원의 폐기·감축 등을 위한 지원
4. 축산업 여건이 낙후된 지역에 대한 지원
5. 축산업 생산과 직접 연계되지 아니하는 소득 보조 및 축산업투입재의 비용절감을 위한 지원
6. 특정 품목과 직접 연계되지 아니하는 축산농가 단위 소득 보조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산업으로 직업을 전환하거나 재취업(축산업에 다시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3항제3호에 따라 축산업 경영 규모화 및 고령 축산업인의 축산업 경영 이양에 대한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축산업인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축산업인에 대하여 직업 전환이나 재취업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직업전환이나 재취업의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업훈련의 실시 및 취업의 알선
2. 직업전환 및 재취업 장려금의 지원
3. 실직축산업인의 생활안정지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일정한 요건과 직업전환 및 재취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축산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 정부는 축산업·축산농가와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거나 받으려는 축산업경영체에 대하여 초지, 축사 등 생산수단, 생산 축산물, 생산방법, 가축사육 마릿수 등에 관한 축산업 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이를 활용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39조(축산업 재해 등에 대한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인 축산업 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해(旱害), 수해, 풍해, 냉해, 폭염, 기후변화 등 축산업 재해에 대한 예방, 응급대책, 복구와 축산업 재해보험의 운영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0조(축산물과 축산가공품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축산물과 축산가공품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축산업·축산물가공품산업의 관측, 생산 조정, 구매, 비축 및 생산자단체의 자조금(自助金)의 조성 지원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축산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축산물 유통업 및 축산물가공품산업을 업(業)으로 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1조(축산물과 축산가공품의 유통개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축산물과 축산물가공품의 생산지 및 소비지에 도매시장, 공판장, 종합유통센터, 산지유통센터, 집하장, 가축시장 등의 유통시설과 도축장, 육가공 시설 등의 확충과 그 운영 개선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축산물과 축산물가공품의 표준화 촉진과 다양한 유통정보의 수집, 제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축산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축정원, 축산물품질평가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이 공동으로 또는 연합하여 축산물과 축산가공품의 생산, 유통, 판매 등을 조직적·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공동 브랜드화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절 축산 부문의 통상정책 및 국제협력

제42조(축산업의 통상정책 및 보완대책) ① 정부는 우리나라의 권리와 이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축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통상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며, 주요 통상여건의 변화에 따라 축산물의 안정적 공급에 지장이 초래될 경우 보완대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축산업에 대한 통상정책을 세우고 시행하거나 보완대책을 세우는 경우 민간 전문가나 관련 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축산업인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3조(축산 분야의 국제협력) ① 정부는 축산 분야의 국제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축산정책에 관한 정보의 교류, 축산업 및 축산가공품산업 인력·기술의 교류, 축산업 관련 국제기구 활동 참여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수입 의존도가 높은 축산물 및 축산물가공품과 사료 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기반을 확대하고, 세계의 축산업·축산농가가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축산 부문의 인적·물적·기술적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4조(축산업 부문의 해외투자 지원) 정부는 축산업 및 축산업 관련 산업의 해외투자에 관한 조사·연구와 축산업경영체 등의 해외투자를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5조(축산물 및 축산물가공품의 수출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축산물 및 축산물가공품의 수출 진흥과 우리나라 식생활 문화의 전파 등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무역정보의 수집·제공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축산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축산물가공품산업을 업으로 하는 자와 축산물과 축산물가공품을 수출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6조(축산물 및 축산가공품의 수입 관리) 정부는 축산물 및 축산물가공품의 수입 증가로 인하여 국내의 축산업 등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외무역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수입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47조(조세의 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축산업의 발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48조(축산업 정책자금의 지원·관리) ① 정부는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축산업을 주업(主業)으로 하는 축산업인 등에 대한 정부의 융자금·보조금 지원 등 축산업 정책자금의 운영·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업인 등에게 지원하는 융자금·보조금 등 축산업 정책자금의 운용·관리 및 감독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축산업인 등에게 지원하는 융자금·보조금 등 축산업 정책자금의 운용·관리 및 감독업무 등의 사무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장 축산물 유통현황 및 당면과제

제1절 단계별 축산물 유통 현황¹⁾

□ 생산 및 출하 현황

- 일반 농산물과 달리 가축의 임신·출하기간(소 40개월, 돼지 10개월)이 길러 가격 변동이 발생해도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사육규모가 변동하여 가격변화 주기가 길게 형성됨.
- 축산물은 일반 농산물에 비해 연중 생산이 이루어져 수급 예측이 어느정도 가능하고 자연재해 등의 외부 요인의 영향을 덜 받으나, 수급불균형 문제가 발생할 경우 수매, 폐기 등이 어려워 단기간에 유연한 해결에 한계가 있음.
- 한우는 시설비가 낮고 사육이 상대적으로 쉬어 다른 축종에 비해 영세 소농 구조가 대부분임. 따라서 한우산업의 진입과 탈퇴가 상대적으로 용이하여 경영여건 변화에 따라 해당 농가 수도 변화가 심한 편임.
- 육계와 오리산업은 계열화 정도가 높으며, 오리, 육계, 계란의

1) 축산물품질평가원(2012), “한국의 축산물 유통”과 전창곤 외(2013), “소비자·생산자 상생의 농축산물 유통 구조 개선 방안”의 관련 내용을 재정리

경우는 도매시장을 통한 경매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고시 가격을 근거로 계열업체(오리, 육계)와 전문유통인(계란)을 통해서 유통되고 있음.

□ 출하 이후 유통 현황

- 가축은 출하된 이후 도축·가공(발골 및 분할)을 거쳐 유통되며, 보통 5~6단계의 경로를 거쳐서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음.
- 전국의 소·돼지 전용 도축장은 21년 3월 기준 86개로 적정 수준보다 도축시설의 과다로 인한 과당경쟁 상태임. 이에 따라 도축장 가동률 저하 현상이 발생하고 경영압박으로 위생 시설에 대한 재투자 여력이 부족한 실정임.
- 도매시장의 경우 다수·소규모 육가공업체가 도축장에서 지육을 조달한 후 부분육으로 가공하여 소비지에 공급함. 그러나 도축장 내 육가공장은 152개소에 불과해 도축 후에는 대부분 지육상태로 운송되어 불필요한 유통비용 발생 및 2차 오염 발생이 우려됨. 경매를 거치는 경우는 중도매인이 낙찰 받은 지육이 육가공업체, 정육점 등으로 분산 공급되고 있음.
- 소매의 경우 식육판매업체(정육점, 마트 등)가 부분육 또는 지육을 소포장으로 가공후 소비자·음식점 등으로 판매하고 있음. 식육판매업체 중 정육점이 소매유통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축산물의 경우 외식으로 상당량 소비되어 소비자는 정육점 가격보다는 음식점 가격에 민감한 경향을 보이고 있음.

제2절 축종별 축산물 유통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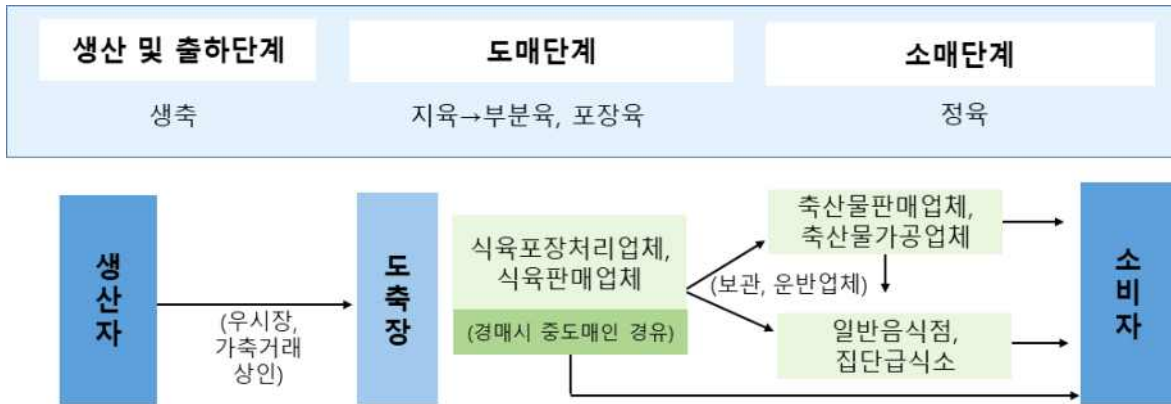
□ 쇠고기 유통단계

- 출하단계: 생산자가 축산물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 직접 출하는 경매출하, 유통주체에 의한 도축장 출하, 조합 등에 의한 생축 출하로 구분
 - (경매출하) 축산물 공판장, 도매시장에 농가가 직접(개별출하) 또는 조합을 거치는 계통출하 형태로 지육상태에서 거래
 - (직매출하) 가축시장, 문전거래 또는 조합을 통한 계통출하 형태로 경매 출하와 달리 생체상태에서 거래

- 도매단계: 도축장으로부터 소매상에 이르는 과정으로 축산물 도매시장·공판장에서 경매에 의한 반출, 식육포장처리업체의 임도축에 의한 반출, 정육점 등 최종 소매단계로 바로 이동하는 직반출로 구분
 - (직반출) 도축장에서 지육상태 또는 예비발골 후 소매단계로 이동
 - (임가공) 식육포장처리업체에 부분육 가공을 의뢰하여 발골·정형 후 유통
 - (식육포장처리) 식육포장처리업체 주체로 자신이 매입하여 발골·정형 후 유통

- 소매단계: 일반 판매점인 백화점, 대형마트, 슈퍼마켓, 정육점과 외식부분인 일반음식점, 단체급식소 등으로 구분

<표12 쇠고기 유통단계>



- 쇠고기(한우) 출하단계에서 경매출하 비중이 57.6%로 가장 높으며, 도매단계에서는 식육포장처리 63.4%, 임가공 21.1%, 직반출 15.5%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13 쇠고기(한우) 유통단계별 경로 및 비율, 2020년>

단위: %

출하단계		도매단계		소매단계	
경매출하	57.6	직반출	15.5	대형마트	23.4
직매출하	생체중 정산	임가공	21.1	슈퍼마켓	17.1
	등급정산			14.0	정육점
계	100	계	100	백화점	3.8
				일반음식점	17.0
				단체급식소	6.6
				기타	0.8
계	100	계	100	계	100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2020년 축산물 유통정보조사 보고서

□ 돼지고기 유통단계

- 출하단계: 생산자가 축산물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 직접 출하

는 경매출하, 유통주체와의 계약에 의한 직매출하로 구분하며, 생산자와 식육포장처리업체의 계약 시 등급별 정산 또는 지급률 정산으로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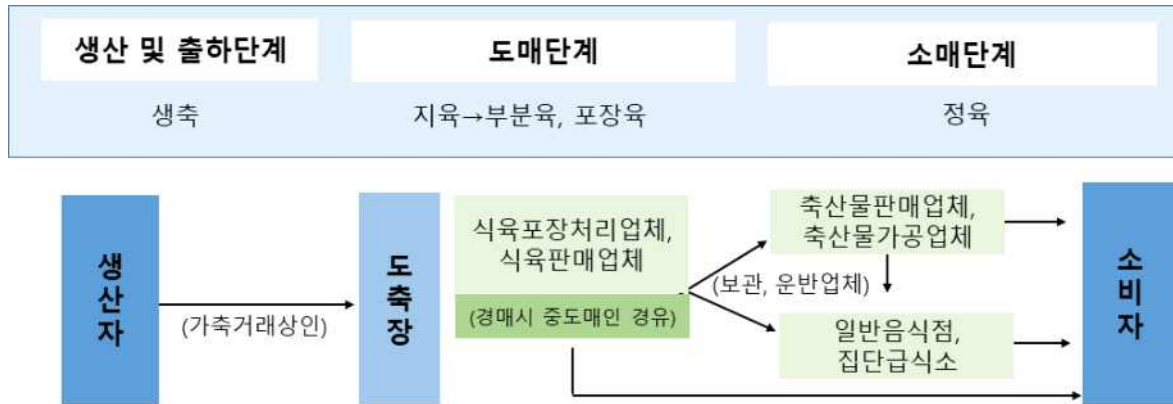
- (경매출하) 축산물 도매시장 및 공판장에 농가가 직접(개별출하) 또는 조합을 거치는 계통출하 형태로 지육상태에서 거래
- (직매출하) 돼지를 농가에서 구입한 업체가 축산물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 개별출하하거나 일반도축장에 도축을 의뢰(임도축)하는 형태

○ 도매단계: 도축장으로부터 소매상에 이르는 과정으로 축산물 도매시장·공판장에서의 경매반출, 식육포장처리업체에 의한 반출, 정육점 등 최종 소비자 소매단계로의 직반출로 구분

- (직반출) 도축장에서 지육상태 또는 예비발골 후 소매단계로 이동
- (임가공) 식육포장처리업체에 부분육 가공을 의뢰하여 발골·정형 후 유통
- (식육포장처리) 식육포장처리업체 주체로 자신이 매입하여 발골·정형 후 유통

○ 소매단계: 일반 판매점인 백화점, 대형마트, 슈퍼마켓, 정육점과 외식 부분인 일반 음식점, 단체급식소 등으로 구분

<표14 돼지고기 유통단계>



- 돼지고기 출하단계에서 직매출하 비중이 94.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도매단계에서는 식육포장처리 94.9%, 직반출 3.9%, 임가공 1.2%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15 돼지고기 유통단계별 경로 및 비율, 2020년〉

단위: %

출하단계		도매단계		소매단계	
경매출하	5.9	직반출	3.9	대형마트	27.2
		임가공	1.2	슈퍼마켓	11.4
직매출하	94.1	식육포장처리	94.9	정육점	24.9
				백화점	0.5
				일반음식점	17.3
계	100	계	100	단체급식소	5.5
				기타	13.2
				계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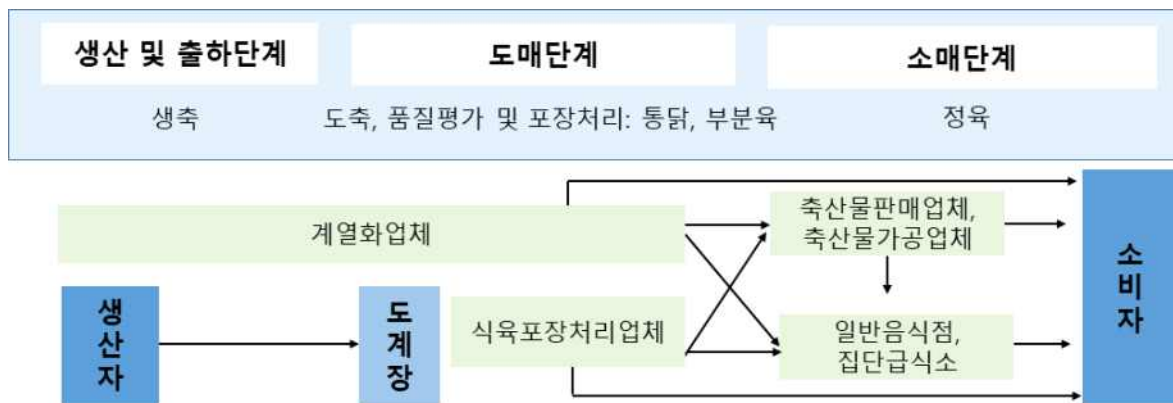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2020년 축산물 유통정보조사 보고서

□ 닭고기 유통단계

- 출하단계: 닭고기는 육계계열업체를 통해 생산·도축 및 포장처리되어 유통되는 계열출하, 양축농가에서 직접 생산하여 출하하는 일반출하로 구분
 - (계열출하) 업체는 양축농가에게 자재(병아리·사료·약품·방역·연료 등) 공급과 기술 지도를 실시하고, 사육농가는 자체

- 사육시설에서 사육한 후 육계계열업체에 출하하여 약정된 위탁수수료를 받음
- (일반출하) 계열업체에 소속되어있지 않은 농가가 직접 닭고기를 생산하여 유통업체와 거래
 - 도매단계: 도매업체로부터 소매상에 이르는 과정으로 ① 닭고기계열업체, ② 식육포장처리업체, ③ 대리점으로 구분
 - (육계계열업체) 도계 후 포장을 거친 후 식육포장처리업체, 대리점, 소매단계로 물량 이동
 - (식육포장처리업체) 도계장에서 도계 후 대리점, 소매단계로 물량 이동
 - (대리점) 육계계열업체와 식육포장처리업체에서 물량을 매입하여 판매
 - 소매단계: 백화점, 대형마트, 슈퍼마켓, 정육점, 닭·오리 전문판매점, 단체급식소, 일반음식점, 2차가공·기타로 구분

<표16 닭고기 유통단계>



- 닭고기 출하단계에서 계열출하 비중은 96.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도매단계에서는 대리점 57.7%, 육계계열업체 34.2%, 식육포장처리업체 8.1%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17 닭고기 유통단계별 경로 및 비율, 2020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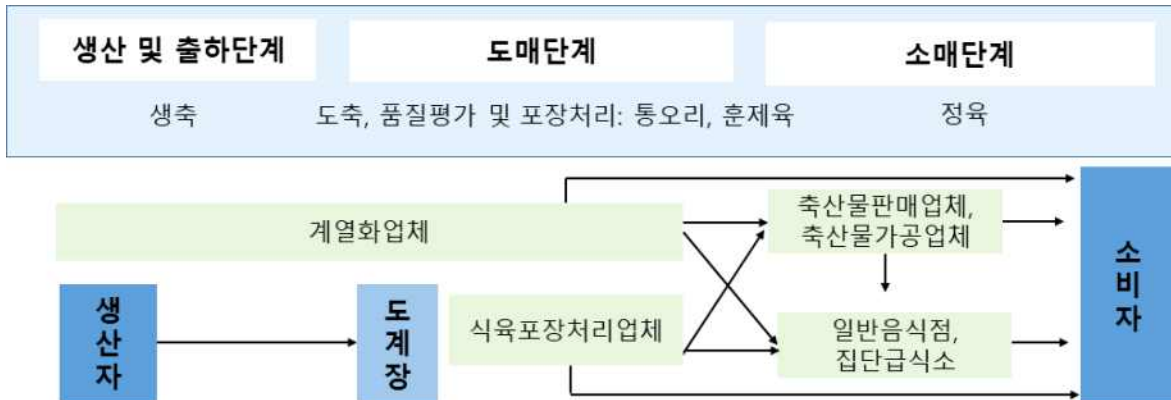
출하단계		도매단계		소매단계	
계열출하	96.4	육계계열업체	34.2	프랜차이즈	23.6
				대형마트	10.2
				닭·오리전문판매점	11.8
일반출하	3.6	식육포장처리업체	8.1	슈퍼마켓	17.9
				정육점	8.0
				백화점	0.1
		대리점	57.7	일반음식점	9.0
				단체급식소	8.8
				2차가공·기타	10.6
계	100	계	100	계	100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2020년 축산물 유통정보조사 보고서

□ 오리고기 유통단계

- 출하단계: 오리고기의 93.4%는 오리계열업체를 통해 생산·도축 및 포장처리하여 유통되고 있으며, 6.6%는 양축농가에서 직접 생산하여 출하
 - 오리계열업체는 양축농가에게 자재(새끼오리·사료·약품·방역·연료 등) 공급과 기술 지도를 실시하고, 사육농가는 자체 사육시설에서 사육한 후 오리계열업체에 출하하여 약정된 위탁 수수료를 받음
- 도매단계: 도압장으로부터 소매상에 이르는 과정으로 오리계열업체, 식육포장처리업체, 대리점을 통해 반출
 - (오리계열업체) 도압 후 포장을 거친 후 식육포장처리업체, 대리점, 소매단계로 물량 이동
 - (식육포장처리업체) 도압장에서 도압 후 대리점, 소매단계로 물량 이동
 - (대리점) 오리계열업체와 식육포장처리업체에서 물량을 매입하여 판매
- 소매단계: 백화점, 대형마트, 슈퍼마켓, 정육점, 닭·오리 전문판매점, 단체급식소, 일반음식점, 2차가공·기타 등으로 구분

<표18 오리고기 유통단계>



- 오리고기 출하단계에서 계열출하 비중은 93.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도매단계에서는 대리점 59.3%, 식육포장처리업체 32.4%, 오리계열업체 8.3%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19 오리고기 유통단계별 경로 및 비율, 2020년>

단위: %

출하단계		도매단계		소매단계	
계열출하	93.4	오리계열업체	8.3	대형마트	22.2
				닭·오리전문판매점	7.7
				슈퍼마켓	5.9
일반출하	6.6	식육포장처리업체	32.4	정육점	4.1
				백화점	-
		대리점	59.3	일반음식점	45.9
				단체급식소	7.9
				2차가공·기타	6.3
계	100	계	100	계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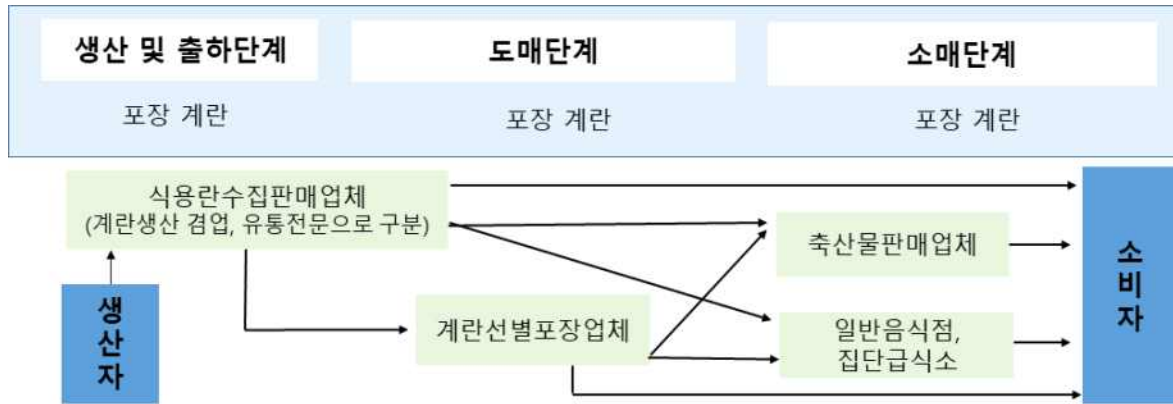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2020년 축산물 유통정보조사 보고서

□ 계란 유통단계

- 출하단계: 계란은 산란계농장(생산자)에서 생산되어 도매처 또는 소매처로 유통
 - (농가 직접출하)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를 받은 농가에서 소매처로 직접 출하 물량

- (도매단계 출하) 산란계 농장에서 식용란수집판매업자를 통하여 식용란선별포장업체 등 도매단계로 출하 물량
- 도매단계: 계란 도매단계인 ① 식용란선별포장업체, ② 식용란수집판매업, ③ 식품유통업체(OEM생산 등)를 통해 유통
 - (식용란선별포장업체 유통) 자체 농장 또는 외부 산란계 농장에서부터 원란을 수집하여 선별·포장 후 소매단계, 2차 가공장 등 이동 물량
 - (식용란수집판매업체 유통) 산란계 농장 또는 도매상으로부터 원란을 구입하여 선별포장업체를 통해 선별·세척 과정을 거쳐 소매단계, 2차 가공장 등 이동 물량
 - (식품유통업체 유통) 선별·포장이 가능한 식용란선별포장업체에서 유통업체의 브랜드제품, PB제품 등을 OEM 방식으로 생산하여 소매단계로 유통되는 물량
- ※ 식용란선별포장업체: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1조(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 3의 2에 따라 식용란 중 달걀을 전문적으로 선별·세척·건조·살균·검란·포장하는 영업
- ※ 식용란수집판매업: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1조(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에 따라 식용란을 수집·처리 또는 구입하여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 ※ 식품유통업체: 선별·포장이 가능한 식용란선별포장업체에서 유통업체의 브랜드제품, PB제품 등을 OEM 방식으로 생산하여 소매단계로 유통되는 물량
- 소매단계: 국내 계란의 주요소비처 백화점, 대형마트, 슈퍼마켓, 외식부분인 일반음식점, 단체급식소, 가공부분인 2차 가공업체 및 기타로 유통되는 물량

<표20 계란 유통단계>



- 계란 출하단계에서 식용란선별포장업체 비중은 57.1%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도매단계에서는 식용란선별포장업체 41.5%, 식품유통업 24.2%, 식용란수집판매업 19.5%, 소매처 직접판매 14.8%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21 계란 유통단계별 경로 및 비율, 2020년>

단위: %

출하단계		도매단계		소매단계	
식용란선별포장업체	57.1	식용란선별포장업체	41.5	대형마트	38.4
식용란수집판매업 (식용란선별포장업체 제외)	23.1	식용란수집판매업 (식용란선별포장업체 제외)	19.5	슈퍼마켓	23.4
식품유통업 (OEM생산 포함)	5.0	식품유통업 (OEM생산 포함)	24.2	백화점	2.1
소매처 직접판매	14.8	소매처 직접판매	14.8	일반음식점	6.1
				단체급식소	9.3
				2차가공·기타	20.7
계	100	계	100	계	100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2020년 축산물 유통정보조사 보고서

□ 벌꿀 유통단계

- 생산단계: 벌꿀(양봉)은 농가에서 농협수매와 유통업체(식품회사 등)로 유통되거나, 농가에서 직접 생산하여 소매점으로 유

통되거나,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직거래 등의 형태

- 도매단계: 농가에서 꿀을 구입하여 소분, 가공, 판매하는 업체로 농협, 유통업체(식품회사 등)으로 구분
 - (농장 직접판매) 벌꿀의 53.3%는 지인 등에게 직거래하고, 2.8%는 온라인을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
 - (소매점 유통) 벌꿀의 10.3%는 농가에서 소매점으로 직접 판매되어 소비자에게 유통
 - (농협수매 및 유통업체) 벌꿀의 33.6%는 농협수매 혹은 유통업체(식품업체 포함)으로 출하되어 소매처로 유통(필요시 소분, 가공함)하거나 직거래, 온라인 형태로 직접판매
- 소매단계: 소매점인 백화점, 대형마트, 하나로마트, 로컬매장, 홈쇼핑과 개인판매인 온라인, 직거래(지인/개인 판매)으로 구분

<표22 벌꿀 유통단계>



□ 축산물 유통비용

- 2020년 주요 축산물의 평균 유통비용률은 49.5%
 - 축종별 유통비용률은 닭고기 55.1%, 돼지고기 49.9%, 쇠고기 48.2%, 오리고기 46.4%, 계란 46.0% 등의 순

- 단계별 유통비용률은 전년 대비 출하, 도매는 각각 0.1%p, 1.9%p 감소, 소매단계는 3.7%p 증가
 - 항목별 유통비용률은 전년 대비 직접비, 간접비는 각각 0.6%p, 0.9%p 감소, 이윤은 3.3%p 증가
- 2019년 대비 2020년 유통가격은 생산·도매·소매단계에서 쇠고기(한우)와 돼지고기, 계란은 상승, 닭고기는 하락

<표23 2020년 유통단계별 축종별 가격>

단위: 원

품목	생산자가격	도매가격	소비자가격
쇠고기(두)	9,590,776	11,617,878	18,528,787
돼지고기(두)	375,624	460,483	749,973
닭고기(수)	2,027	3,397	4,516
오리고기(수)	5,772	8,706	10,762
계란(30개)	3,030	4,013	5,616
별꿀(kg)	10,338	20,228	25,415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2020년 축산물 유통정보조사 보고서

- 축종별 유통경로 비중을 살펴보면, 쇠고기(한우)는 정육점 비중이 31.3%, 대형마트 23.4%, 일반음식점 17.0% 등의 순임. 돼지고기는 대형마트 비중 27.2%, 정육점 24.9%, 일반음식점 17.3% 등의 순으로 나타남. 닭고기는 프렌차이즈 23.6%, 슈퍼마켓 17.9%, 전문음식점 11.8% 등의 순이며, 오리고기는 일반음식점 비중이 45.9%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24 2020년 축종별 유통경로 비중>

단위: %

구분	쇠고기(한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프렌차이즈			23.6	
백화점	3.8	0.5		

대형마트	23.4	27.2	10.2	22.2
슈퍼마켓	17.1	11.4	17.9	5.9
정육점	31.3	24.9	8.0	4.1
단체급식소	6.6	5.5	8.8	7.9
일반음식점	17.0	17.3	9.0	45.9
전문음식점			11.8	7.7
2차가공및 기타		13.2	10.6	6.3

제3절 축산물 유통 문제점²⁾

□ 축산물 유통단계별 가격 연동성 저하와 수급 불균형 심화

- 산지와 도매가격간의 가격 연동성은 높으나, 도매와 소비자가격의 연동성은 미약함.
- 축산물 공급 증가 등의 원인으로 축산물 산지가격이 하락할 경우에 소비자 가격은 제때 하락하지 않고, 하락하더라도 하락폭이 작아 생산자와 소비자의 불만이 제기됨.
- 축산물 유통단계별로 가격의 연동성이 떨어질 경우에 가격을 통한 축산물 수급조절에 어려움이 발생하며, 수급조절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가격 불안정성도 심화됨.
- 축산물 산지가격이나 도매가격이 변동할 때 소비자가격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분석하여 유통단계별 가격 연동성을 제고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축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유통구조 개선의 요구 증대

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간농업농촌동향 제49호(2016)와 정민국(2013)의 내용을 재정리

- 축산물 가격 불안정은 축산물 수급과 유통구조의 문제로 구분되며, 유통구조 문제는 유통경로의 편중과 복잡성으로 발생함.
- 한우농가의 산지조합 출하비중이 크지만, 산지수집상에 의존하는 비중이 작지 않고 다양한 경로를 경유하여 소비자에게 쇠고기 판매하며, 양돈농가의 경우는 육가공업체를 통한 출하 비중이 크고, 산란계 농가는 산지수집상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
- 4~6단계 유통단계 축소를 위해 협동조합형 패커를 육성하고 있으나, 생산-도축-가공-판매의 일관체계 구축 미흡하여,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더욱 필요한 상황임.
- 지육중심 유통으로 출하농가 및 소비자 편의성을 고려한 부분 육 유통확대 방향으로 개선·보완이 필요함.

□ 축산계열화 촉진과 협동조합의 역할 제고 필요

- 축산물 산지·도매가격과 소비자가격의 연동성을 제고시키고 유통비용 절감을 유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복잡한 유통단계를 통합하여 유통주체의 의사결정 단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유통체계 개선이 필요함.
- 축산물 유통체계 개선을 위해 축산계열화 활성화가 필요하며, 축산물 시장의 효율성 제고와 축산업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협동조합 중심의 축산계열화를 육성할 필요가 있음. 협동조합형 축산계열화의 수익모델개발도 필요한 상황임.

□ 축산계열화 확대에 따른 불공정 거래 개선의 노력 필요

- 축산계열화사업은 그동안 많은 성과를 달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농가와 계열업체간 사육수수료 정산방식, 생산요소 품질, 분쟁발생 시 해결방식 등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며, 사전에 상호 협의없이 계약내용이 변경되는 문제 등도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함.
- 축산계열화사업을 둘러싼 갈등 해소를 위한 법적 근거는 대부분 마련되었으나 계약농가의 축사시설 개선 등 투자 활성화를 위한 장기계약 보장 등 투자위험 분산에 관한 조항은 미흡하며, 시설투자 등 축산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여 계약농가의 적극적인 투자 활성화 유도가 필요함.

□ 도축장 구조조정의 한계

- 대부분 경매와 임대축 중심으로 운영하여 일관처리 능력 부족 등 축산물 유통 핵심주체로서 역할 미흡
- 지인배 외(2013)의 도축장 대상 설문조사결과, 도축규모에 비해 도축시설이 과잉상태로 평균적으로 낮은 가동률을 보였음. 또한 소규모 업체일수록 위생수준이 낮았음. 이는 소규모업체의 경우 경영상태가 어려워 위생시설에 대한 투자가 낮기 때문으로 판단됨.
 - 도축장 경영상태에 대해서 ‘매우 어려움’과 ‘어려움’으로 응답한 도축장은 각각 4개소(6.7%)와 15개소(25.0%)였음. ‘보통’은 25개소(41.7%), ‘양호’는 13개소(21.7%), ‘매우 양호’는 3개소(5.0%)였음.

- 지인배 외(2013)에서 도축장 경영인 대상 우리나라 도축산업의 문제점에 대해 조사한 결과, ‘업체간 과당경쟁’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도축시설의 과잉’, ‘지난친 위생기준’, ‘건축 관련 규제’, 경기침체로 인한 육류소비 감소’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축산물 가격의 보고 및 공개시스템 구축

- 축산계열화 확대는 거래비용 감소로 유통마진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지만, 특정 계열업체의 시장점유율 확대로 시장이 비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음.
- 축산물 거래정보에 대한 소비자·유통업자·생산자간의 정보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해 계열업체의 시장 거래 물량과 가격을 보고·공개하는 방안에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국내·수입 축산물 유통실태조사, 직거래·온라인 등 新 유통 경로 활성화, 축산물 거래정보 통합제공 등 유통정책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축산물 유통정책 지원조직 육성 및 강화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조문이 필요한 상황임.

제4절 축산물 유통개선에 대한 수요조사³⁾

□ 한우의 유통개선 과제

3) 이명기·이형우(2011), “쇠고기·돼지고기 유통실태 분석 및 개선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한우농가 대상 설문조사 결과, 유통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직거래 확대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으며, 계열화 확대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민간 계열화보다는 협동조합형 계열화 활성화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 외에 축산물 이력제, 산지조직화 등에 대한 요구도 높았으며, 도축장 구조조정, 부정육 판매 단속 강화 등에 대한 필요성도 강조하였음.

<표25 한우 유통개선 과제>

개선과제	비중	순위
직거래 확대	63.1	1
계열화 확대(협동조합형 계열화 활성화)	30.8	2
축산물 이력제	28.0	3
산지조직화	26.5	4
거점 도매시장 및 도축장 육성(도축장 구조조정)	23.9	5
부정육 판매 단속 강화	23.5	6
계열화 확대(민간 계열화 활성화)	19.0	7
시설현대화 및 기술개발 등 생산성 증대	15.7	8
송아지 생산 안정제	13.5	9
가격결정체계(도매시장 가격 상하한제)	12.9	10
부분육 유통 활성화	12.4	11
선물시장 활성화	11.8	12
소매단계 축산물 등급표시	6.7	13
수입 축산물 관세 인하	0.2	14

주: 복수 응답

자료: 이명기·이형우(2011), p.18.

- 한우농가들이 제시한 축산물 유통체계 개선에 필요한 제도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음. 1) 부분육 경매제도 활성화, 2) 정육

가공 기술개발과 홍보, 3) 공판장 출하시 사전 예약제 실시로 출하우 체중 감소 우려 해소와 경비 부담 완화, 4) 근출혈로 인한 농가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 및 도축장 CCTV 설치를 통한 원인 분석, 5) 유통단계간 가격 연동제 실시, 6) 한우의 최소 생산비 보장, 7) 축산농가의 수입과 지출의 안정화를 위한 사료가격 안정화, 8) 사료 안정화기금 조성, 9) 도축장 계류시설 현대화, 10) 직영 판매장 운영 시 세제 혜택

□ 돼지고기의 유통개선 과제

- 돼지농가 대상 설문조사 결과, 유통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시설 현대화 및 기술개발 등을 통한 생산성 증대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으며, 계열화 확대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민간 계열화보다는 협동조합형 계열화 활성화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 외에 축산물 이력제, 부정육 판매 단속 강화에 대한 의견도 높았음.

<표26 돼지고기 유통개선 과제>

정책	비중	순위
시설 현대화 및 기술개발 등 생산성 증대	52.1	1
계열화 확대(협동조합형 계열화 활성화)	46.3	2
축산물 이력제	41.4	3
부정육 판매 단속 강화	31.3	4
직거래 확대	30.1	5
가격결정체계(도매시장 가격 상하한제)	24.8	6
거점 도매시장 및 도축장 육성(도축장 구조조정)	18.1	7
산지조직화	14.4	8
모든 전문농장 육성	13.2	9
계열화 확대(민간 계열화 활성화)	12	10
소매단계 축산물 등급표시	10.6	11
부분육 유통 활성화	9	12
선물시장 활성화	4.2	13
수입 축산물 관세 인하	1.2	14

자료: 이명기·이형우(2011), p.18.

- 돼지농가들이 제시한 축산물 유통체계 개선에 필요한 제도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음. 1) HACCP 인증 등 차별화된 농장의 돈육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와 규격 및 육질 하락에 대한 패널티 적용을 통한 육질 고급화, 2) 농가의 직영판매장 운영을 위한 지원, 3) 소비단계에서 육질 등급 표시, 4) 출하차량 및 액비 운송차량에 대한 면세유 적용, 5) 권역별 우수 양돈농장 육성 및 교육·홍보, 6) A등급의 폭을 넓혀서 출하체중이 125~130kg까지 증가할 수 있도록 유도, 7) 품질개선을 위한 교육 확대 및 우수 사례에 대한 결과물 홍보, 8) 공신력 있는 기관 또는 협회를 통한 정육 도소매가격에 대한 정보 공개 등

□ 도축장 유통개선 과제

- 정부는 2010년 도축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으로 도축·가공·유통을 연계한 축산통합경영체의 육성이라는 기본 방향을 세우고, 세부 추진전략으로 거점 및 통합도축장 선정·집중 육성, 도축장 위생관리 강화, 도축장 구조조정 촉진 방안을 추진하였음.
- 포유류 도축장 수는 2021년 3월기준 86개이며, 운영주체에 따라 일반도축장, 축산물도매시장, 축산물공판장으로 구분됨.

<표27 축종별, 암수별 도축실적>('21년 6월 기준)

단위:두

구분	소			돼지		
	계	암	수	계	암	수
당월(A)	70,527	34,854	35,673	1,448,976	713,406	735,570
전월(B)	67,296	32,959	34,337	1,440,219	705,781	734,438
전년동월(C)	74,183	36,646	37,537	1,398,273	675,198	723,075
전월대비(A/B)	105	106	104	101	101	100
전년대비(A/C)	95	95	95	104	106	102
당년누계(D)	444,778	209,459	235,319	9,146,095	4,460,432	4,685,663
전년누계(E)	430,147	203,142	227,005	9,156,471	4,398,038	4,758,433
누계대비(D/E)	103	103	104	100	101	98

자료: 도축실적, 농림축산검역본부

- 지난 2008~2015년 진행됐던 구조조정사업으로 20여개 도축장이 정리되는 등 도축장 가동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음⁴⁾.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도축장 과잉에 따른 출혈경쟁이 여전히 속출하고 있으므로 도축장 구조조정 재추진에 관한 여론이 높아지고 있음⁵⁾.

<표28 도축산업의 문제점과 당면과제>

문제점	당면과제
업체간 과당경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축업계의 수익성 확보 방안 마련 •도축장 구조조정사업의 개선을 통한 한계 도축장의 폐업 유도
도축시설의 과잉, 낮은 가동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영효율성 증대 방안 강구

4) 1990년대 정부의 축산물종합처리장(LPC)지원사업 등으로 도축장의 가동률이 저하되고 도축수수료가 인상되지 못하여 도축업계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함. 도축업계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업계가 '도축장구조조정법'이 2008년 6월에 제정(2015년까지 한시법)되고 그해 12월부터 도축경영자들이 사단법인 '도축장구조조정추진협의회'를 설립하여 도축장 폐업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음.

5) 축산신문(2021. 3. 3), "도축장 구조조정 재추진 여론 커진다"

임도축 문제(유통비용 증가, 낮은 부가가치, 위생수준 저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동조합형 패커 육성을 통한 유통비용 절감, 농가수취가격 보장 및 소비자보호 방안 마련 •부분육 생산 및 가공을 통한 도축업의 부가가치 상승 •HACCP 시설투자금 지원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가동률 불안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축산물 수급의 계절성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
공판장 ⁶⁾ 중심의 유통체계로 지역유통체계 고착 및 유통비용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판기능과 도매기능에 대한 재고 •패커 육성을 위한 계열업체 도축장 지원 강화 •소비지 도매시설 설치 및 지원
도축장과 도축시설 낙후로 인한 비효율, 고비용, 비위생적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축 및 냉장설비 개선으로 도축비용 및 도축 손실량 감소 방안 강구
위생점검 강화 의지 미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생점검 강화 및 위생평가 결과 공개
인구밀집지역에 도축장 소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지에 고효율, 저비용, 위생적 신규 도축장 건설

자료: 지인배 외(2013) 재정리(p.20~29)

- 이명기·이형우(2011)은 도축장 경영개선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였음. 도축작업장은 도축두수 확보의 어려움과 도축시설의 과다로 인한 지나친 경쟁을 경영악화의 주요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음. 따라서 경쟁력 있는 도축작업장을 위주로 구조조정을 하여 도축작업장의 도축두수를 확대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도축장의 수입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 도축작업장 유통개선을 위한 과제를 조사한 결과, 도축작업장들은 도축장 구조조정을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제시하였음. 그

6) 생산자단체가 운영하는 도매시장이 공판장이며, 공판장은 지역구분 없이 생산자단체가 개설할 수 있음. 도매시장은 '농안법(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시 이상의 지역에 시장이 개설됨.

다음으로는 민간 계열화 활성화, 직거래 확대, 부분육 유통 활성화, 협동조합형 계열화 활성화 등의 순임. 이 밖에 산지조직화 및 규모화, 가격결정체계 개선 등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제시되었음.

<표29 도축작업장 유통개선을 위한 과제의 우선순위>

과제	한우 순위	돼지 순위
도축장 구조조정(시설확충 및 현대화)	1	1
직거래 확대	2	3
계열화 확대(민간 계열화 활성화)	3	2
부분육 유통 활성화	4	4
계열화 확대(협동조합형 계열화 활성화)	5	5
산지조직화(규모화)	5	8
가격결정체계(도매시장 가격 상하한제)	7	5
부정육 판매 단속 강화	7	11
축산물 이력제	9	10
축사시설 현대화 및 기술개발	9	9
선물시장 활성화	11	7
송아지 생산 안정제	11	
소매단계 축산물 등급표시	13	13
수입 축산물 관세 인하	13	13
기타	13	13
모든 전문농장 육성		12

주: 복수 응답

자료: 이명기·이형우(2011), p.18.

- 협동조합형 패커 육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선결조건은 도축장 구조조정 및 거점도축장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음. 즉, 축산물 유통선진화를 위한 협동조합 중심의 대형 패커 육성사업은 도축장 구조조정사업과 연계성을 높여 추진될 필요가 있음. 수직계열화를 통한 대형 패커 육성으로 계열사가 직접 도축장을 운영함으로써 임대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동률 저하 문제를 해결하고 도축비용과 유통비용 절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임.

□ 축산물 소비자 정보 제공 확대

- 유통주체간의 정보 불균형 문제 해결과 합리적인 소비문화 구축을 위해 소비자단체를 통해 소비자 유통실태 정기 조사·공표를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소비자·유통업자·생산자간의 정보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 주요 업체의 시장거래 물량과 가격을 보고 공개하는 방안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함.
- 미국에서는 축산물가격 의무보고법(Livestock Mandatory Reporting Act of 1999)에 의해 축산물 생산부터 소비에 이르기까지 각 유통단계별 참여자들이 거래가격·소비·수출 관련 정보를 농무부(USDA)에 보고하고, 농무부는 해당 정보를 공시하고 있음.

제5장 일본의 축산물 유통 관련 법률의 현황⁷⁾

7) 축산법령 체계화 및 축산업 통합공고 방안 마련

제1절 축산 업무의 개요 및 조직도

1. 업무 개요

- 일본에서 축산은 국민의 식생활의 다양화 등을 배경으로 근래 주목할 만한 발전을 하였다. 이 중 농림수산성 생산국 축산부는 국민들에게 우유,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등의 축산물을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과
- 축산 농가 등의 경영 안정이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생산으로부터 유통, 소비에 이르기까지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먼저, 지역의 실저에 따라 생산의 진흥·합리화를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설의 정비, 우수한 가축의 도입, 가축의 개량·증식, 초지의 조성 등의 대책을 실시하고 있다.
- 둘째, 축산 경영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에게 축산물을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쇠고기, 돼지고기, 유제품의 가격안정 제도, 육우용 송아지 및 가공 원료유의 생산자 보급 교부금의 교부, 농가에 대한 경영지도, 배합 사료 가격의 안정 등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 셋째, 축산물의 유통 소비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 식육센터, 우유 처리 시설 등의 유통 시설의 정비·통합, 소매 단계에서 축산물의 적정 표시 및 판매의 지도 등을 실시함과 동시에 학교 급식용 우유의 공급에 대한 조성 등 축산물의 소비 확대에도 노력하고 있다.
- 이 외에도 건전한 대중오락으로 정착되어 있는 중앙 및 지방 경마의 운영을 지도 감독하여 경매 팬들의 건전한 경마를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2. 조직도

□ 농림수산부 생산국 내의 조직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30 일본 농림수산부 생산국 내 조직도>

축산부장						
축산기획과		축산 진흥과	사료과	우유· 유제품과	식육계란과	경마 감독과
축산종합 추진실	축산경영 안정 대책실	축산 기술실	유통 사료 대책실		식육수급 대책실	

제2절 「축산경영의 안정에 관한 법률」의 구조 및 내용

- 이 법률은 주요한 가축 또는 축산물에 대하여 교부금 내지 생산자 보급교부금 등의 교부 또는 가격의 안정에 관한 조치를 강구하여 축산물의 수급의 안정 등을 통한 축산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고,
- 나아가, 축산 및 그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과 동시에 국민 소비생활의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51년 12월 30일에 시행된 법이며, 가장 최근의 개정으로는 2016년 12월 16일에 일부 개정되어 공포되었다.
- 동 법률의 구성은 제1편 총칙, 제2편 육용우(肉用牛) 및 육돈에 대한 교부금의 교부, 제3장 가공원료유에 대한 생산자 보급 교부금 등의 교부, 제4장 지정 유제품의 가격 안정에 관한

조치, 제5장 보칙, 제6장 벌칙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31 일본의 「축산경영의 안정에 관한 법률」의 내용 개요>

장 및 절		조	내용
제1장	총칙	제1조	총칙
		제2조	정의
제2장	육용우 미 육돈에 대한 교부금의 교부	제3조	
제3장	제1절 생산자 보급교부금 등의 교부	제4조	생산자 보급 교부금 등의 교부
		제5조	연간 판매계획의 작성 등
		제6조	총교부대상 수량
		제7조	생산자 보급 교부금 등에 관련한 가공원료 유의 수량의 인정 등
		제8조	생산자 보급금의 단가
		제9조	제1호 대상사업자에 의한 생산자 보급금의 교부 등
	제2절 집송유 조정금의 교부	제10조	제1호 대상사업자의 지정
		제11조	지정 공시 등
		제12조	업무규정의 변경
		제13조	지정의 해제
		제14조	집송유(集送乳) 조정금의 교부
		제15조	집송유 조정금의 금액 등
		제16조	지정사업자에 의한 집송유 조종금의 교부
	제4장	지정유제품의 가격의 안정에 관한 조치	제17조
제18조			수입에 관련한 지정유 제품 등의 기구에 대 한 매도
제19조			수입에 관련한 지정유 제품 등의 매입 가액
제20조			수입에 관련한 지정유 제품 등의 재매도

		제21조	수입에 관련한 지정유 제품 등의 재매도 가액
		제22조	준용
		제23조	지정유 제품 등의 매도
		제24조	
		제25조	지정유 제품 등을 매도하지 않는 경우
		제26조	지정유 제품 등의 교환
제5장	보칙	제27조	재무대신과의 협의
		제28조	지도 및 조언
		제29조	보고 및 검사
		제30조	사무의 구분
제6장	벌칙	제31조 ~ 제34조	

<표32 일본의 「축산경영의 안정에 관한 법률」 전문 번역본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률은 주요 가축 또는 축산물에 대하여 교부금이나 생산자 보조교부금 등의 교부 또는 가격 안정에 관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축산물의 수급 안정 등을 통한 축산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고, 이로써 축산 및 그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며 국민 소비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이 법률에서 “육용우”라 함은 정령(시행령)으로 정하는 월령 이상의 육용우를 말하고, “육돈”이라 함은 종돈 이외의 돼지를 말한다.
2. 이 법률에서 “가공원료유”이라 함은 지정 유제품, 기타 정령(시행령)으로 정하는 유제품의 원료인 생유로서 농림수산성령(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3. 이 법률에서 “지정 유제품”이라 함은 버터, 탈지분유, 연유(정령(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에 한한다) 및 기타 정령(시행령)으로 정하는 유제품으로, 농림수산성령(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4. 이 법률에서 “대상 사업”이라 함은 다음에 열거한 사업을 말하며, “대상 사업자”라 함은 대상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다음에 열거된 판매 사업(이하, “제1호 대상 사업”이라 한다)

가. 생유수탁판매(위탁을 받아 행하는 생유의 유업자(「낙농 및 육용우 생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1954년 법률 제182호) 제2조제2항의 유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나목 및 다음 호에 대하여도 동일하다)에 대한 판매 또는 위탁을 받아 행하는 생유의 가공 및 해당 가공과 관련된 유제품의 판매를 말하며, 생유생산자단체(생유의 생산자가 직접 또는 간접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 농업협동조합 또는 농업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제10조제3항 및 제12조제1항에 대하여도 동일하다)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생유생산자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 구성원으로 되어 있고, 전국의 구역을 지구로 하는 농업협동조합연합회에 대한 이러한 위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생유매입판매(매입한 생유의 유업자에 대한 판매 또는 해당 생유의 가공 및 해당 가공과 관련된 유제품의 판매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직접 생산한 생유의 유업자에 대한 판매(위탁해서 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사업(이하, “제2호 대상 사업”이라 한다)

(3) 직접 생산한 생유의 가공 및 해당 가공과 관련된 유제품의 판매(위탁해서 하는 것을 제외한다) 사업(이하, “제3호 대상 사업”이라 한다)

제2장 육용우 및 육돈에 대한 교부금의 교부

제3조 독립행정법인 농축산업진흥기구(이하, “기구”라 한다)는 표준적 판매가격이 표준적 생산비를 하회하는 경우에는 육용우 또는 육돈 생산자로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육용우 또는 육돈 생산자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교부금(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교부금”이라 한다)을 교부할 수 있다.

(1)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적립금(다음 항 및 제3항에서 “적립금”이라 한다)의 적립에 필요한 부담금을 지출하고 있는 것일 것.

가. 표준적 판매가격이 표준적 생산비를 하회하는 경우의 육용우 또는 육돈 생산자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것일 것.

나. 육용우 또는 육돈 생산자에 대한 지급에 충당되는 것으로, 교부금이 교부되는 경우에 그 지급이 이루어지는 것일 것.

다. 적립 금액 및 기타 사항이 농림수산성령(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기준

에 적합한 것일 것.

- (2) 기타 교부금의 적정하고 효과적인 교부를 위하여 농림수산성령(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일 것.
2. 교부금의 금액은 농림수산성령(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기간별 및 육용우 또는 육돈의 생산자별로, 육용우 또는 육돈의 표준적 생산비와 표준적 판매가격과의 차액에, 육용우 또는 육돈의 재생산을 확보하는 취지로 농림수산성령(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에, 육용우 또는 육돈(적립금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으로서 해당 기간 내에 해당 생산자가 판매한 것에 대하여 기구가 농림수산성령(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을 한 것의 품종별 두수에 상당하는 수를 각각 곱하여 얻은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적립금에서 육용우 또는 육돈 생산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교부금액에서 공제한다.
4.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표준적 판매가격” 이라 함은 육용우 또는 육돈의 표준적인 판매가격으로서 농림수산성령(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종별로 산출한 금액을 말하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표준적 생산비” 라 함은 육용우 또는 육돈의 표준적인 생산비로서 농림수산성령(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종별로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제3장 가공원료유에 대한 생산자보조교부금 등의 교부

제1절 생산자보조교부금 등의 교부

제4조(생산자보조교부금 등의 교부) 기구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대상사업을 하는 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이 절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각 호에 정하는 생산자보조교부금 또는 생산자보조금(이하, “생산자보조교부금 등” 이라 한다)을 교부할 수 있다.

- (1) 제1호 대상 사업 생산자보조교부금
- (2) 제2호 대상 사업 생산자보조금
- (3) 제3호 대상 사업 생산자보조금

제5조(연간 판매 계획의 작성 등) 전조의 규정에 따른 생산자보조교부금 등을 교부 받고자 하는 대상사업자는 농림수산성령(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해당 회계연도에 해당 대상사업자가 실시하는 생유 또는 특정유제품(지정유제품 및 그 밖에 제2조제2항의 정령(시행령)으로 정하는 유제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에 관한 계획(이하, “연간 판매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해당 판매에 관한 계약서 사본 기타 농림수산성령(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대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간 판매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열거된 대상 사업자의 구분에 따라 해당 각 호에 정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제1호 대상 사업을 하는 대상 사업자 : 다음에 열거된 사항

- 가.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및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 나. 제1호 대상 사업에 관한 생유가 생산되는 지역
- 다. 제1호 대상 사업에 관한 각 월별 생유의 용도별 판매 예정 수량
- 라. 제1호 대상 사업에 관한 각 월별 특정 유제품의 판매 예정 수량
- 마.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생산자보조금 교부 업무의 내용
- 바 기타 농림수산성령(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2) 제2호 대상 사업을 하는 대상 사업자 : 다음에 열거된 사항

- 가.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및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 나. 제2호 대상 사업에 관한 생유가 생산되는 지역
- 다. 제2호 대상 사업에 관한 각 월별 생유의 용도별 판매 예정 수량
- 라 기타 농림수산성령(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3) 제3호 대상 사업을 실시하는 대상 사업자 : 다음에 열거된 사항

- 가.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및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 나. 제3호 대상 사업에 관한 생유가 생산되는 지역
- 다. 제3호 대상 사업에 관한 각 월별 특정 유제품의 판매 예정 수량
- 라 기타 농림수산성령(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3. 농림수산대신은 대상 사업자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간 판매계획이 제출된 경우, 해당 연간 판매계획이 농림수산성령(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대상 사업자에 대해 해당 회계연도에 해당 대상 사업자가 교부받는 생산자보조교부금 등과 관련된 가공원료유 수량의 최고한도(이하, “교부대상수량”이라 한다)를 통지한다.

4. 교부대상수량은 농림수산성령(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에 교부하는 생산자보조교부금 등과 관련된 가공원료유 수량의 총량의 최고한도로 농림수산대신이 정하는 수량(이하, “총교부대상수량”이라 한다)을 기초로 하며 해당 대상 사업자가 제출한 연간 판매계획에 근

거하여 산출한다.

5. 농림수산대신은 생유의 생산사정, 음용우유 및 유제품의 수급사정 그리고 대상 사업자가 실시하는 대상사업의 실시상황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교부대상수량의 총량이 총교부대상수량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대상 사업자와 관련된 교부대상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
6. 농림수산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대상수량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대상 사업자에게 변경 후의 교부대상수량을 통지한다.
7. 농림수산대신은 대상 사업자가 제출한 연간 판매계획에 기재된 제2항제1호나목, 제2호나목 또는 제3호나목의 지역(다음 항에서 “계획기재지역”이라 한다)이 하나의 도도부현의 구역을 넘지 않는 경우, 해당 대상 사업자에게 제3항 또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통지와 관련된 교부대상수량 및 해당 연간판매계획의 내용(같은 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한 때에는 해당 통지와 관련된 변경 후의 교부대상수량)을 해당 도도부현의 지사에게 통지한다.
8.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대상 사업자는 농림수산성령(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실시하는 대상사업의 실적 및 그 실시에 필요한 경비, 그 밖의 해당 대상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농림수산성령(시행규칙)으로 정한 사항을 농림수산대신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대상 사업자와 관련된 계획기재지역이 하나의 도도부현의 구역을 넘지 않는 때에는 농림수산대신은 해당 보고의 내용을 해당 도도부현의 지사에게 통지한다.

제6조(총교부대상수량)

1. 총교부대상수량은 생유의 생산사정, 음용우유 및 유제품의 수급사정, 기타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정한다.
2. 총교부대상수량은 매 회계연도, 당해 회계연도의 개시 전에 정하여야 한다.
3. 농림수산대신은 총교부대상수량을 정하고자 할 때에 식량·농업·농촌정책심의회 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농림수산대신은 총교부대상수량을 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한다.
5. 농림수산대신은 생유의 생산사정, 음용우유 및 유제품의 수급사정, 기타 경제사정에 현저한 변동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총교부대상수량을 개정할 수 있다.
6.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따른 총교부대상수량의 개정

준용한다.

제7조(생산자보조교부금 등에 관한 가공원료유 수량 인정 등)

1. 농림수산대신(제5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도도부현지사에 대한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도도부현 지사. 다음 항에서도 같다)은 해당 회계연도에서, 정령(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령(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간별 및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한 대상사업자별로, 해당 대상사업자가 해당 기간 내에 취급한 생유의 수량 중 생산자보조교부금 등과 관련된 가공원료유의 수량을 인정한다.
2. 농림수산대신은 전항의 정령(시행령)으로 정하는 기간별로 같은 항의 규정에 따라 대상사업자별로 인정한 수량(그 수량의 해당 회계연도의 합계가, 교부대상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인정된 수량에서 당해 초과하는 수량을 공제하여 얻은 수량(해당 수량이 0 미만인 경우에는 0으로 한다))을 기구에 통지한다.
3. 기구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와 관련된 수량에 다음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생산자보조금의 단가를 곱하여 얻은 금액을 생산자보조교부금 등으로 대상사업자에게 교부한다.

제8조 (생산자보조금의 단가)

1. 생산자보조금의 단가는 농림수산대신이 생유의 생산비 기타 생산조건, 생유 및 유제품의 수급사정, 물가, 그 밖의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생산되는 생유의 상당 부분이 가공원료유라고 인정되는 지역에서의 생유의 재생산을 확보하는 것을 취지로 정한다.
2. 농림수산대신은 생산자보조금의 단가를 정할 때에는 낙농 경영의 합리화 및 집송유의 효율화를 촉진하도록 배려한다.
3. 제6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생산자보조금의 단가에 준용한다.

제9조(제1호 대상 사업자에 의한 생산자보조금의 교부 등)

1. 기구로부터 생산자보조교부금을 교부받은 제1호 대상 사업자(제1호 대상 사업을 하는 대상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그 교부받은 생산자보조교부금의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생산자보조금으로서, 해당 제1호 대상 사업자에게 생유수탁판매와 관련된 위탁 또는 생유매입판매와 관련된 매도를 한 자에 대하여 그 위탁 또는 매도와 관련된 생유의 수량을 기준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제1호 대상 사업자는 해당 위탁 또

- 는 매도를 한 자에 대하여 그에게 교부하는 생산자보조금의 금액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전항의 규정에 따라 생산자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생유의 생산자를 제외한다)는 그 교부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같은 항의 규정 예에 따라 생산자보조금으로서 그에게 생유수탁판매와 관련된 위탁 또는 생유매입판매와 관련된 매도를 한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항의 규정에 따른 생산자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생유의 생산자를 제외한다)에 대해서도 같다.
 3. 기구로부터 생산자보조교부금을 교부받은 제1호 대상 사업자는 시행한 제1호 대상 사업의 실적 기타 농림수산성령(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당해 제1호 대상 사업자에게 생유수탁판매와 관련된 위탁 또는 생유매입판매와 관련된 매도를 한 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전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받은 자(생유의 생산자를 제외한다)는 해당 보고와 관련된 사항을 같은 항의 규정의 예에 따라 그에게 생유수탁판매와 관련된 위탁 또는 생유매입판매와 관련된 매도를 한 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받은 자(생유의 생산자를 제외한다)에 대해서도 같다.
 5. 제1호 대상 사업자는 제1항의 서면 교부를 대신하여 정령(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제1호 대상 사업자에게 생유수탁판매와 관련된 위탁 또는 생유매입판매와 관련된 매도를 한 자의 승낙을 얻어 같은 항의 서면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전자적 방법(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는 방법 기타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농림수산령(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제1호 대상 사업자는 같은 항의 서면을 교부한 것으로 본다.

제2절 집송유조정금의 교부

제10조(제1호 대상 사업자의 지정)

도도부현지사(제5조제2항제1호나목의 지역이 하나의 도도부현의 구역을 초과하는 제1호 대상 사업자의 경우에는 농림수산대신. 제12조제2항 그리고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서도 같다)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요건 모두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제1호 대상 사업자를 그 신청에 따라 지정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 (1) 생산자보조금의 교부 업무 및 집송유조정금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확실하게 실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 (2) 정관 기타 기본약관에, 생유수탁판매와 관련된 위탁 또는 생유매입판매와 관련된 매도가 연간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는 경우 기타 농림수산성령(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5조제2항제1호나목의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생유에 대한 생유수탁판매와 관련된 위탁 또는 생유매입판매와 관련된 매도의 신청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가 정해져 있을 것
 - (3) 전항의 지역이 하나 또는 둘 이상의 도도부현 구역(그 구역의 자연적·경제적 조건에 비추어 해당 구역에서 일체로 집송유를 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농림수산대신이 도도부현 지사의 의견을 들어 해당 구역을 나누어 구역을 정한 때에는 그 구역)을 단위로 하는 것일 것
 - (4) 생산자보조금의 교부 업무 및 집송유조정금과 관계된 업무에 관한 규정(이하, “업무규정”이라 한다)에서 생산자보조금 및 집송유조정금의 금액 산정 및 그 교부 방법, 집송유에 관한 경비 산정 방법, 기타 사항이 농림수산성령(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해져 있을 것
 - (5)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이 해제되고, 그 해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가 아닐 것
2. 전항의 신청에는 농림수산성령(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 기타 기본약관 및 업무규정을 첨부하여야 한다.
 3. 우유생산자단체는 제1항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신청 및 업무규정에 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1조(지정의 공시 등)

1. 도도부현지사는 전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이하, 단순히 “지정”이라 한다)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공시하고, 농림수산대신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농림수산대신은 지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공시하고, 해당 지정과 관련된 지역을 관할하는 도도부현지사에게 통지한다.

제12조(업무규정의 변경)

1. 지정사업자 중 생유생산자단체인 자(다음 조 제1항제3호에서 “지정생유생산자단체”라 한다)가 업무규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에 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지정사업자는 업무규정을 변경한 때(농림수산성령(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을 한 때를 제외한다)에는 지체 없이 농림수산성령(시행규칙)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취지를 해당 지정을 한 도도부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지정의 해제)

1. 도도부현지사는 지정사업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령(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 (1) 제10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열거된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2) 허위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지정을 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 (3) 지정 해제의 신청(지정생유생산자단체의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루어진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
2. 도도부현지사는 지정사업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령(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 (1) 제10조제1항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2) 제10조제1항제2호의 농림수산성령(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지정과 관련된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생유에 대한 생유수탁판매와 관련된 위탁 또는 생유매입판매와 관련된 매도의 신청을 거절한 경우
 - (3) 이 법률 또는 업무규정을 위반하여 생산자보조금 교부 업무 또는 집송유조정금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11조의 규정은 전 2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의 해제에 준용한다.

제14조(집송유조정금의 교부) 기구는 지정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집송유조정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5조(집송유조정금의 금액 등)

1. 기구는 제7조제1항의 정령(시행령)으로 정하는 기간별 및 지정사업자별로,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와 관련된 수량에 다음 항의 규정에 따라 정하는 집송유조정금의 단가를 곱하여 얻은 금액을 집송유조정금으로 교부한다.
2. 집송유조정금의 단가는 농림수산대신이 지정사업자가 집송유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경비액에서 효율적으로 집송유가 이루어질 경우의 경비액을 공제해서 얻은 금액을 기초로 하여 정한다.
3. 제6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집송유조정금의 단가에 준용한다.

제16조(지정사업자에 의한 집송유조정금의 교부)

1. 기구로부터 집송유조정금을 교부받은 지정사업자는 그 교부받은 집송유조정금을 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집송유조정금으로서 해당 지정사업자에게 생유수탁판매와 관련된 위탁 또는 생유매입판매와 관련된 매도를 한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전항의 규정에 따라 집송유조정금을 교부받은 자(생유의 생산자를 제외한다)는 그 교부받은 집송유조정금을 농림수산성령(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집송유조정금으로서 그에게 생유수탁판매와 관련된 위탁 또는 생유매입판매와 관련된 매도를 한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항의 규정에 따른 집송유조정금을 교부받은 자(생유의 생산자를 제외한다)에 대해서도 같다.

제4장 지정유제품 가격의 안정에 관한 조치

제17조(지정유제품 등의 수입)

1. 기구는 국제약속에 따라 농림수산대신이 정하여 통지하는 수량의 지정유제품 또는 정령(시행령)으로 정하는 기타 유제품(이하, “지정유제품 등”이라 한다)을 수입한다.
2. 기구는 전항의 규정에 따르는 외에, 지정유제품의 가격이 현저히 오르거나 오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대신의 승인을 받아 지정유제품 등을 수입할 수 있다.

제18조(수입과 관련된 지정유제품 등의 기구에 매도)

1. 지정유제품 등에 관하여 「관세법」(1954년 법률 제61호)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수입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를 하는 자(그 자가 해당 수입신고 시 그 수입신고와 관련된 지정유제품 등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소유자)는 그 수입신고와 관련된 지정유제품 등을 기구에 매도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열거하는 경우 및 다음 항에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기구 또는 기구의 위탁을 받은 수입업자가 지정유제품 등을 수입한 경우
 - (2) 지정유제품의 가격 안정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정령(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정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제공되는 것으로서 「관세잠정조치법」(1960년 법률 제36호) 제8조의5제2항에서 준용하는 「관세정률법」(1907년 법률 제54호) 제9조의2의 규정에 따른 할당을 받아 지정유제품 등을 수입하는 자는 그 지정유제품 등이 해당 정령(시행령)에서 정하는 용도 이외의 용도로 제공되게 된 경우(농림수산성령(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지정유제품 등을 기구에 매도하고 또한 그 지정유제품 등을 기구에 매도하는 것을 확보하는 취지의 계약을 기구와 체결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매도 또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의 체결은 해당 지정유제품 등과 관련된 수입신고 전에 신청서를 기구에 제출해서 하여야 한다.
4. 지정유제품 등에 대한 「관세법」 제70조의 규정 적용에 관해서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의 제출이 있는 경우에 당해 신청에 대한 기구의 승낙은 동조 제1항의 허가, 승인 등으로 본다.
5. 전항의 기구의 승낙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정령(시행령)으로 정한다.

제19조(수입과 관련된 지정유제품 등의 매입가액) 전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매도와 관련된 지정유제품 등에 대한 기구의 매입가액은 해당 지정유제품 등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가액으로 한다.

제20조(수입과 관련된 지정유제품 등의 환매)

1. 기구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유제품 등을 매도한 자에 대하여 그 지정유제품 등을 환매하여야 한다.
2. 기구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환매를 하기 위하여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유제품 등을 매도 받음에 있어서 해당 매도를 하는 자가 그 매도와 관련된 지정유제품 등을 환매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3. 기구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유제품 등을 매도 받음에 있어 해당 매도를 하는 자에 대하여 전항의 조건을 붙이는 외에 정령(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조건에 따른 환매와 관련된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보증금, 증권 기타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수입과 관련된 지정유제품 등의 환매가액)

1. 전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구의 환매가액은 국제약속에 따라 농림수산

대신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해당 환매와 관련된 지정유제품 등의 수량을 곱하여 얻은 금액을, 기구의 매입가격에 더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2.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매도와 관련된 지정유제품 등이 해당 매도 전에 변질된 것일 경우에 기구는 농림수산성령(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정유제품 등에 대해 전 항의 규정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제22조(준용) 전 3조의 규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에 기초한 지정유제품 등의 기구에 대한 매도 및 그 환매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19조 중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가액”은 “농림수산성령(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가액”으로 대체한다.

제23조(지정유제품 등의 매도) 기구는 다음에 열거하는 경우에는 정령(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관하는 지정유제품 등을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매도한다. 다만, 그러한 방법에 따르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령(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 기타의 방법으로 매도할 수 있다.

- (1) 지정유제품의 가격이 현저히 오르거나 오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지정유제품의 생산조건 및 수급사정 기타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지정유제품의 소비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취지로 농림수산대신이 지시하는 방침에 따르는 경우

제24조 기구는 다음의 경우에는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공원료유 및 지정유제품의 시가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법으로 그 보관하는 지정유제품 등을 매도할 수 있다.

- (1) 그 보관하는 지정유제품 등의 수량이 농림수산성령(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수량을 초과하게 된 경우
- (2) 그 보관하는 지정 유제품 등의 보관기간이 농림수산성령(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게 된 경우
- (3) 기타 농림수산성령(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제25조 (지정유제품 등을 매도하지 않는 경우) 기구는 다음의 경우에는 제23

조의 규정에 따른 매도를 하지 않는다.

- (1)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매도 계약을 위반하여 그 위반행위를 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인 경우
- (2)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매도를 받는 취지의 신청이 매점 기타에 의한 부당한 이득을 목적으로 행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기타 농림수산성령(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

제26조 (지정유제품 등의 교환) 기구는 그 보관하는 지정유제품 등의 품질 저하에 따라 현저한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규격 및 수량의 지정유제품 등과 교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격이 동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청산한다.

제5장 보칙

제27조(재무대신과의 협의) 농림수산대신은 제3조제1항 각호, 제2항 혹은 제4항 또는 제24조 각호의 농림수산성령(시행규칙)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무대신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8조(지도 및 조언) 농림수산대신은 생산자보조교부금 등 또는 집송유조정금의 교부를 받은 대상사업자에 대하여 낙농경영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관점에서 필요한 지도 및 조언을 할 수 있다.

제29조(보고 및 검사)

1. 농림수산대신은 이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한도에서, 육용우나 육돈의 생산자(이러한 자가 직접 또는 간접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 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육용우나 육돈의 생산비 또는 판매가격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그 직원에게 이러한 자의 사무소 기타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기타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 농림수산대신 또는 도도부현지사는 이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한도에서 정령(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공원료유 혹은 특정 유제품의 생산자나 판매업자 또는 지정유제품 등의 수입업자(이러한 자가 직접 또는 간접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 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생유의 처리나 가공의 수량 또는 지정유제품 등의 수입가격,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그 직원에게 이러한 자의 사무소 기타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3. 농림수산대신은 이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한도에서 「도축장법」(1953년 법률 제114호) 제3조제2항에서 규정된 도축장(육용우 또는 육돈과 관련된 것에 한한다)의 설치자나 관리자 또는 육용우나 육돈의 생산자로부터 그 생산된 육용우나 육돈(쇠고기 또는 돼지고기를 포함한다)의 판매의 위탁 또는 매도를 받은 자(그 자가 직접 또는 간접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 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육용우나 육돈의 생산비(도축과 관련된 것에 한한다), 육용우나 육돈(쇠고기나 돼지고기를 포함한다)의 판매가격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직원이 출입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휴대하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출입검사의 권한은 범죄수사를 위하여 인정된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제30조(사무의 구분)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제13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 및 제2항과 전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도부현이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사무는 「지방자치법」(1947년 법률 제67호) 제2조제9항제1호에 규정된 제1호 법정수탁사무로 한다.

제6장 벌칙

제31조 허위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기구로부터 교부금 또는 생산자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형법」(1907년 법률 제45호)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다.

제32조 제5조제8항 또는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하거나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삼십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조

1. 법인(법인이 아닌 단체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정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

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 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2. 법인이 아닌 단체에 대하여 전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그 소송행위에 대하여 법인이 아닌 단체를 대표하는 외에 법인을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 하는 경우의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는 십만원 이하의 과료에 처한다.

제3절 일본의 농수산물 유통 관련 법제⁸⁾

1. 개관

□ 일본의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주요 법제는 우리나라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 모습이 우리나라의 법제와 상당히 유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국내 법제는 최근까지도 일본의 도매시장제도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함.⁹⁾

□ 농수산물 유통 등에 관한 일본의 주요 법률은 다음과 같은데, 크게 ‘기본원칙에 관한 법률’, ‘유통에 관한 법률’,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기본원칙에 관한 법률

－ 「식료·농업·농촌기본법」(食料·農業·農村基本法)

○ 유통에 관한 법률

－ 「식품유통구조개선촉진법」(食品流通構造改善促進法)¹⁰⁾

－ 「도매시장법」(卸売市場法)

8) 농안법 분법 연구

9) 박신욱, 심용재. “일본의 도매시장법 개정이 우리 농안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소고”, 『한양법학』, 30(4), 2019, 187-188면.

10) 「식품유통구조개선촉진법」은 2018. 6. 22. 도매시장법과 함께 개정되면서, 「식품 등 유통의 합리화 및 거래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변경됨.

○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주요 식량 수급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主要食糧の需給及び価格の安定に関する法律)
- 「야채생산출하안정법」(野菜生産出荷安定法)
- 「축산물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畜産物の価格安定に関する法律) 등

2. 일본 도매시장법

(1) 개관

- 일본 「도매시장법」은 도매시장 정비 기본계획(제4조-제6조), 중앙도매시장(제7조-제54조), 지방도매시장(제55조-제69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 음식의 안전·안심에 대응한 도매시장에서의 품질 관리 철저(제4조, 제5조, 제6조 등), 시장 내에 현물을 반입하고 도매를 해야 하는 상물일치(商物一致)의 원칙(제39조) 등
- 일본은 1918년도에 쌀 부족을 계기로 폭동이 일어나면서 1923년 식량공급의 안정화를 목적으로 한 중앙도매시장법을 제정하였는데, 1971년에 이르러 이를 폐지하면서 도매시장법을 제정함.
- 1971년 4월 3일 중앙도매시장법에서 전환된 도매시장법은 당시 일본의 전후 고도의 경제성장과 이에 따른 생산력의 발전, 도시로의 인구집중 등에 대응한 신선 식료품의 유통체계의 정비를 목적으로 함.¹¹⁾
- 일본은 산지단계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약 93%가 도매단계로 출하되고 도매단계의 대부분이 중앙 및 지방도매시장에서 취급되고 있을 정도로 도매시장 중심의 유통체계를 가지고

11) 박신욱, 심용재. 전계논문, 190면.

있음.¹²⁾

- 도매시장법에 따르면 일본의 도매시장은 도매업자와 중도매업자에게 매매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기본적인 역할로 하는 유통기구로서, 크게 중앙도매시장과 지방도매시장으로 분류되며, 이외에도 지정시장이 있음.
 - 2016년 기준 64개가 운영중인 중앙도매시장은 농림수산대신의 인가를 받아서 도도부현 또는 인구 20만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하는 신선식품 도매시장으로서, 개설주체는 지방자치단체에 한정됨.
 - 2016년 기준 1,081개가 운영중인 지방도매시장¹³⁾은 일정 규모 이상의 도매장을 가진 신선식품 도매시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사의 허가를 받아서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조합 등이 개설할 수 있음.
 - 지방도매시장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도도부현 조례에 의해 운영되는데, 민간기업이나 제3의 영역에서도 개설이 가능하고, 중앙도매시장 권역 내에서 개설하기 위해서는 개설 허가권자인 도도부현 지사가 농림수산성 장관에게 보고 및 논의하여야 함.¹⁴⁾
- 도매시장의 운영 관리 및 감독은 농림수산대신이 담당하며, 신선식품의 거점물류 역할과 가격결정 등의 주요 기능을 수행하게 됨.
 - 중앙정부는 중앙도매시장에 대한 모든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게 위임하지 않고 도매업자의 허가권 행사 등 주요사항에 대해서 직접 수행함.
- 이후 도매시장법은 1999년과 2004년, 2018년 6월에 전면개정

12) 김동훈, 정은미, 최병욱, “청과물 도매시장 경유율과 주요 기능 국제비교: 한국, 일본, 프랑스를 중심으로”. 『농촌경제』, 42(2), 2019, 42면.

13) 김동훈, 정은미, 최병욱, 전개논문, 44면.

14) 김동훈, 정은미, 최병욱, 전개논문, 44면.

을 거침.¹⁵⁾

- 1999년 개정은 청과물 유통의 광역화에 따른 거래방식 및 경로의 다양화, 도매시장을 둘러싼 청과물 판매·조달방식의 다양화 등 도매시장을 둘러싼 정세변화를 고려하여 단행 됨.¹⁶⁾
 - 매매거래에 관한 제반규정 정비, 도매시장 관계 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 거래에 관련된 각종 정보제공 촉진, 시장거래 위원회의 설치 등
- 2004년 2월에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거치지 않고 유통되거나 수입을 통한 물류의 증가, 식품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되면서 개정이 이루어짐.¹⁷⁾
 -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상물거래의 원칙 완화, 매취집하 자유화, 제3자 판매의 예외 인정, 수수료 탄력화 등 유통 효율화 및 고도화를 위한 제반규정 등
 - 도매시장의 합병 등을 촉진하기 위한 규정 정비, 유통업체들의 경영 건전화 조치 등의 도입을 통한 시장기능 강화 등¹⁸⁾
- 2018년 개정은 인구의 고령화 및 감소 등으로 발생하는 식품소비의 양적·방식적 변화, 농수산물 생산 및 유통구조의 변화, 개방화·국제화에 따른 변화 등 일본 공영도매시장의 유통환경 변화 등이 주요 원인이 됨.¹⁹⁾
 - 일본 정부의 규제개혁추진회는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해 2016년 확정된 ‘농업경쟁력강화프로그램’의 기본 방향을 생산자재 가격인하와 생산자에게 유리한 유통·가공구조로

15) 위태석, “일본 도매시장법 개정과 시사점”, (사)한국식품유통학회, 2018년 동계학술대회, 2018. 101면

16) 황규석, 이병서, 위태석, “논문 : 일본의 도매시장법 개정과 시사점”. 『식품유통연구』, 21, 2004, 51-52면.

17) 박신욱, 심용재. 전계논문, 191면.

18) 박신욱, 심용재. 전계논문, 192면.

19) 성형주, “농산물 유통효율화를 위한 공영도매시장 정보화 방안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 2019.

확립하고, 관련 논의를 진행함.²⁰⁾

- 일본도 우리나라의 농안법과 같이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허가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8년 6월 개정으로 허가권 관련 규정을 삭제함.

(2) 현행 도매시장법(2004년 개정)의 주요 내용

- 2004년 개정된 현행 도매시장법은 총칙, 도매시장정비 기본방침 등, 중앙도매시장, 지방도매시장, 도도부현 도매시장심의회, 기타, 벌칙 등 총 7개장과 8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 도매시장의 거래제도는 개정된 법 제34조의2에 의해 산지 및 소비지의 유통환경변화를 반영하면서 도매시장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해진 원칙범위 내에서 시장규모별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됨.²¹⁾
- 도매시장 매매거래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개설자가 생선식료품 등 세 가지로 구분하고, 도매업자가 구분된 거래방법에 따라 도매를 진행하게 함.
- 한편, 위탁집하를 완화하여 매수집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직접 상품을 생산지에서 가져오는 것이 허용됨.
- 법 제39조에 따르면 시장 내에 현물을 반입하고 도매를 해야 하는 상물일치(商物一致)가 원칙이며, 도매 수수료는 전국 일률적으로 그 수준이 고정되어 있었으나 도매회사의 신고제로 변경되어 농림수산성이나 도도부현이 회사의 경영 상황을 감안하여 이를 승인하게 되면 변경이 가능하도록 함.
- 시장 외에 있는 물품의 도매는 법 제39조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 원칙이나, 개설자가 지정한 장소 또는 도매업자가 신청

20) 위태석, 전개논문, 110면.

21) 김동환, 류상모. “일본의 농산물 유통정책”, 『세계농업』, (144). 2012.,15면.

하여 개설자가 승인한 개설구역 내의 장소에 있는 물품의 경우에는 시장 내 반입하지 않아도 도매가 가능함.

- 또한 위탁수수료 이외의 보상 수수(법 제41조) 및 차별적 취급, 수탁거부(법 제36조) 등은 법으로 금지됨.
- 도매시장에서의 철저한 품질 관리를 위한 상세한 의무규정을 포함함.
 - 온도관리 방법, 품질관리책임자의 배치 등 품질관리방법, 수산물·식육시장에 관한 대규모 시설정비, 저온화, 외기차단 등 HACCP적인 관리 의무화

(3) 2020년 6월 시행 예정 도매시장법 주요 내용

- 2018년 6월 개정된 도매시장법은 2020년 6월 21일 시행될 예정으로, 6개의 장(章)과 19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²²⁾
 - 현행 법률은 7장 83개 조문으로 이루어졌으나 개정안에서 대폭 삭제·축소되었으며, 이는 1971년 도매시장법 개정 이래 가장 큰 규모임.
- 시행 예정 도매시장법은 도매시장 기본방침 수립 및 도매시장 인정으로 법률의 목적을 국한하고, 중앙정부의 관여 권한을 대부분 삭제함.²³⁾
 - 단, 농림수산대신은 법 제3조에 근거하여 업무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시설에 관한 사항, 기타 중요사항을 포함하여 도매시장에 관한 기본방침을 정함.
-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국가 또는 도도부현의 허가방식을 폐지하고 해당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그 권한을 이양하였으며, 중앙도매시장은 인가(認可)가 아닌 인정(認定)에 의해 개설되도록 함.²⁴⁾

22) 위태석, 전개논문, 110면.

23) 위태석, 전개논문, 110면.

- 한편, 지방공공단체에 한정했던 중앙도매시장의 개설주체를 민간으로 확대하였으며, 개설구역에 대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개설구역의 광역화를 유도함.

3. 식품 등 유통의 합리화 및 거래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 2018. 6. 22. 개정되어 10월 22일부터 시행중인 「식품 등 유통의 합리화 및 거래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²⁵⁾은 농림·수산식품 등의 기본 방침, 식품 등 유통 합리화 계획의 인정, 식품 등의 거래 적정화를 위한 조사와 기타 조치 등을 규정함.
- 농림어업 및 식품유통업의 성장과 발전, 일반소비자의 이익증진 기여를 목적으로 하는 이 법은 유통경비의 절감 및 가치제고, 품질관리 및 위생관리의 고도화 조치 등을 의미하는 ‘유통 합리화’와 거래 조건의 개선 등을 통한 ‘거래 적정화’를 핵심으로 함.
- 농림수산대신은 법 제4조에 따라 식품 등의 유통합리화에 관한 기본방침을 정해야 하며, 기본방침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농림수산대신은 경제 사정의 변동 및 그 밖의 정세에 따라 필요가 생긴 때에는 기본방침을 변경하며, 기본방침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식료·농업·농촌정책심의회에 의견을 들어야 함.
- 이 법에 따르면 일본정책금융공고는 농림수산대신 및 재무대신이 지정하는 것의 대출업무를 할 수 있고(제7조), 농림어업성장산업화지원기구는 지원대상 인정사업자에 대한 출자 등의 업무를 할 수 있음(제9조).

24) 박신욱, 심용재. 전개논문, 195면.

25) (舊)식품유통구조개선촉진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때의 ‘식품 등’이란 의약품, 의약부외품, 화장품, 재생의료 등 제외하고 음식료품, 화훼 및 그 밖에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농림수산물, 농림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제조하거나 가공한 것 등을 의미함.

- 또한 농림수산대신은 식품 등의 유통 합리화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사단법인 또는 일반재단법인을 유통합리화 촉진기구로 지정할 수 있는데, 촉진기구는 제17조에 따라 유통합리화사업에 필요한 자금차입 및 관련 채무의 보증, 필요 자금의 알선 등의 업무를 실시함.
- 한편, 농림수산대신은 거래 적정화를 위해 제27조에 따라 식품 등의 거래 상황 및 그 밖에 식품 등의 유통에 관한 조사를 실시함.

4. 기타법률

(1) 식료·농업·농촌기본법

- 1999. 7. 16. 제정된 「식료·농업·농촌기본법」은 식료와 농업, 농촌에서의 정세가 급격히 변화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식료·농업·농촌에 관한 시책의 기본이념과 기본방향을 제시함.
 - 1961년에 제정된 농업기본법을 대신하는 새로운 기본법으로 농정의 기본이념을 담고 있는데, 이는 ① 식료의 안정적 공급, ② 다면적 기능의 발휘, ③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 ④ 농촌의 진흥 등 4가지를 의미함.
- 주요 내용으로는 식료·농업·농촌기본계획 수립(제15조), 식량의 안전공급 확보에 관한 시책(제16조 이하), 농업의 지속발전에 관한 시책(제21조 이하), 식료·농업·농촌정책심의회(제39조 이하) 등이 있음.
 - 식료자급률 목표의 설정 의무화, 채소수급조정제도를 통한 가격안정제도 및 긴급수급조정대책의 마련을 규정하고 있음.

(2) 주요 식량 수급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1994년에 제정된 「주요 식량 수급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쌀과 밀, 보리 등 주요 농산물의 매입·수입·매도 등의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수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국민 생활 및 국민경제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주요 식량 수급 및 가격 안정 조치로써 기본방침 수립(제4조), 적정하고 원활한 유통을 위한 조치로써 미곡(米穀) 가격 형성 센터 운영(제18조-제28조) 등

(3) 기타 법률

- 이외에도 1996년 제정된 「야채생산출하안정법」은 계획생산 및 계획 출하체계를 구축²⁶⁾함으로써 주요 야채의 가격 안정을 목표로 하며, 1961년 제정된 「축산물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주요 축산물의 가격 안정을 통해 생산자의 경영 안정과 안정적인 육류 공급을 목적으로 함.

5. 시사점 및 소결

- 일본의 농수산물 유통 법제는 기본법, 유통, 가격 안정의 3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체계화된 특징이 있는데, 농수산물 유통에 관해서는 유통시장에 관한 도매시장법과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으로 이원화되어 있음.
- 한편, 일본의 현행 도매시장법 및 개정 도매시장법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의 표와 같은데, 이와 같은 최근의 개정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임.
- 도매시장별로 기능의 다양화가 진전될 가능성이 크고 산지에 출하처 선택권을 확대시켜 줄 것이라는 긍정적인 의견도 있으나, 도매시장의 공공적 역할이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있고 소규모 농가를 무시했다는 부정적 의견도 있음.²⁷⁾

26) 김창길. “일본의 청과물 산지유통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6.

<표33 일본의 「도매시장법」 개정 전후 주요내용>

	현행 도매시장법	개정 도매시장법
법조문 구성	7장 83조	6장 19조
법률내용	- 도매시장 계획정비 - 도매시장 개설 - 도매시장거래 규제	- 도매시장 기본방침 수립 - 도매시장의 인정
도매시장법인 허가 형태	국가·도도부현이 허가	개설자가 인정
중앙도매시장 개설주체	지방공공단체 (인구20만 이상의 시)	지방공공단체 및 민간 (인구제한 폐지)
국가·도도부현 관여방법	- 도매시장의 개설허가 (개설구역규정 有) - 개설자에 대한 지도·감독	- 도매시장의 인정 (개설구역규정 無) - 개설자에 대한 지도·감독

*주: 위태석, 전게서. 111면.

제6장 축산물 유통 관련 법률안 제정시 참고 법률 검토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구조와 내용

○ 총8장/90개조문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
- 제2조(정의) 1. 농수산물”이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임산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이 법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 대하여는 「유통산업발전법」²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2장 농수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

- 제8조(가격 예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농수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농산물의 과종기 또는 수산물의 종자입식 시기 이전에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하한가격을 예시할 수 있다.
- 제9조(과잉생산 시의 생산자 보호)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로부터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해당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다만, 가격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서 해당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 제10조(유통협약 및 유통조절명령) ① 주요 농수산물의 생산

28) 산업통상자원부 소관법

자, 산지유통인, 저장업자, 도매업자·소매업자 및 소비자 등의 대표는 해당 농수산물의 자율적인 수급조절과 품질향상을 위하여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위한 협약(이하 “유통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부패하거나 변질되기 쉬운 농수산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²⁹⁾에 대하여 현저한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생산자등 또는 생산자단체가 요청할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지역의 해당 농수산물의 생산자등에게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하도록 하는 유통조절명령을 할 수 있다.

－ 제13조(비축사업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쌀과 보리는 제외한다.)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농산물을 비축하거나 농산물의 출하를 약정하는 생산자에게 그 대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여 출하를 조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축용 농산물은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로부터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서 구매하거나 수입할 수 있다.

○ 제3장 농수산물도매시장

○ 제4장 농수산물공판장 및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등

○ 제5장 농산물가격안정기금

29) 제10조(유통명령의 대상 품목)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유통조절명령(이하 “유통명령”이라 한다)을 내릴 수 있는 농수산물은 다음 각 호의 농수산물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품목으로 한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유통협약을 체결한 농수산물
2. 생산이 전문화되고 생산지역의 집중도가 높은 농수산물

- 제6장 농수산물 유통기구의 정비 등
 - 제7장 보칙
 - 제8장 벌칙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분석 결과
- 유통 및 가격안정과 관련된 법조문의 수가 예상외로 적음(제8조, 제9조, 제10조, 제13조)
 - 생산자 보호를 위한 규정(제8조, 제9조)은 명시적으로 존재하나,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정은 명시화되어 있지 않음
 - 제8조의 경우 ‘파종기 이전에 하한가격 예시’등 축산업에 대해서는 적용하기 어려움
 - 제9조의 경우 ‘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에 축산물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지 여부 의문
 - 제10조 제2항의 유통조절명령의 경우 대상이 ‘부패하거나 변질되기 쉬운 농수산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이며 령에 따르면 ‘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유통협약을 체결한 농수산물과 생산이 전문화되고 생산지역의 집중도가 높은 농수산물’이므로 축산물에 활용되고 있는지 여부 의문
 - 제13조(비축사업 등)에 따라 계란, 삼겹살 등 소비가 많고,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에게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는 축산물의 경우도 비축하여 수급조절이 가능한지 의문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장 농산물가격안정기금과 「축산법」 제5장 축산발전기금 모두 농산물의 가격안정과 축산물의 가격안정이 용도이므로 관계가 모호

2.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³⁰⁾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구조와 내용

○ 총9장/63개조문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수산물 유통체계의 효율화와 수산물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하여 규정

－ 제2조(정의) 2. “수산물유통산업”이란 수산물의 도매·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배송·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2장 수산물유통발전계획 등

－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수산물유통발전위원회의 설치(기본계획 및 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 수산물 유통체계의 효율화, 수산물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 사항, 수산물 수급 관리, 기타 사항 심의기관)

○ 제3장 수산물산지위판장

－ 제10조(수산물산지위판장의 개설 등) ① 수산물산지위판장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조합, 수협중앙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단체와 생산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개설한다.

－ 제13조의2(수산물매매장소의 제한) 거래 정보의 부족으로 가격 교란이 심한 수산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물³¹⁾은 위판장 외의 장소에서 매매 또는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30) 2015년 3월 제정되어 2016년 3월 시행.

31) 제7조의2(매매장소 제한 수산물) 법 제13조의2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물”이란 뱀장어(종자용 뱀장어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 제4장 수산물의 이력추적관리³²⁾
 - 제31조(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 ① 외국 수산물을 수입하는 자와 수입수산물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자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수산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수산물에 대한 유통단계별 거래명세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5장 수산물의 품질 및 위생 관리³³⁾
 - 수산물 저온유통체계 등의 구축, 수산물 어획 후 위생관리 지원, 불법 수산물의 유통 금지 등
- 제6장 수산물 수급관리
 - 수산업관측, 계약생산, 과잉생산 시의 생산자 보호, 비축사업, 수산물 민간수매사업지원 및 방출명령, 수매 및 비축사업의 손실처리, 수산물의 수입추천 등, 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 제7장 수산물 유통 기반의 조성 등
- 제8장 보칙
- 제9장 벌금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분석 결과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의 여러 조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항 다수 존재
 - 수산물유통법에서 다루고 있는 유통에 관한 사항이 농안법, 축산물이력법,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나누어 규정됨

<표34 수산물 유통법 분석 개요>

32)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3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상 농산물에는 축산물이 포함되지 않고,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고 있음.

수산물유통법		농안법	
제3장 수산물산지 위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0조 수산물산 지위판장의 개설 등 -제11조 위판장의 개설구역 -제12조 위판장 허가기준 등 -제13조 위판장개 설자의 의무 -제14조 산지도매 인의 지정 -제16조 산지경매 사의 임면 및 업무 -제17조 산지경매 사 자격시험 -제18조 위판장 수 산물 수탁판매 등 	제3장 농수산물도 매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7조 도매시장 의 개설 등 -제18조 개설구역 -제19조 허가기준 등 -제20조 도매시장 개설자의 의무 -제25조 중도매업 의 허가 -제27조 경매사의 임면 -제27조의 2 경매 사 자격시험 -제31조 수탁판매 의 원칙
수산물유통법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4장 수산물의 이력추적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7조 수산물 이력추적관리 -제28조 이력추적 관리 등록의 유효기간 등 -제29조 이력추적 관리 자료의 제출 등 -제30조 이력추적 관리 등록의 취소 등 -제31조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³⁴⁾ -제32조 거짓표시 등의 금지 -제33조 이력표시수 	제2장 농수산물의 표준규격 및 품질 관리 제5절 이력추적관 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4조 이력추적 관리³⁵⁾ -제25조 이력추적 관리 등록의 유효기간 등 -제26조 이력추적 관리 자료의 제 출 등 -제27조 이력추적 관리 등록의 취 소 등 -제6절 사후관리 (사후관리, 거짓표 시 등의 금지, 시

			정조치 포함)
	산물의 사후관리 -제34조 이력표시 수산물에 대한 시정조치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3절 수입단계의 이력관리	-제12조 ~ 제16조
수산물유통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장 수산물의 품질 및 위생관리	3개 조문 모두 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 '품질'에 관한 사항은 「농수산 물 품질관리법」 의 적용을 받음	-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축산물 의 위생'과 '품질'에 관한 사항 을 모두 정하고 있으므로 법령을 '축산물 품질 및 위생관리법'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은 수산물 에 대해서는 적용되나, 축산물에 대 해서는 적용 안됨 ³⁶⁾	
수산물유통법		농안법	
제6장 수산물 수 급관리	-제38조 수산업 관 측 -제39조 계약생산 -제40조 과잉생산 시의 생산자 보호 -제41조 비축사업 등 -제42조 수산물 민간수매사업 지 원 및 방출명 령 ³⁷⁾ -제43조 수매 및 비축사업의 손실 처리 -제44조 수산물의 수입 추천 등 -제45조 수입이익	제2장 농수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 조절	-제5조 농림업관측 -제6조 계약생산 -제9조 과잉생산 시의 생산자 보호 -제13조 비축사업 등 -제14조 과잉생산 시의 생산자 보호 등 사업의 손실처 리 -제15조 농산물의 수입 추천 등 ³⁸⁾ -16조 수입이익금 의 징수 등
		축산법	
		제3장 축산물의	-제30조 축산물 등

	금의 징수 등	수급 등	의 수입 추천 등 ³⁹⁾ -제31조 수입 축 산물의 관리
--	---------	------	--------------------------------------------------

34)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09년부터 관세청이 진행해오던 ‘수입물품 유통이력 관리제도’ 중 수입농산물은 농식품부, 수입수산물(해양수산물)은 해양수산부로 이관키로 부처 간 합의, 현재 관련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에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개정, 이 법률에 ‘수입 유통이력 관리’ 내용을 추가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 있다. 제도 이관은 2022년 상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http://www.agrinet.co.kr>))

3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상의 이력추적관리의 대상품목으로는 수산물과 축산물이 제외됨

36)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농산물과 수산물을 말한다.

가. 농산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의 농산물

나. 수산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금은 제외한다)

37) 제42조(수산물 민간수매사업 지원 및 방출명령)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단기적인 수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산발전기금으로 수산물유통사업자에게 그 대금의 일부를 미리 융자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대금을 융자 지원받은 수산물유통사업자에게 수산물 수급조정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산물유통사업자가 수매·보관하고 있는 수산물의 방출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수산물유통사업자는 그 명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수산물유통사업자에 대하여는 지원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38) 15조(농산물의 수입 추천 등) ①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른 대한민국 양허표(讓許表)상의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讓許稅率)로 수입하는 농산물 중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한 농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농산물의 수입에 대한 추천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비영리법인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품목별 추천물량 및 추천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농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사용용도와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 수입 추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추천 대상 농산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의 농산물을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비축용 농산물로 수입하거나 생산자단체를 지정하여 수입하여 판매하게 할 수 있다

39) 30조(축산물 등의 수입 추천 등) ①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에 따른 대한민국 양허표(讓許表)의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로 축산물 및 제29조에 따른 종축 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축산물 및 종축 등의 수입 추천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비영리법인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품목별 추천 물량·추천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대상품목인 수산물은 농안법의 경우에는 수산물 중 해양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고 되어 있으나 관련 부령이 부존재하고, 수산물유통법의 경우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음⁴⁰⁾
 - 두 법의 대상 수산물은 중복되나, 수산물유통법 제4조에 따라 동법이 농안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됨
- 제4조에 따라 유통 관련 규제법률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유통산업발전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보다 동법이 우선하여 적용됨
 - 농안법의 경우 제3조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 대하여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 제5장 수산물의 품질 및 위생 관리의 경우 장의 제목과는 달리 ‘수산물의 품질’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으므로 수산물의 품질에 관한 사항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의 적용을 받음

3. 「산림기본법」과 산림관련법 검토

<표35 「산림기본법」 및 기타 관련법률 검토 개요>

부장관이 정한다.

- 40) 제2조(수산물의 범위)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 및 마목에 따른 어업 및 양식업 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수산물산지 위판장의 도매 품목의 경우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 및 마목에 따른 어업 및 양식업 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을 염장(鹽藏) 등의 방법으로 단순 처리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산림기본법과 관련법		
법명	목적	내용
산림기본법	산림정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 (총8장/32개조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책의 기본방향 ○산림기본계획의 수립 등 ○산림의 보전 및 이용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등 ○임업의 육성 ○국유림 관리 및 산촌진흥 ○국제산림협력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총6장/26개조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림교육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산림교육전문가 등 ○산림교육시설 등 ○보칙(보고, 감사), 벌칙 등 *산림교육 :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계적으로 체험·탐방·학습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총7장/33개조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림기술진흥계획 수립·시행 등 ○산림기술자의 양성 등 ○산림기술용역 등 ○산림사업의 품질 및 안전 관리 등 ○보칙(수수료 등), 벌칙 등 *산림기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산림사업에 관한 계획·조사·설계·시행·감리 나. 산림사업의 안전점검 및 안전성 분석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업기계장비의 개발 및 운용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산림문화와 산림휴양자원의 보전·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 등 ○산림치유지도사 등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 등의 조성 등 ○숲길 등(종류,기본계획수립,조성 등)

	(총8장/38개조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림문화자산의 지정·관리 ○보칙, 벌칙 <p>*산림문화·휴양 :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산림치유 등</p>
산림보호법	<p>산림보호구역을 관리하고 산림병해충을 예찰·방제하며 산불을 예방·진화하고 산사태를 예방·복구</p> <p>(총7장/57개조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림보호구역 등 ○산림병해충의 예찰·방제 ○산불의 방지 및 복구 ○산사태의 예방·대응 및 복구 ○보칙, 벌칙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p>산림복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p> <p>(총7장/66개조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림복지진흥계획 등 ○산림복지서비스 등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및 산림복지단체의 조성·운영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보칙, 벌칙 <p>*산림복지서비스: 산림문화·휴양, 산림교육 및 치유 등 산림을 기반으로 하여 제공하는 서비스</p>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p>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p> <p>(총6장/79개조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림자원의 조성과 육성 ○산림경영계획 ○산림자원의 이용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보칙, 벌칙 <p>*산림자원:</p> <p>가. 산림에 있거나 산림에서 서식하고 있는 수목, 초본류(草本類), 이끼류, 버섯류 및 곤충류 등의 생물자원</p> <p>나. 산림에 있는 토석(土石)·물 등의 무생물자원</p> <p>다. 산림 휴양 및 경관 자원</p>
산림조합법	<p>산림소유자와 임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에 관한 사항 정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합(설립, 조합원, 기관, 사업, 관리 등) ○조합공동사업법인

	(총5장/137개조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회 ○ 감독, 벌칙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합병, 부실자산의 정리 등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 (총6장/44개조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실조합등의 관리 및 지원 ○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 예금보험 ○ 감독, 벌칙